

<2023년도 한일관계사학회 학술대회>

바다에서 바라본 "조선"

- 역사기록의 재발견을 통한 대외교류사의 재구성-

■ 일시: 2023년 9월 9일(토) 오후1시 ~ 오후6시

■ 장소: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B2 세미나실

■ 주최: 한일관계사학회

■ 후원: 국사편찬위원회

한일관계사학회

2023.09.09.

<프로그램>

바다에서 바라본 "조선"
- 역사기록의 재발견을 통한 대외교류사의 재구성 -

■ 제1부[13:00~14:50] 사회: 한윤희(성균관대)

◆ 접수 12:30~13:00

개회 13:00~

■ 기조 강연[13:10~13:50]

바다로 본 조선시대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정성일(광주여대)

■ 제1발표[13:50~14:20]

동해상의 여건 변화와 울릉도·독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발표자 : 김태훈(단국대)

토론자 : 한문종(전북대)

■ 제2발표[14:20~14:50]

“對馬는 日本의 藩屏”이라는 역사서술의 성립 배경 : 1685년 쓰시마번의 우경도서 지급 요청을 실마리로

발표자 : 이해진(동국대)

토론자 : 장순순(전주대)

■ 제2부[15:10~16:10] 사회: 유채연(전북대)

■ 제3발표[15:10~15:40]

조선후기 표왜입송제도의 변화와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 과정

발표자 : 심민정(부경대)

토론자 : 이 훈(한림대)

■ 제4발표[15:40~16:10]

조선후기 지세포에서 일어난 표착사고 - 구난을 대하는 쓰시마번의 태도

발표자 : 이재훈(동의대)

토론자 : 이형주(국민대)

■ 제3부[16:30~18:00]

■ 종합토론[16:30~17:50]

좌장 : 김문자(상명대)

코멘테이터 : 허지은(서강대)

◆ 폐회 [17:50~18:00] 폐회 및 기념촬영

세 부 일 정

일정		발 표 및 내 용	비 고
1부 2023.09.09. (13:00~ 14:50)	12:30~ 13:00	등록	1부 사회자 한윤희(성균관 대)
	13:00~ 13:10	개회사, 축사	
	13:10~ 13:50	기조 강연 - 바다로 본 조선시대 연구의 현 황과 과제 발표자 - 정성일(광주여대)	
	13:50~ 14:20	발표주제 : 제1주제 - 동해상의 여건 변화와 울릉도·독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발표자 : 김태훈(단국대) 토론자 : 한문중(전북대)	
	14:20 ~14:50	발표주제 : 제2주제 - “對馬는 日本의 藩屏”이 라는 역사서술의 성립 배경 : 1685년 쓰시마번 의 우경도서 지금 요청을 실마리로 발표자 : 이해진(동국대) 토론자 : 장순순(전주대)	
휴식	14:50 ~15:10	휴식	
2부 2023.09.09. (15:10~ 16:10)	15:10~ 15:40	발표주제 : 제3주제 - 조선후기 표왜입송제도 의 변화와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 과정 발표자 : 심민정(부경대) 토론자 : 이 훈(한림대)	2부 사회자 유채연(전북대)
	15:40~ 16:10	발표주제 : 제4주제 - 조선후기 지세포에서 일어난 표착사고 - 구난을 대하는 쓰시마번의 태도 발표자 : 이재훈(동의대) 토론자 : 이형주(국민대)	
장내정리	16:10~ 16:30	장내 정리	
3부 2023.09.09. (16:30~ 18:00)	16:30~ 18:30	종합토론 좌장 : 김문자(상명대) 코멘테이터 : 허지은(서강대)	
폐회	18:00	폐회	

동해상의 여건 변화와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

김태훈(단국대)

1. 머리말

울릉도와 독도는 512년(지증왕 13) 이사부가 于山國을 점령하면서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변함없이 우리 영토로 이어져 내려왔다. 울릉도·독도는 한국 영토 가운데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험한 바닷길을 건너야 다다를 수 있는, 동해바다 끝에 있는 그야말로 絶海孤島이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에게 “우리 영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곳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아마도 울릉도와 독도가 열 손가락 안에는 꼽히지 않을까.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심리적으로는 그만큼 가깝게 느끼며, 그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일 테다.

하지만, 그 섬들이 변함없이 같은 곳에서 우리 영토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심리적 거리와 울릉도·독도의 존재감이 또 거기에 대한 접근이 늘 한결같았던 것은 아니다. 이는 그 범위를 조선시대로 한정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관리에 나섰던 때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방치했던 때도 없지 않다. 풍부한 자연 산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된 때도 있었고, 반대로 텅 비었던 시간도 많았다. 그리고 울릉도·독도 해역이 매우 위험했던 적이 있고, 비교적 안전한 바다였던 시기도 있었다.

본고의 목적은 그러한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의 변화상을 편년사료를 통해 펼쳐보는 데 있다. 필자는 최근 3년간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의 일원으로 3권의 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바 있다.¹⁾ 그 가운데 『독도 관계 한국 사료 총서』 1(2019)을 활용하여 조선시대 울릉도·독도를 펼쳐보이고자 한다. 이 책은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4종의 사료에서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역주·집성한 것이다. 이러한 편년사료들은 지금까지 연구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되어 온 것이기에, 해당 자료집이 새로운 자료 발굴 성과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은 아직 국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관련 기록을 발췌해 번역한 만큼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소소한 성과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년사료 중 관련 기사를 통틀어 일람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효용성은 연구에 도움을 준다. 일례로, 관련 기사들의 분포를 시기별로 수치화·도표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그러하다.

2장에서 제시하겠지만, 기록의 분포를 보면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이는 시기는 크게 세 시기이다. 태종~세종, 숙종~정조 그리고 고종 연간이다.²⁾ ①태종~세종 연간의 관

1) 독도사료연구회, 『독도 관계 한국 사료 총서』 1~3, 경상북도, 2019~2021.

2) 『조선왕조실록』에서 발췌한 관련 기사들의 분포를 보면, 성종 연간의 기록이 44건으로 가장 많다. 그런데 이는 거의가 三峯島 관련 기사이므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삼봉도가 울릉도로 추정되므로 자료집에는 관련 기사를 역주하여 수록하였다. 그러나 조선전기 삼봉도에 대한 탐색은 그 실체에 대한 접근을 이루어지지 못했고, 풍문으로만 떠도는 대상이었으므로, 이를 본고에서 다루는 것은 논지를 벗어난다. 세종대부터 풍문으로 전해졌던 蓼島, 三峯島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논고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요도와 삼봉도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 다음의 두 논문이 많은 의문을 해결해준다. 손승철, 「

런 기사들은 울릉도에 안무사와 순심경차관을 파견하여 주민을 쇠환하고 섬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숙종~정조 연間は 일본 어부들에 의한 안용복·박어둔의 피랍이 발단이 된 울릉도 쟁계와 그 후속 대책으로 추진된 수토의 시행, 울릉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 등이 주된 내용이다. ③고종대의 기록에서는,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종래의 주민 쇠환 정책을 폐기하고 울릉도·독도를 일상적 통치 영역으로 포괄하여 적극적으로 경영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위 세 시기 가운데 이 글에서 검토하려는 것은 ①태종~세종대 ②숙종~정조대 등 두 시기이다.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에 관한 통시적 연구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송병기와 연구와,³⁾ 손승철의 연구가⁴⁾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은 섬에 대한 국가의 관리·경영에 중점을 두고 영토사적 견지에서 울릉도·독도를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두 시기를 중심으로 편년사료상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의 내용 분석과 시기별 분포도를 활용하여 조선시대 울릉도·독도를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울릉도를 주변의 동향은 어떠했는지, 국가의 접근법은 어떠했는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그 여파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새로운 시각을 도출하고자 한다. 관련 기록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시기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의 경우 기록의 부재가 지니는 의미를 구명하는 것 또한 주요 목표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선전기(①기)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접근이 육지와 섬의 차단으로 이어진 반면, 조선후기(②기)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접근과 재인식이 섬을 통치 영역 안으로 한발 더 끌어들이는 결말을 보게 되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먼저 편년사료에서 발췌한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들의 시기별 분포를 제시하고, 기록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대해 개관한다. 3장에서는 태종~세종 연간 왜구 대책에서 비롯된 울릉도 거민 쇠환이 전개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요인과 통치 전략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안용복과 박어둔의 피랍이 발단이 된 울릉도 쟁계를 계기로 울릉도·독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18세기 편년사료에 울릉도·독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는지를 살펴본다.

2. 조선시대 편년사료상 울릉도·독도 관련 기록 분포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공신력 있고, 개별 기사에 따라서는 좀 더 상세함을 자랑하는 『승정원일기』, 『일성록』이나 『비변사등록』이 있다. 다만, 조선후기뿐 아니라 조선전기의 역사가 기록된 유일한 편년 자료가 『조선왕조실록』이다.⁵⁾ 따라서 먼저, 『조선왕조실록』에서 발췌된 울릉도·독도 기사의 시기별 분포를 제시하고, 기록이 집중된 시기에 대해서 간략히 개관한다.

〈표 1〉 『조선왕조실록』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의 시기별 분포⁶⁾

조선전기 요도와 삼봉도의 실체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44, 2013 ; 정연식, 「15세기의 鬱島, 三峯島와 울릉도」, 『조선시대사학보』 92, 2020.

3) 송병기, 『鬱陵島와 獨島』, 단국대출판부, 1999.

4) 손승철, 「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5)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은 조선전기에도 기록이 축적되었지만,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현재는 조선후기의 것만 남아 있다.

구 분 왕대(재위 기간)	기사 건수	비 고
태 종(1400~1418)	7	-1403년 무릉도 거주민 쇠환 -1407년 대마도주가 왜인들의 무릉도 거주를 허락해줄기를 청함 -1416년 무릉도에 安撫使 파견
세 종(1418~1450)	27	-1425년 안무사 파견, 무릉도 주민 쇠환 -1437년 왜인의 무릉도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 강구 -1430년부터 '蓼島' -1438년 무릉도에 巡審敬差官 파견
세 조(1455~1468)	1	
성 종(1469~1494)	44	-1470~1481년 三峯島 탐색과 토벌 논의,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 邊民 단속
중 종(1506~1544)	2	
명 종(1545~1567)	1	
광해군(1608~1623)	1	-1614년 왜인의 울릉도 왕래 금지를 대마도주에게 요청함
현 종(1659~1674)	1	
숙 종(1674~1720)	27	-1693년 안용복의 피랍·송환, 1695년 안용복의 도일, 숙종대 '울릉도 쟁계'(1693~1699) 전개 -1694년 울릉도 搜討 정례화
영 조(1724~1776)	12	
정 조(1776~1800)	6	-1793년 이복휴가 松島에 영토비 건립 건의
순 조(1800~1834)	1	
철 종(1849~1863)	1	
고 종(1863~1907)	24	-1881·1882년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과 벌목을 금지시킬 것을 일본 수차례 요구 -1882년 島長 임명 -1883년 東南開拓使 파견 -1895년 울릉도 島監 임명 -1900년 울릉도를 鬱島郡으로 개칭, 도감을 郡守로 개정
순 종(1907~1910)	1	
계	156	

<표 1>을 보면, 관련 기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몇몇 지점들이 눈에 띈다. 먼저 ①15세기로 특히 『세종실록』과 『성종실록』에 관련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②숙종 연간이다. 『숙종실록』에서 울릉도·독도 관련 첫 기사가 1693년(숙종 19)의 것이므로, 사실상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숙종 재위 후반기의 기록이다. 마지막으로 ③고종대에 관련 기사가 다시 빈번하게 나타난다. 고종대 기록 중 가장 앞서 있는 것은 1881년(고종 18)의 기사로서, 대체로 개항 이후 울릉도·독도가 주목받게 된 상황을 말해준다.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가 집중되어 있는 위의 세 시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6) 엄밀히 구분하자면 고종·순종 연간의 실록은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논지 전개상 본 자료 집에서는 검토 대상에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모두 포함하여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를 추출·정리하였다.

①15세기 : 울릉도·독도 거주민의 刷還, 유입 차단, 순시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관리하던 시기이다. 1403년(태종 3) 무릉도 거주민의 쇄환을 시작으로 태종대에 정책의 기본 방향이 정해지고, 이후 세종~성종 연간까지 그 기초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섬의 명칭으로는 ‘武陵島’·‘于山島’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성종대에 관련 기사가 집중된 것은 1470~1481년(성종 2~성종 13) 기간에 함경도와 동해안 주민들 사이에서 동해의 새로운 섬 ‘三峯島’에 대한 풍문이 돌고 주민들의 이탈이 문제가 되자, 조정에서 삼봉도에 대한 탐색을 지시하고 급기야 토벌군 편성까지 논의했던 전말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②숙종대 후반 : 현재 독도 영유권의 史的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숙종대 울릉도 사건이 발생한 시기이다. 1693년(숙종 19) 안용복의 도일로 촉발된 울릉도 사건은 7년간 첨예하게 전개된 조선-일본 양국 간의 외교적 대립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한참 동안 뜸했던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가 다시 출현하게 되었고, 조정에서는 1694년부터 울릉도에 대한 수토를 재개하고 정례화함으로써 동해안의 邊政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民의 거주를 차단하는 태종대 이래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인삼을 비롯한 울릉도·독도의 토산 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역에 대한 관리가 지속성을 보이는 등의 변화는 뚜렷하다.

③개항 이후 : 『고종실록』의 울릉도·독도 관련 첫 번째 기사는 1881년(고종 18) 5월 22일의 것으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벌목하는 행태를 일본 측에 항의하고 檢察使를 파견하여 관리를 강화했다는 내용이다.⁷⁾ 1883년 무렵부터는 울릉도에 民을 이주시키는 등 적극적인 개척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국초 이래 지속했던 주민 쇄환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882년과 1895년에 각각 島長, 島監을 두어 울릉도·독도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 1900년에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기에 이르는데, 고종 연간 울릉도·독도에 관한 관심 고조와 적극적 관리라는 추세를 전환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편년사료 4종의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의 시기별 분포를 살펴보자.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4종의 편년사료에는 울릉도·독도 관계 기사가 총 362건 수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별 기사의 분포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⁸⁾

〈표 2〉 조선시대 편년사료상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의 시기별 분포

자료 왕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태종	7			
세종	27			
세조	1			
성종	44			
중종	2			
명종	1			
광해군	1			
현종	1			

7) 고종 연간의 울릉도·독도 관련하여 이보다 앞선 시기의 기사로 『일성록』에는 1868년(고종 5) 울릉도 수토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8) 『독도 관계 한국 사료 총서』 1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에 수록된 관련 기사를 100% 추출했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기사의 누락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시기별 추세를 보기에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숙종	27	28	15	
영조	12	11	8	
정조	6	8	8	25
순조	1	3	2	8
헌종		2	1	7
철종	1	3	2	6
고종	24	34	3	29
순종	1	2		2
계	156	91	39	77

<표 2>를 보면,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도 당연히, 『조선왕조실록』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준다. 한 가지 특징은 『일성록』의 경우 정조 연간에 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3. 태종~세종 연간 울릉도·독도 정책과 그 배경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울릉도·독도 관련 기록은 1403년(태종 3) 武陵島 거주민들을 육지로 쇠환했다는 기사이다.

江陵道の 武陵島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육지로 나오도록 명하였으니, 監司의 보고에 따른 것이다.⁹⁾

무릉도는 울릉도이다.¹⁰⁾ 그런데 당시 이 쇠환 명령이 온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쇠환된 주민들의 정착 지원이나, 이후 울릉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후속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다음 기사를 보면, 어떠한 필요로 인해 쇠환을 명했지만, 후속 대책은 불완전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流山國島¹¹⁾ 사람 백가물 등 12명이 고성 어라진에 와서 정박하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무릉도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 섬 안에 가구가 11호이고, 남녀가 모두 60여 명인데, 지금은 유산국도로 옮겨 와 살고 있습니다. 이 섬은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가 모두 2浬(1식=30리) 거리이고, 둘레가 8식 거리입니다. 소나 말, 논은 없지만, 콩 한 말만 심으면 20석 혹은 30석이 나고, 보리 1석을 심으면 50석이 넘게 납니다. 대나무는 큰 서까래만하고, 해산물과 과일나무가 모두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갈까 염려되어, 우선 통주·고성·간성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9) 『태종실록』 태종 3년 8월 11일(병진). 여기서 江陵道는 곧 강원도이다. 신라시대 溟州로, 1263년 강릉도 개칭했다. 조선 초에는 江原道 또는 原襄道, 原春道라고 부르다가 1423년 강원도로 확정했다.

10) 울릉도, 독도의 명칭 변화에 대해서는 유미림, 「울릉도·독도의 명칭 변천과 ‘독도’ 인식의 연속성」, 『해양정책연구』 36-2, 2021 참조.

11) 손승철은 유산국도를 우산국으로 추정한 반면, (앞의 논문(2013), 48쪽) 유미림은 진술한 섬의 크기로 볼 때 우산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앞의 논문, 31~32쪽) 아무래도 명칭의 유사성만으로 ‘유산국도=우산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추론은 유보한다.

라고 하였다.¹²⁾

원래 울릉도에 살던 이들이, 아마도 쇄환 조치로 인해 유산국도라는 섬에 옮겨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섬에 대해서도 쇄환 조치가 취해졌다. 일단 쇄환된 이들은 다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머물게 된 상황이었다. 울릉도에 살던 이들이 다른 섬으로 옮겨가고, 그 섬에서도 쇄환되어 일단 육지로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도망갈까 염려되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마땅한 이주 대책이 부재했던 것이다.

『태종실록』을 통해 당시 울릉도에 거주하던 주민·가구 수를 짐작할 수 있는데, 먼저 위 인용문에 “가구가 11호이고, 남녀가 모두 60여 명”이라는 진술이 보인다. 호조참판 박습은 “옛날에 方之用이란 자가 15가구를 거느리고 들어가 살면서 때로는 假倭로서 도둑질을 하였다”라는, 강원감사 재직시 들었던 바를 진언하기도 하였다.¹³⁾ 그리고 1417년 2월 武陵等處安撫使로 임무를 마치고 복명한 김인우는 “戶數는 15가구이고, 남녀를 합치면 86명”이라고 보고하였다.¹⁴⁾ 채 100명이 되지 않는 주민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는데, 울릉도·독도 주민 쇄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조치가 취해진 것은 1416년 삼척 사람 김인우를 안무사로 울릉도에 파견한 시점부터로 보인다.

그러면 태종대부터 울릉도·독도를 비롯한 남동해안 도서 지역의 주민 쇄환이 추진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김인우의 발언에서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인우가 아뢰기를,

“무릉도가 멀리 바다 가운데 있어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역을 피하는 자들이 간혹 도망하여 들어갑니다. 만일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왜인들이 반드시 들어와 도둑질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강원도를 침략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겨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삼았다.¹⁵⁾

즉, 울릉도에 주민이 늘고 생산물이 늘어나면 왜구의 침탈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나 요역을 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울릉도로 숨어드는 이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¹⁶⁾ 울릉도·독도 주민들의 왜구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왜구의 동해안 침탈은 고려 말 1352년부터 나타난다.¹⁷⁾ 고려 말 울릉도·독도에 대한 왜구 침탈에 대해서는 1379년(우왕 5) “倭가 무릉도에 들어와 보름이나 머물다가 돌아갔다”는 기록이 보인다.¹⁸⁾ 그리고 조선 초에는 1417년 “왜가 우산도와 무릉도를 노략질하였다”는 기록이 있

12) 『태종실록』 태종 12년 4월 15일(기사).

13) 『태종실록』 태종 16년 9월 2일(경인).

14) 『태종실록』 태종 17년 2월 5일(임술). “按撫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產大竹水牛皮生苧綿子檢樸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來 其島戶凡十五口 男女并八十六 麟雨之往還也 再逢颶風 僅得其生”

그런데 이 기사에서 ‘于山島’는 무릉도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에 “당초 강원도 평해 사람 김을지·이만·김울금 등이 일찍이 무릉도에 도망가서 살고 있던 것을 병신년(1416)에 국가에서 김인우를 보내 데리고 나왔다”(『세종실록』 세종 7년 8월 8일)라는 내용이 보이기 때문이다. 병신년은 김인우가 무릉도에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사실이 있던 해이므로 『태종실록』에 기술된 ‘우산도’는 『세종실록』의 ‘무릉도’를 가리킨다.(독도사료연구회, 『독도 관계 한국 사료 총서』 1, 경상북도, 2019, 15쪽)

15) 『태종실록』 태종 16년 9월 2일(경인).

16) 『태종실록』 태종 17년 2월 8일(을축) ; 『세종실록』 세종 1년 3월 29일(계유), 7년 8월 8일(갑술).

17) 고려 말~조선 초 왜구의 동해안, 울릉도·독도에 대한 침탈에 대해서는 손승철, 앞의 논문들(2011, 2013)에 자세히, 본고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서술한다.

다.¹⁹⁾ 여말선초 왜구의 울릉도·독도를 침탈했다는 기사는 2건에 불과하지만, 왜구의 동해안 지역 침탈이 빈번했던 만큼, 울릉도·독도에 대한 침탈도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 울릉도·독도에 주민이 거주하게 되면 왜구의 침탈 대상이 되고 주민과 왜구의 결탁도 우려되는 등, 울릉도가 왜구의 소굴 혹은 동해안 침탈을 위한 중간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울릉도·독도 주민 쇄환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이다. 태종대에는 1403년 기록상 최초의 쇄환 명령이 있었고, 1416년 안무사 파견을 계기로 울릉도·독도 주민에 대한 본격적인 쇄환 정책이 추진되었다.

1416년 대대적인 쇄환 이후에도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 거주하는 이들이 생겼는데, 조정에서는 1425년(세종 7) 김인우를 于山武陵等處安撫使로 울릉도에 파견하여 섬 주민들을 쇄환하였다.²⁰⁾ 태종대의 정책이 세종대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1436년(세종 18) 울릉도에 주민을 정착시키고 수령을 두어 경영하자는 건의가 있었다.²¹⁾ 주민을 정착시켜 경영하자는 주장은 이미 태종대에도 조정에서 논의된 바 있었다.²²⁾ 그런데 1436년의 경우, 동해 연안의 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강원도관찰사가 그러한 건의를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1403년 최초의 울릉도 주민 쇄환령이 강원도관찰사의 계청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루는데, 이는 시기적 변화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변화상이란, 1419년 쓰시마 정벌로 인한 왜구 감소이다. 그리고 1428년(세종 10) 통신사 파견은, 사행 중에 수집된 정보와 외교적 성과를 활용하여, 쓰시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²³⁾ 그러한 변화들로 인해 동해와 동해의 섬들은 조금은 안전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울릉도에 주민을 정착시키고 적극적으로 경영하자는 강원도관찰사 柳季聞의 계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왜구의 침탈·노략질 가능성뿐만 아니라, 섬 주민과 왜구의 결탁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사는 그러한 우려를 잘 드러낸다.

병조에서 강원도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道에서 바치는 염초는 영동 연해의 각 관아에서 만들어왔기에 이로 인해 사람마다 그 기술을 전습했는데, 간사한 백성이나 주인을 배반한 종들이 무릉도나 대마도 등지로 도망가서 화약을 만드는 秘術을 왜인에게 가르치거나 앓을까 염려되니, 이제부터는 연해의 각 관아에서 화약을 만들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²⁴⁾

그리고 무엇보다 울릉도·독도의 적극적 경영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은 험한 바닷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대의 정책을 계승하여 세종이 1425년 안무사 김인우를 울릉도에 파견하였을 때, 울릉도로 향하던 배 두 척 가운데 한 척이 태풍에 난파되어 36명이 익사하고 10명이 일본으로 표류한 일이 있었다.²⁵⁾ 세종은 이때 사망자를 위해 초혼제를 지내게 하고 부의를 내리

18) 『고려사』 권134, 「列傳」 47, 辛禡 5년 7월. "倭入武陵島留半月而去"

19) 『태종실록』 태종 17년 8월 6일(기축).

20) 『세종실록』 세종 7년 8월 8일(갑술), 10월 20일(을유).

21) 『세종실록』 세종 18년 윤6월 20일(갑신).

22) 『태종실록』 태종 17년 2월 8일(을축).

23) 장준혁, 「朝鮮世宗朝 1·2차 通信使와 對日政策의 기초」, 『역사와 실학』 69, 2019, 265~266쪽.

24) 『세종실록』 세종 8년 12월 13일(임신).

25) 『세종실록』 세종 7년 10월 20일(을유), 12월 28일(계사).

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²⁶⁾ 해상 사고에 대한 우려는 1436년 울릉도에 주민을 정착시키자는 유계문의 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요한 이유였다.²⁷⁾ 그리고 그 험한 바닷길은 1425년 안무사 파견 이후 공권력의 울릉도 항해를 10여 년간 단절시켰던 듯하다.

유계문의 계청으로 세종은 다시 울릉도에 관심을 보이며, 백성의 거주는 불허하되 “매년 탐색하거나 토산물을 채취하거나 말 목장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나감으로써 왜인들의 침탈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²⁸⁾ 그러려면 우선 사람을 울릉도로 보내 살펴보아야 하는데, 안무사로 울릉도를 두 차례 왕래했던 김인우 이후로는 해로를 정확히 알고 임무를 수행할 만한 이를 찾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연해 주민 가운데 지원자 모집을 통해, 南薈와 曹敏을 茂陵島巡審敏差官으로 삼아 섬으로 숨어든 이들을 쇄환하도록 했다.²⁹⁾ 남회와 조민은 울릉도 거주민 66명을 쇄환하여 복명하였다.³⁰⁾ 유계문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처럼 그것은 순심경차관 파견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울릉도 순심과 주민 쇄환은 동해의 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425년과 1438년 사이, 그러니까 김인우의 안무사 활동과 남회·조민의 순심경차관 활동 사이에 해당하는 시기에 미지의 섬 ‘蓼島’가 출현하였다. 『세종실록』에 요도 관련 기사는 1429~1430년 기록에 6건이 수록되어 있다.³¹⁾ 그리고 요도에 관한 그 다음 기사는 1438년 순심경차관 남회와 조민이 복명한 직후 다시 요도가 등장한다. 이때 세종은, 수년 전 말로만 전해지고 닿지 못했던 요도에 관해, 다시 탐문할 것을 지시하였다.³²⁾ 세종의 요도 찾기는 1445년까지 계속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종은 새 땅에 대한 상당한 집착을 보였다.³³⁾

한편, 1438년 순심경차관 파견과 울릉도 거주민 쇄환은, 섬으로 숨어든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1438년 11월과 이듬해 2월, 울릉도에 숨어든 이들 가운데 주동자를 색출하여 처형하고, 從犯들은 함경도에 분치하는 일이 있었다.³⁴⁾ 이전까지는 울릉도 거주자들을 쇄환하여 분치하는 정도였지만, 이때부터는 처벌하기 시작했던 것이다.³⁵⁾ 요컨대, 강원도관찰사 유계문의 건의가 시발이 된 1438년 순심경차관의 파견은 요도라는 새 땅 찾기에 대한 열망을 증폭시키고, 동해의 섬으로 숨어든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초 울릉도·독도 주민의 쇄환은 왜구 대책의 일환으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록으로 볼 때, 쇄환 정책이 본격화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은 1416(태종 16)년 안무사 김인우의 활동부터이며, 그러한 쇄환 정책은 세종대로 계승되는 모습을 보인다. 1425년(세

26) 『세종실록』 세종 7년 11월 20일(을묘).

27) 『세종실록』 세종 19년 2월 8일(무진). “傳旨江原道監司柳季聞 去丙辰秋 卿啓 茂陵島土地膏腴 禾穀所出 十倍陸地 且多所產 宜設縣置守 以爲嶺東之藩籬 卽令大臣僉議 竝云 此島遠於陸地 風水甚惡 不宜蹈不測之患 以設郡縣 故姑寢其事”

28) 『세종실록』 세종 19년 2월 8일(무진).

29) 『세종실록』 세종 20년 4월 21일(갑술).

30) 『세종실록』 세종 20년 7월 15일(무술).

31) 『세종실록』 세종 11년 12월 27일(기해), 12년 1월 26일(정묘), 12년 4월 3일(계유), 12년 4월 4일(갑술), 12년 4월 6일(병자), 12년 10월 23일(경인).

32) 『세종실록』 세종 20년 7월 26일(무신).

33) 손승철, 앞의 논문(2013), 57~63쪽 참조. 한편, 1429~1430년의 기사가 6건인데 비해, 1438~1445년의 기사는 5건으로 훨씬 적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열망과 집착이 두드러지는 것은 분명하다.

34) 『세종실록』 세종 20년 11월 25일(을사), 21년 2월 7일(병진).

35) 손승철, 앞의 논문(2013), 56쪽. 손승철은, 이때의 처벌로 인해 연해 주민들의 울릉도 입거가 어려워졌고 함경도에 분치된 이들에 의해 울릉도·독도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어, 그것이 요도와 삼봉도의 수색 작업으로 이어졌다고 추론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종 7)에도 김인우가 안무사로 울릉도에 파견되어 20여 명을 쇄환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선박 난파 사고는 울릉도·독도 항해를 꺼리게 만들었던 주요인으로 보인다. 세종대의 경우, 1419년 쓰시마 정벌, 1428년 통신사 파견 등은 왜구의 현저한 감소와 왜인들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가져옴으로써, 동해와 동해의 섬들이 좀 더 안전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환경 변화는 울릉도·독도에 대한 적극적 경영 의지, 연해 백성들의 섬으로 이주 욕구를 자극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험한 뱃길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일상적인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통치력이 정상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民이 거주하는 것을 국가가 용인할 수는 없었다. 섬으로 숨어든 백성과 국가의 영토인 섬에 대한 국가의 통치·경영 전략은 按撫·刷還과 巡審이었다. 1438년 순심경차관 남회·조민의 쇄환 활동과 섬으로 숨어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조선전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4. 숙종대 울릉도 쟁계, 영·정조대의 울릉도·독도

편년사료들에 임진왜란 이후 시기에 등장하는 울릉도·독도에 관한 첫 기록은 1614년(광해군 6)의 기사이며,³⁶⁾ 한참을 건너뛰어 1671년(현종 12)의 기사가 보인다.³⁷⁾ 그리고는 일거에 많은 기록들이 집중되는데, 바로 숙종대 鬱陵島 爭界가 발생하는 1693년(숙종 19)부터이다.

임진왜란 이후 울릉도·독도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1614년 쓰시마 왜인들이 울릉도 入居를 허락해달라는 서계를 보내왔다는 내용이다.³⁸⁾ 그런데 이는 태종 때의 기록과 유사하여 눈길을 끈다. 1407년(태종 7) 소 사다시게(宗貞茂)가 쓰시마 사람들을 거느리고 武陵島에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기사가 그것이다.³⁹⁾ 물론, 두 번 다 쓰시마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국 초기인 태종대와 임진왜란 직후 광해군대, 조선이 온전히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시점에 쓰시마로서는 자신들의 요청이 성사될 여지가 있다고 여겼을 법하다. 200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쓰시마인들에게는 여전히 울릉도·독도 해역은 탐나는 지역이었음에 분명하다.

울릉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쓰시마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의 山陰 지방, 즉 동해에 면해 있는 현재의 돗토리현(鳥取縣)·시마네현(島根縣)·야마구치현(山口縣) 지역 사람들은 일찍부터 무인도나 다름없던 울릉도에 출입하면서 어로 행위를 했고, 인삼을 캐기도 했다.⁴⁰⁾

1618년에는 울릉도에서 어로 행위를 하던 일본 어부들이 조선에 표착하는 사건이 있었고, 조선 조정의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출어 금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돗토리번(鳥取藩) 요나고(米子町)의 오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에서는 막부에 청원하여 1625년 소위 ‘竹島渡海免

36) 『광해군일기』 광해군 6년 9월 2일(신해).

37) 『현종실록』 현종 12년 11월 12일(기미).

38) 『광해군일기』 광해군 6년 9월 2일(신해).

39) 『태종실록』 태종 7년 3월 6일(경오). 다른 사료들을 보면 이때의 일을 막부의 지시로 쓰시마에서 ‘礮竹島’를 조사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甲寅(1614) 6월, “倭船三隻 稱以探問礮竹島 持路引出來 問島何在 則在我慶尙江原兩間云 似是蔚陵”; 『邊例集要』 권17, 「鬱陵島」, “萬曆四十二年 六月 府使尹宗謙時 倭小船一隻 持書契 規外出來 問其緣由 則頭倭曰 以家康分付 探見礮竹島大小形止 而恐有漂風 路引成給 故持此書契出來云云 又問島何在 答云 介在於慶尙江原境 觀其語句 則疑是鬱陵島 緣由 啓”

40) 장순순, 「17세기 조일관계와 ‘鬱陵島 爭界」, 『역사와 경계』 84, 2012, 42쪽. 이하 1692년까지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해역 도해와 어로 행위, 조선 표착에 대한 서술은 이 논문 42~47쪽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였다.

許'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오야·무라카와 가문은 이후 울릉도를 지속적으로 왕래하였고, 울릉도 해역의 이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하면서 특권상인으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1637년(인조15, 寬永 14) 6월 울릉도 해역에 출어했다가 돌아가던 일본 요나고의 어민 30명이 울산 魴漁津에 표착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13년 전에 막부로부터 竹島(울릉도) 출어를 허락받고 매년 왕래하며 물고기를 잡고 기름을 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때 조정에서는 일본 어민들을 송환 조치하였고, 별다른 외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1666년(현종 7, 寬文 14) 7월에도 1637년 사례처럼 울릉도 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국하던 일본 요나고 어민 22명이 조선 연안에 표착하였다. 그들은 “竹島에서 조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선으로부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송환되었다.

1692년(숙종 18) 3월에는 조·일 양국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도 있었다. 당시 조선 어민 53명, 일본 어민 21명이 울릉도 해역에 출어했다가 조우하였는데, 이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처럼 17세기 울릉도·독도 해역에서는 일본 어민들의 도해와 조업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외교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상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편년사료에는 위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 『조선왕조실록』은 물론이고, 다른 편년사료에도 울릉도 쟁계 이전의 울릉도·독도에 관한 기록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변사등록』과 『승정원일기』는 각각 1616년(광해군 8) 11월, 1623(인조 1) 3월 이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도 편년사료에서 울릉도 쟁계 이전 울릉도·독도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2건이 전부인 것이다. 이에 대한 단서는 위에서 언급한 1692년 울릉도에서 있었던 조선과 일본 양국 어민들의 조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기록상 조·일 양국 어민이 울릉도에서 만난 첫 장면이다. 이때 울릉도에 출어했던 일본인들은 돛토리번 요나고의 어민들이었다. 竹島渡海免許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울릉도 근해로 출어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로서는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어장을 침탈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21대 53의 수적 열세로 인해 제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수확 없이 귀국했다.⁴¹⁾ 그리고는 이듬해 1693년 3월에 다시 울릉도에 출어한 오오야家 어민들은 42명의 조선 어민들과 마주쳤는데, 어장을 침탈당했다고 여긴 일본 어민들이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해 갔고, 이것은 숙종대 울릉도 쟁계의 발단이 된다.

조선이나 일본 어민들의 어로 행위 여부와는 별개로, 양국 어민들의 조우와 충돌은 위 1692년 사건이 기록상으로는 처음이다. 또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단을 일으킨 것은 일본 측이다. 울릉도 쟁계 이전, 울릉도에 출어했다가 조선에 표착한 일본 어민들을 송환한 일들이 있었지만 조선 조정은 그것을 외교 쟁점화하지 않았었다. 조정에서는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출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묵인해왔던 것이다. 요컨대, 편년사료상 조선 후기 기록에 울릉도 쟁계 이전의 울릉도·독도 기사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출어를 조선 조정이 묵인했고, 양국 어민들의 충돌이라든지 일본 어민들의 연안 침범 등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숙종대 울릉도 쟁계는 조·일 어민들 간의 충돌과 일본 측의 항의라는 외부 충격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전개되었다. 울릉도 쟁계의 발단과 조·일 간 외교전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를 확인해보자.⁴²⁾

41) 田保橋潔,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報』 3, 1931, 15쪽.(장순순, 앞의 논문, 47쪽에서 재인용)

42) 여기서는 울릉도 쟁계가 조·일 간 외교전으로 확대되는 과정만 간략히 서술한다. 울릉도 쟁계의 전개 과정

울릉도 쟁계의 발단이 된 조선 어민들과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조우, 안용복·박어둔의 피랍은 1693년 3월의 일이었고, 9월에 差倭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真重)가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으로 호송해 왔다. 이때 다치바나는 “조선 어민들이 本國(일본)의 竹島에 배를 타고 와서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禁制를 보존하여, 두 나라 交誼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쓰시마 도주 명의를 서계를 지니고 왔는데,⁴³⁾ 거기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과 이후 이어지는 쌍방 간의 충돌이 곧 울릉도 쟁계(1693~1699)의 전개이다.

사건 초기, 조선 조정은 이 사건이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듯하다. 도주의 서계에서 보듯, 쓰시마에서는 일본 어민들의 영역을 조선인들이 침범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쓰시마 측의 거센 항의를 예상했지만,⁴⁴⁾ “봉행차왜(다치바나 마사시게)의 말이 자못 온순하여 별로 난처한 사단은 없다”는 동래부사의 보고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⁴⁵⁾ 그리고는 쓰시마 측의 서계에 다음과 같은 답서를 전달하였다.

弊邦에서 어민을 금지 단속하여 外洋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니 비록 우리나라의 鬱陵島일지라도 또한 아득히 멀리 있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 밖의 섬이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이 감히 貴境의 竹島에 들어가서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서신으로 알리게 되었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情誼에서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바닷가 백성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로 삼으니 물에 떠내려가는 근심이 없을 수 없겠지만, 국경을 넘어 깊이 들어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는 것은 법으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금 범인들을 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이후에는 연해 등지에 科條를 엄하게 제정하여 이를 신칙하도록 할 것입니다.⁴⁶⁾

위의 회답서계는 조정에서 이미 일본 측이 말하는 竹島가 울릉도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었다.⁴⁷⁾ 그러나 이후 쓰시마 측이 조선의 회답서계에서 ‘鬱陵’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다시 회답서계를 써줄 것을 요청하면서 초점이 울릉도의 귀속 문제에 맞춰졌고, 이로써 사건은 본격적인 조·일 간 외교전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그 결말은 1699년(숙종 25) 울릉도 해역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확인·확정이었다.

위에 인용된 회답서계는, 당초 조선 조정에서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묵인해주던 그때까지 관행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기 때문에,⁴⁸⁾ 애매 모호하게 작성되어 문제의 소지를 남긴 것이었다. 사건 초기 조정에서 정작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邊民의 단속이었고, 그래서 먼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금령을 어기고 울릉도에 출어했던 어민들의 처벌이 오히려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⁴⁹⁾ 이후 갑술환국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전반에 대한 서술은 다음 연구들에 상세하다. 송병기, 앞의 책 ; 김태훈, 「숙종대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성과」, 『한국사론』 47, 2002 ; 장순순, 앞의 논문.

43) 『竹島紀事本末』(김강일·윤유숙·하혜정 역, 『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 I, 동북아역사재단, 2012, 158~160쪽).

44)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10월 28일(무술). “(閔)黯曰 今番則必有爭詰之事 接慰官 各別擇差 何如”

45)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11월 13일(임자).

46) 『동문회고(부편)』 권26, 「爭難」, 「禮曹參判答書」(1693년 12월) ; 『竹島紀事本末』(김강일·윤유숙·하혜정 역, 앞의 책, 160~161쪽).

47) 『숙종실록』 숙종 19년 11월 18일(정사).

48) 『숙종실록』 숙종 19년 11월 18일(정사). “來善黯俱以爲 倭人之徙入民戶 既不能的知 此是三百年空棄之地 因此生鬻失好 亦非計也 上從黯等言”

49)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11월 13일(임자) ; 『비변사등록』 숙종 19년 11월 14일 ; 『承政院日記』 숙종 20년

남구만이 대일정책상 주도권을 발휘하면서 강경책으로 선회하게 되지만,⁵⁰⁾ 당초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출어에 대한 조선 조정의 묵인’이라는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사건이 격화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분명 일본 측이다. 이처럼, 울릉도 쟁계는 조선의 대외정책이나 전략 변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외부 충격은 조선의 울릉도 영유권 확인·확정이라는 결말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그간 잠재해 있던 많은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조선 조정은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들을 재인식하면서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했고, 그러한 사실들은 편년사료에 기록되었다. 울릉도 쟁계 이전, 17세기 내내 2건에 불과했던 울릉도·독도에 관한 기사는 경종 연간(1720~1724)을 제외하면 울릉도 쟁계 이후 모든 왕대의 편년사료에 기록되었다.

조선전기 섬에 대한 관리는, 태종~세종 연간 울릉도 관련 기사에서 보듯이, 거주민의 육지 쇄환이 최우선되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인구 유입 방지와 지속적 관리를 위해 섬을 牧場과 松田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목장이 설치된 섬은 조선전기에는 131곳으로 추정되며, 조선후기에도 87개 섬이 여전히 목장으로 활용되었다.⁵¹⁾ 울릉도에 백성을 거주시키고 수령을 파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세종이 말 목장 설치를 언급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었다.⁵²⁾ 그러나 울릉도는 목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바닷길이 너무 멀고 힘들었다.

쇄환이나 목장·송전 운영 등으로 백성들의 섬 유입을 막는 정책 기조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전쟁통에 섬으로 피난한 주민들을 동원하여 둔전을 경영하면 군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남해의 섬에는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병자호란 때도 상당수의 인구가 경기 지역 섬을 피난처로 삼아 몰려들었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말 정부에서는 서울에 몰려든 유민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키지 않고, 경기 인근 지역의 섬에 보내 경작지를 개간하여 정착시키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⁵³⁾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정책 변화 속에서 경상도 지역 어민들의 울릉도 출어도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⁴⁾ 어로나 채삼, 벌목 등을 위해 울릉도에서 자행됐던 불법 행위에 관한 기사가 울릉도 쟁계 이후 기록에만 보이는 것은, 그 이전에 없던 일이 발생해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그러한 민간의 동향과는 달리, 공권력에 의한 울릉도·독도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7세기 내내 조선과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를 왕래하고 있었고, 공권력에 의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울릉도 쟁계는 울릉도·독도 해역에서 공권력의 개입을 부활시켰다. 搜討制를 통해서이다. 울릉도 수토의 시작은 1694년 9월 장한상을 삼척첨사로 임명하여 울릉도를 조사하게 한 것에서부터이다.⁵⁵⁾ 이때는 차왜 다치바나 마사시게가 회답서계에서 ‘鬱陵’을 삭제해줄기를 요청하다 여의치 않자 쓰시마로 귀환하였다가, 회답서계 개찬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쓰시마 도주의 서계를 가지고 다시 입국한 즈음으로 사건이 격화되던 시점이다.⁵⁶⁾ 수토제는 당연히 일본 측의 울

3월 3일(신축) : 『비변사등록』 숙종 20년 3월 4일.

50) 이에 관해서는, 김태훈, 앞의 논문 참조.

51) 고동환, 「조선후기 島嶼政策과 元山島의 변화」, 『호서사학』 45, 2006, 31~ 32쪽.

52) 『세종실록』 세종 19년 2월 8일(무진).

53) 고동환, 앞의 논문, 33쪽.

54)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11월 13일(임자). “得聞沿海守令之言 海畔漁氓 頻頻往來於武陵島及他島 伐取大竹 且捕鰻魚云” ; 『숙종실록』 숙종 20년 11월 6일(경오). “近年嶺東嶺南 漁採之民 尋常往來於鬱陵島”

55) 『숙종실록』 숙종 20년 8월 14일(기유).

56) 『변례집요』 권1, 「別差倭」 갑술(1694) 윤5월 ; 『변례집요』 권17, 「鬱陵島」, 갑술 8월 ; 『숙종실록』 숙종 20년 8월 14일(기유).

릉도 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사실 남구만은 울릉도에 백성을 거주하게 하고 진을 설치할 것을 구상하였지만, 장한상의 울릉도 조사 보고를 듣고 1~2년 간격의 수토로 선회한 것이었다. 이후 조정의 논의를 거쳐 1697년, 3년 1회의 수토가 제도화되었다.⁵⁷⁾

도식적으로 이해하자면, “울릉도 쟁계의 결과 영유권을 확인했고, 또 그것을 계기로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수토제를 시행하였다”라고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토제는 매우 성글고 불완전한 대책으로서 한계도 분명하다. 3년에 1회의, 그것도 흉년이 들거나 해서 재원 조달이 힘들 경우 익년으로 미루는 일이 빈번한, 수토로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출어를 차단한다는 것은 분명 그 실효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수토에 왜학역관을 대동하도록 한 것이나,⁵⁸⁾ 18세기 초에도 여전히 “울릉도에 왜의 왕래가 빈번하다”는 지적은⁵⁹⁾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방증이 된다. 그러나 이는 울릉도 수토가 시행된 당시의 시대상이나 수토제를 보완해나갔던 사실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균형적으로 인식해야 할 부분이다.

울릉도 수토는 울릉도 쟁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실시된 것이지만, 동시에 시대상의 반영이기도 했다. 즉, 三藩의 亂(1673~1681) 이후 고조된 해상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 그에 따른 海防 대책 강구의 결과물로서 일면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청나라는 강희제의 대만 정벌이 마무리된 1684년을 기점으로 개방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후 1717년부터 10년 동안 이어진 南洋 도항 금지 조치가 있기 전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무역으로 인해 조선 연해에도 荒唐船이 출몰하는 경우가 잦아졌다.⁶⁰⁾ 1703년에는 일본에서 군사가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아 긴장이 고조된 적도 있다.⁶¹⁾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울릉도 쟁계는 조정에서 울릉도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수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울릉도 수토는 海防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동해 지역의 관방 대책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조선전기부터 울릉도에 주민을 정착시키고 수령을 파견하자거나 진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끊임 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멀고 험한 바닷길은 그 어느 것도 실행에 옮기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한 여건하에서 태종~세종대의 안무사·순심경차관 파견이나 울릉도 쟁계 이후 수토제 시행이 이루어졌다. 육지에서 가까운 섬들에 대한 수토는 매달 3회로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비해, 1697년 제도화된 울릉도 수토가 3년 1회를 정식으로 했던 것은 그 어려움을 방증한다. 수토를 꺼려 회피한 관리가 처벌을 받는가 하면,⁶²⁾ 세종 때처럼 숙종 때에도 임무를 수행하던 이들이 익사하는 아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험한 바닷길로 인해 주민 정착과 수령 파견을 통한 일상적 통치 대신에 차선택으로 선택된 수토제이지만, 그 또한 만만찮은 현실에 직면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소용되는 물자 부담 또한 큰 문제여서, 주로 흉년을 이유로 시행이 익년으로 연기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수토 인원들이 타고 가는 배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17세기 동해의 海防을 짐작케 하는 일면이 있어 흥미롭

57) 『승정원일기』 숙종 23 4월 13일(임술).

58)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4월 25일(기사) ; 『비변사등록』 영조 11년 1월 19일. 울릉도 수토의 추이에 대해서는 유미림,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 2009 ; 신태훈, 「삼척영장과 울릉도 수토제」, 『이사부와 동해』 15, 2019 ; 신태훈, 「조선후기 월송만호와 울릉도 수토제」, 『한일관계사연구』 72, 2021 참조.

59) 『숙종실록』 숙종 40년 7월 22일(신유).

60) 남호현, 「18세기 조선의 위기의식과 海防 논의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7, 2018, 271쪽.

61) 『숙종실록』 숙종 29년 5월 16일(경신).

62) 『숙종실록』 숙종 21년 4월 13일(갑진).

다. 다음은 1697년 울릉도 수토를 제도화한 후 1698년 울릉도에 대한 첫 수토를 앞두고 조정 논의에서 나온 대화 내용이다.

판돈녕부사 서문중이 아뢰기를,

“동해의 배는 모두 조운선이라 먼바다를 왕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개조하고자 하여도 문제가 적지 않으니, 경상도 각 포구의 兵船과 戰船을 정해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⁶³⁾

동해의 포구에 조운선만 있을 뿐 전선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에는 세종 연간에 강원도에 월송포·속초포·강포구·삼척포·수산포·연곡포 등 6개 포구에 수군만호 수어처를 설치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고, 월송과 삼척포진에도 병선이 분치되었다. 6개 포진 가운데 조선후기에 명맥을 유지한 만호는 월송포가 유일하다.⁶⁴⁾ 그러한 동해 지역 포진의 쇠퇴 속에서 17세기 말 시점에는, 이처럼 동해의 읍에서 울릉도까지 수토를 위해 타고 갈 만한 선박이 마땅찮은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자면, 17세기 동해는 병선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전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왜구가 기승을 부렸던 15세기의 바다와는 대조를 이룬다.

17세기 울릉도·독도 해역에는 조선과 일본 어민들의 접근이 이루어졌고, 이렇다 할 공권력 개입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외교적인 갈등을 촉발하거나 내정에 위협이 될 만한 대내외적 요인이 없었다. 공권력의 부재로 인해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17세기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침탈도 어로와 토산물 채취 정도였지, 개항기 이후의 점유·입거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영토 침탈은 없었다. 그같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17세기의 동해가, 울릉도 쟁계 이전까지 편년사료상 울릉도·독도 관련 기록의 부재를 초래했던 것이다.

왜구 대책으로 시작된 조선전기 울릉도 거민 쇄환이 결국 육지와 섬의 단절로 이어졌다. 반면, 주변 여건이 달라진 17세기 말의 울릉도·독도, 그 섬들을 둘러싼 제문제의 노정과 외부 충격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재인식과 새로운 접근으로 이어졌다.

편년사료에서 관련 기사가 막 재등장한 시기, 즉 울릉도 쟁계 초기에 국왕 숙종이 울릉도·독도에 대해 인지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조선 조정의 대응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조정에서 회답서계를 발송한 즈음 숙종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 측이 말하는 竹島가 鬱陵島임을 명확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⁶⁵⁾ 그리고 차왜가 회답서계의 개찬을 요구해왔을 때, 『芝峯類說』과 『輿地圖』에서 울릉도 관련 기록을 직접 확인하면서 반박을 지시하게 된다.⁶⁶⁾

숙종의 울릉도에 대한 재인식이 외교적 대응의 방향 전환 신호가 되었다면, 영조·정조 연간에는 울릉도 수토가 정착되고 횡수를 거듭하면서,⁶⁷⁾ 관련 정보가 축적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이

63)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3월 20일(을미). 이때 예정되었던 수토는 영동의 흥년으로 미루어져 이듬해 6월 월송만호 전회일에 의해 이루어졌다.(『비변사등록』 숙종 25년 7월 15일)

64) 신태훈, 앞의 논문(2021), 47~57쪽.

65)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1월 15일(계축). “上曰 昨見東萊府使狀啓 則所謂竹島 似是蔚陵島矣 來善曰 考見各人招辭 其中一人所到之島 又是別島矣 未知此島 果是倭人所謂竹島乎 黯曰 渠之所屬之島 似是竹島矣”

66)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윤5월 24일(경인).

67) 영조·정조 연간에 울릉도 수토는 10여 차례 있었다.

모색되는 모습을 보인다. 1769년(영조 45) 울릉도 관련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수습하여 새로운 책을 만들고, 울릉도의 지형과 산물을 기록한 지도를 제작하였다.⁶⁸⁾ 1793년(정조 17) 예조정랑 이복휴는 松島(독도)에 영토비를 세워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의 일화를 새겨넣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⁶⁹⁾ 이처럼 문헌 검토와 현황 파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축적해나가는 동시에, 18세기 말에는 울릉도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울릉도 採蔘이다. 1795년(정조 19) 논의되고 시행된 채삼은, 수토할 때 채삼꾼을 데리고 가서 울릉도에서 인삼을 채취하여 그것을 대일무역에 활용하려는 시도였다.⁷⁰⁾ 울릉도 인삼의 품질이 좋지 않아 얼마 못가 폐지되기는 했지만,⁷¹⁾ 18세기 이전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울릉도·독도가 일상적 통치의 영역으로 점차 진입하는 시대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울릉도·독도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이 모색되는 추세와 맞물려, 어로와 산물 채취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민간의 움직임도 한층 더 조직화되고 활발해졌다. 서울에 사는 이가 사람을 고용해서 울릉도에서 대나무를 베어오게 하거나⁷²⁾ 울산 어민들이 울릉도에 잠입하여 어복과 香竹을 채취한 일,⁷³⁾ 울릉도 인삼이 밀거래를 통해 일본으로 유통된 사건⁷⁴⁾ 등의 기록이 18세기 말 집중적으로 보인다. 조정에서는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토와 禁畝를 통해 대처해나가면서, 앞서 언급한 채삼 논의·시도와 같은 새로운 활용 방안도 모색해나갔다.⁷⁵⁾

울릉도 쟁계 당시는 섬의 경제적 가치는 상승하고 海防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일본과의 외교전 끝에 영유권을 확정한 조선 조정으로서는, 울릉도에 주민을 정착시키고 設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18세기 수준에서는 정기적인 수토를 통해 섬을 관리하고 섬의 새로운 활용을 모색하는 것까지가 허락되었다. 완전한 일상적 통치 영역으로 울릉도·독도를 포용하는 것은 개항기 이후 새로이 부과될 과제였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편년사료상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기록된 조선전기 태종~세종 연간, 조선후기 숙종~정조 연간의 울릉도·독도에 대해 검토하고, 두 시기 간 차별성에 대해 논하였다. 논지 전개를 위해, 관련 기록을 역주·집성한 자료집을 활용하여 관련 기사의 시기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쪽 먼바다에 위치한 섬이다. 우리 영토 가장 변방에 위치한 때문에, 대내

68) 『영조실록』 영조 45년 10월 14일(임술), 10월 16일(갑자) ;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10월 17일(을축).

69)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10월 1일(신유) ; 『일성록』 17년(1793) 10월 1일.

70) 『일성록』 정조 19년 6월 4일.

71)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3월 18일(병자).

72) 『일성록』 정조 11년 7월 16일, 7월 25일 ; 『비변사등록』 정조 11년 8월 29일.

73) 『비변사등록』 정조 11년 7월 24일.

74)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9월 30일(갑오).

75) 금령을 어긴 이들에 대한 처리에서도 조선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도 주목된다. 『세종실록』에는 犯禁人에 대해서 자세한 출신지역을 기재하지 않고, 무리를 이끄는 사람의 이름과 거주하는 범금인의 성별, 호구 수 정도만 기재하였다. 하지만 울릉도 수토제가 확립된 이후에는 범금인의 출신 지역 및 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신태훈, 앞의 논문, 2021, 63쪽) 이는 통치 방식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적 통치 행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 충돌의 발원지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울릉도·독도 해역은 외부와의 접점이자 경계선으로, 邊政 및 외교와 결부되면서 많은 이야기를 생산하였다. 그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조선시대 편년사료상 울릉도·독도 기사는 국가체제의 재정비가 추진되었던 시기, 전환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본문에서 초점을 맞춰 검토한 두 시기 역시 체제정비기, 전환기로서 의미를 명확히 지니고 있다.

조선전기 태종~세종 연간의 안무사, 순심경차관의 파견과 주민 쇄환은 울릉도·독도에서 왜구의 약탈과 살상, 그리고 백성들이 왜구와 결탁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상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울릉도 해역이라는 공간은 차단되었고, 경계를 넘어설 수 없었던 연해 주민들은 요도와 삼봉도에 관한 풍문을 생산해냈다.

그에 반해 울릉도 쟁계 이후 17세기 말, 18세기에는 울릉도에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파견하는 한편, 제한적이거나 채삼 등 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면서 관심을 높여갔다. 그리고 울릉도·독도는 좀 더 가까운 공간이 되어갔다. 이제는 미지의 섬에 대한 풍문이 아니라, 울릉도에 관한 정보와 이야기가 쌓여갔다.

조선전기와 후기 울릉도·독도 해역이 이처럼 상이하게 다가온 배경에는 전국적으로 도서 지역에 대한 민간인의 왕래와 거주가 늘고, 생산의 공간으로 재인식되는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또 대외적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왜구가 횡행했던 15세기와는 달리, 17세기 동해는 안전한 바다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태종~세종대와 숙종~정조대는 공통적으로, 외부 충격에 의해 울릉도·독도를 재인식하게 되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영토의 관리·유지라는 내정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 이후의 추이는 차단과 접근이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숙종~정조 연간 울릉도·독도에 대한 재인식은, 조선전기와 달리, 그 섬들을 좀 더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어갔다. 다만, 아직은 완전한 일상 통치 영역으로 울릉도·독도를 포용하지는 못했다. 그러한 과제는 개항기 이후 고종대로 이월되었는데, 그 시기 울릉도·독도에 관한 조망은 추후의 논고를 통해 시도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日省錄』, 『同文彙考』, 『邊例集要』
김강일·윤유숙·하혜정 편역, 『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 I, 동북아역사재단, 2012.
독도사료연구회, 『독도 관계 한국 사료 총서』 1~3, 경상북도, 2019~2021.

2. 논저

고동환, 「조선후기 島嶼政策과 元山島의 변화」, 『호서사학』 45, 2006.
김태훈, 「숙종대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성과」, 『한국사론』 47, 2002.
남호현, 「18세기 조선의 위기의식과 海防 논의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7, 2018.
송병기, 『鬱陵島와 獨島』, 단국대출판부, 1999.
손승철, 「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_____, 「조선전기 요도와 삼봉도의 실체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44, 2013.
신태훈, 「삼척영장과 울릉도 수토제」, 『이사부와 동해』 15, 2019.
_____, 「조선후기 월송만호와 울릉도 수토제」, 『한일관계사연구』 72, 2021.
유미림,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 2009.
_____, 「울릉도·독도의 명칭 변천과 ‘독도’ 인식의 연속성」, 『해양정책연구』 36-2, 2021.
장순순, 「17세기 조일관계와 ‘鬱陵島 爭界」, 『역사와 경계』 84, 2012.
장준혁, 「朝鮮世宗期 1·2차 通信使와 對日政策의 기초」, 『역사와 실학』 69, 2019.
정연식, 「15세기의 蓼島, 三峯島와 울릉도」, 『조선시대사학보』 92, 2020.
田保橋潔,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報』 3, 1931.

「동해상의 여건 변화와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김태훈) 토론문

한문종(전북대)

본고는 발표자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의 일원으로 3권의 자료집 발간에 직접 참여하여 얻은 결과물 -구체적으로는 『독도 관계 한국 사료 총서』 1(2019)을 활용하여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에 대한 조명을 시도한 연구이다. 주요 자료인 『독도 관계 한국 사료 총서』 1은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4종의 관찬 편년 자료에서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역주·집성한 것이다.

발표자는 머리말에서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를 태종~세종, 숙종~정조 그리고 고종 연간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가운데 15세기(태종~세종대), 숙종대 후반(숙종~정조대)의 두 시기를 논의의 범주로 두고, 편년사료 상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의 내용 분석과 시기별 분포도를 활용하여 조선시대 울릉도·독도를 조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을 밝혔다. 나아가 울릉도 주변의 동향은 어떠했는지, 국가의 접근법은 어떠했는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그 여파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새로운 시각을 도출하려 하였으며, 관련 기록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시기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의 경우 기록의 부재가 지니는 의미를 구명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발표자의 이러한 시도는 섬에 대한 국가의 관리·경영에 중점을 두고 영토사적 견지에서 울릉도·독도 및 그 주변 해역을 다루어 온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연구의 시야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는 海防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동해 지역의 관방 대책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1. 사료의 활용과 관련하여

본 발표에서 활용한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4종으로 모두 관찬 편년 자료이다. 울릉도·독도 및 그 해역에 관한 자료는 이외에도 『춘관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개인문집 등에서도 확인되며 그 수는 적지 않다. 더불어 일본측 사료도 같이 활용한다면, 발표자가 이용한 편년 사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조선전기 조선 조정이 울릉도·독도를 비롯한 남동해안 도서지역의 주민 쇄환을 추진한 주된 이유가 울릉도·독도 주민들의 왜구화에 대한 우려라는 의견에 대해서

발표자는 7쪽에서 왜구의 동해안 침탈은 고려 말 1352년부터 나타나며, 1379년(우

왕 5) “倭가 무릉도에 들어와 보름이나 머물다가 돌아갔다”, “왜가 우산도와 무릉도를 노략질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말선초 왜구가 울릉도·독도를 침탈했다는 기사는 2건에 불과하지만, 왜구의 동해안 지역 침탈이 빈번했던 만큼 울릉도·독도에 대한 침탈도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 울릉도·독도에 주민이 거주하게 되면 왜구의 침탈 대상이 되고 주민과 왜구의 결탁도 우려되는 등, 울릉도가 왜구의 소굴 혹은 동해안 침탈을 위한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울릉도·독도 주민 쇄환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섬 주민과 왜구의 결탁에 대한 우려’는 조선초기에도 여전했고, 그 우려가 조선 조정의 울릉도 주민의 쇄환 및 울릉도·독도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그런데 논문에서 제시한 사료는 왜의 울릉도 침범 사례에 불과하며, 오히려 조선 조정의 쇄환은 세금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을 쇄환하고, 그들을 왜구의 침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발표자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료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발표자가 제시한 가장 근접한 사료는 세종 8년 12월(각주 24)의 사료인데, 이는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언급한 것이지, 섬 주민과 왜구의 결탁 사례를 뒷받침 해주는 사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3. 6쪽의 인용문, 즉, 『태종실록』 태종 12년 4월 15일(기사) 나오는 流山國島는 어디로 추정할 수 있는가?

주 11)에서 발표자는 유산국도에 대해서 학자 간에 이견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유산국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추론은 유보한다.’고 했는데, 대략 어디라고 추정하는지?

인용문에 따르면 울릉도에 살던 이들의 일부가 유산국도로 옮겨갔고, 유산국도에 살던 이들이 고성의 어라진에 와서 정박하기를 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유산국도는 동해에 위치한 섬으로 추정되는데, 동해에는 울릉도·독도 외에는 섬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對馬는 日本의 藩屏’이라는 역사서술의 성립 배경
: 對馬藩의 右京圖書 지급 요청을 실마리로

이해진

머리말

고려 말부터 왜구가 기승을 부리던 가운데, 조선은 왜구의 온상으로 여겼던 쓰시마에 대한 회유책으로서 통교를 허가하고 圖書를 지급하여 세견선을 파견할 권리를 하사하는 등 경제적 시혜를 베푸는 방법을 펴나갔다. 이처럼 조선이 북방의 여진과 더불어 남방의 쓰시마에 대한 이른바 ‘羈縻’ 정책을 실시하면서, 점차 이들을 ‘藩屏’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정착해갔다. 쓰시마 또한 조선과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혜택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교 과정에서 조선의 ‘東藩’으로 자칭하는 모습을 보였다.⁷⁶⁾ 이러한 관계는 임진왜란으로 일시 중지되었지만, 전후의 강화교섭 과정에서 쓰시마를 통한 일본의 견제를 위해 ‘許和’를 실시하면서 재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⁷⁷⁾ 결과적으로는 1609년의 기유약조 체결을 통해 圖書의 지급과 세견선 파견이 복구되었다.⁷⁸⁾

그러나 기유약조로 복구된 20척의 세견선은 임진왜란 참전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인하여 이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이었다. 이는 무역 이익의 축소에 해당하기에, 이후 쓰시마는 기유약조가 규정하지 않은 다양한 명분을 통해 조선에 圖書를 요청하였다. 외교적 여건상 조선 또한 쓰시마의 존재가 필요하였기에 이러한 규정 외의 圖書 지급을 허가하였으며,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쓰시마가 외교문서 상에서 ‘東藩’으로 자칭하는 사례가 17세기 초반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쓰시마에 대한 조선의 ‘羈縻’ 정책은 이후 경제적 부담의 과중으로 인하여 점차 동요하였으며,⁷⁹⁾ 더욱이 1635년의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 이후로 막번 관계의 구심력이 강해지면서 조선과 쓰시마번 사이의 외교 의례 개정⁸⁰⁾이 이루어짐으로써 형식적으로도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쓰시마번에서는 조선의 외교적 예측을 거부하고 일본으로의 귀속 의식을 표출하는 사상적인 움직임⁸¹⁾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76) 조선 전기의 쓰시마 인식에 관해서는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정다함,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 · 藩屏 認識의 형성과 敬差官의 파견」, 『동방학지』 141, 2008; 木村拓, 『朝鮮王朝의 侯國的立場と外交』, 汲古書院, 2021 등을 참조.

77) 민덕기,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 · 日관계』, 景仁文化社, 1994 참조.

78) 이하 에도시대에 쓰시마번이 수행한 조일 무역의 전체상에 관해서는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참조.

79) 1629년에 조선에 파견된 기하쿠 겐포(規伯玄方)의 임무 중 하나가 공무역의 지연으로 수년간 체납된 公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田代和生, 「寛永六年(仁祖七、一六二九)、對馬使節の朝鮮國「御上京之時毎日記」とその背景(1)」, 『朝鮮學報』 96, 1980 참조. 실제로 『善隣通書五 慶長元和寛永通交編年』(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對馬島宗家文書’ 기록류 4753)에 수록된 쓰시마번 측의 서계를 살펴보면, 이전과는 달리 1627년 이후로는 조선의 ‘東藩’임을 자칭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80) 야나가와 잇켄 이후 進上이 封進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외교 문서상에서 禮曹와 쓰시마 島主가 서로를 대등하게 ‘閣下’로 칭하게 되었다.

81) 쓰시마번의 자기 인식 형성에 관한 연구로는 米谷均, 「近世日朝關係における對馬藩主の上表文について」, 『朝鮮學報』 154, 1995; 石川寛, 「對馬藩の自己認識: 「對州の私交」の検討を通じて」, (九州史學研究會 編) 『境界のアイデンティティ』, 岩田書院, 2008; 石田徹, 「對馬藩における歸屬意識と日韓關係認識: 訥庵 · 陶山庄右衛門を中心に」, (明治學院大學 國際學部 付屬研究所 編) 『研究所年報』 13, 2010; 松本智也, 「十八世紀對馬における「藩」言説: 朝鮮における對馬「藩屏」認識言説との交錯を通じ

17세기 후반은 쓰시마번에서 한일관계 관련 기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기록의 시대’(17세기 후반~19세기 중엽)⁸²⁾의 시작점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외교 관계 기록 외에도 쓰시마번 스스로의 역사를 정리한 기록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번주 소(宗) 가문의 족보에 해당하는 『宗氏家譜』를 꼽을 수 있다. 과거에도 쓰시마번은 몇 차례 번주 가문의 족보 편찬을 시도하였지만, 1686년에 이르러 번의 유학자 스야마 도쓰안(陶山訥庵) 등이 참여하여 완성할 수 있었다.⁸³⁾

역대 당주들의 치적을 기록한 『宗氏家譜』에는 초대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 시기에 있었던 임진왜란 이후의 조일 국교회복에 관한 서술도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1605년에 막부의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요시토시의 주선하에 조선에서 도일한 사명당 일행과 접견한 뒤, 양국의 강화를 중재한 요시토시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대는 이미 양국의 通交를 관장하고 있으니, 본국의 藩屏이다”라고 훈시하였다는 기사가 등장한다.⁸⁴⁾ 마쓰모토 도모야(松本智也)는 이를 쓰시마번의 역사서 속에 ‘쓰시마는 일본의 藩屏’이라는 기술의 첫 사례로 제시하였다.⁸⁵⁾ 그리고 쓰시마가 ‘조선의 藩屏’임을 말하는 조선의 기록을 인용하고 여기에 비판을 가한 18세기의 역사서들을 분석하여 쓰시마번의 ‘藩屏’론은 “쓰시마를 藩屏 혹은 藩臣으로 적은 조선 측의 史籍을 부정적 매개로 삼아 형성된 것”이라고 논하였다.⁸⁶⁾ 18세기에 이르면 조선 무역의 쇠퇴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쓰시마번은 막부에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수행해온 중요한 역할로서 ‘藩屏’의 武備를 주장하고, 이를 다지기 위한 비용을 요청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려 했다.⁸⁷⁾ 따라서 기록상에 새겨진 ‘藩屏’이라는 표현은 쓰시마번이 자신의 역할을 ‘창출’하고 역사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가 도출한 ‘藩屏’론의 사상적 정착에 앞서, 『宗氏家譜』의 편찬 직전인 1685년부터 이듬해까지의 圖書 요청 교섭 가운데 ‘藩屏’이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조선과 쓰시마번 사이에 소란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해당 교섭의 경과를 밝힘으로써 기존에 사상사적 영역에서 모호하게 이해해 왔던 ‘쓰시마는 일본의 藩屏’이라는 역사서술 출현의 실제적 계기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조선의 藩屏’이 아니라 ‘일본의 藩屏’이라는 쓰시마번의 자기 인식 형성과정을 해당 시기 외교·무역의 전개 양상 속에서 구조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쓰시마번의 자립 의식은 경제적 부담으로 공무역의 확대를 거부하는 조선의 반응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圖書 지급을 둘러싼 교섭에서 양측의 어떠한 현실 인식이 나타났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て」, (桂島宣弘 編) 『東アジア 遭遇する知と日本: 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思想史の試み』, 文理閣, 2019 등이 있다.

82) 長正統,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 50-4, 1968.

83) 鈴木棠三, 「解題」, (鈴木棠三 編) 『對馬叢書第三集 十九公實錄·宗氏家譜』, 村田書店, 1977, 198~199쪽. 이후 『宗氏家譜』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와 마쓰우라 가쇼(松浦霞沼) 등이 가세하여 1717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초판본의 편찬에 참여하였던 도쓰안 또한 한 차례 더 교정에 임하였다.

84) 鈴木棠三 編, 『對馬叢書第三集 十九公實錄·宗氏家譜』, 村田書店, 1977, 165쪽.

85) 松本智也, 「18~19세기 對馬 지식인들의 ‘藩屏’론: 역사서 편찬에 보이는 자아인식 형성」, 『한일관계사연구』 66, 2019, 239~241쪽.

86) 松本智也, 주 6) 논문, 141~147쪽.

87) 이해진, 「17세기 말~18세기 초 쓰시마번의 대막부교섭 논리 변화: ‘通交’의 개념적 확장과 ‘藩屏의 武備’론의 등장」, 『일본역사연구』 55, 2021.

1. 쓰시마번 기록 속의 ‘藩屏’ 관련 서술 : 陶山訥庵의 『對韓雜記』와 雨森芳洲의 『交隣提醒』

‘쓰시마는 일본의 藩屏’이라는 역사서술은 머리말에서 소개한 『宗氏家譜』를 시작으로, 18세기 이후에도 쓰시마번의 기록 속에서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宗氏家譜』의 편찬에 참여하였던 스야마 도쓰안은 『鐵砲格式僉議條目』(1711)에서 쓰시마가 ‘일본 藩屏의 땅’이기에 ‘食’(경제)과 ‘兵’(군사)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⁸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또한 막부에 수출은 삭감 반대를 청원하는 교섭 중에 집필한 『隣交始末物語』(1715)에서 일본 내에서 쓰시마가 ‘藩屏 제일의 要地’⁸⁹⁾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쓰시마는 일본의 藩屏’이라는 역사서술의 성립 배경을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서, 두 사람의 다른 저술을 통해 이러한 인식이 어떠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는지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도쓰안이 1710년대에 집필한 『對韓雜記』에는 ‘藩臣’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해당 부분에서 도쓰안은 일본 측 사신인 사이한(裁判)과 왜관과의 교섭을 담당하는 역관인 訓導가 주고받은 가상의 대화를 지어 아래와 같이 쓰시마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비판하였다.

훈도가 관에 들어올 때 나(사이한)에게 쓰시마의 사정을 논하였다. 그 말에 “쓰시마는 조선으로부터 圖書를 받아 세건선을 파견하여 조정의 은혜를 받으며, 사신을 통해 表文을 헌상하여 새 왕의 즉위를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쓰시마는 조선의 藩臣으로서 양국의 통교를 관할하는 셈입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내가 이를 듣고 이야기하기를, “(중략) 370년 전부터 110년 전까지 우리나라는 태평한 날이 적었으며, 혼란스러운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간사이(關西) 각 州의 유민들이 우리 지역을 건널목으로 삼아 고려의 국경을 소란스럽게 하였으며, 그 후에도 약탈하는 무리가 끊임없이 매번 우리 州에 왕래하니, 우리 州에서 나는 곡식으로는 새로 들어오는 유민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귀국을 침범하는 일이 매번 있었습니다. 귀국은 怯弱하여 밖에서 오는 외적을 막을 수 없어서 우리 州와 진제이(鎭西)의 각 州에 청하여 세건선을 받고 送使를 접대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미 국경을 지킬 무력이 없어 도리어 외적을 접대하는 일이 생겨난 것은 오로지 귀국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야 할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온 유민들을 머무르게 하고 귀국의 식량을 얻은 일은 우리 州 또한 부끄러움으로 여겨야 할 바입니다. 오늘날의 세건선은 실로 난세의 유풍입니다. 그렇다면 送使의 건은 귀국을 위해 꺼려야 할 일이며,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 꺼려야 할 일입니다. 귀하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꺼내 양국의 부끄러움을 들춘 일은 내가 귀하를 위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州는 本朝의 藩臣으로, 圖書를 귀국에 청한 일은 우리 州의 옳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만일 圖書를 청하여 세건선을 보내었기 때문에 귀국의 藩臣이라고 한다면, 禮曹의 書契에 어째서 우리 州를 賁島라 하였으며, 귀국을 가리켜 弊邦이라고 칭하였습니까. 우리 州를 가리켜 賁島라 칭하고 귀국을 弊邦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지역이 귀국의 藩臣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후략)”⁹⁰⁾

선행연구⁹¹⁾가 논한 바와 같이, 위의 일화를 통해 도쓰안은 쓰시마가 ‘조선의 藩臣’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선 측 기록⁹²⁾을 비판하고 이른바 일본 귀속 의식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88) 陶山訥庵, 『鐵砲格式僉議條目』 下(日本經濟叢書刊行會 編, 『日本經濟叢書』 13, 1914, 613쪽). 관련 연구는 주 6) 논문들을 참조.

89) 관련 연구로는 田代和生, 「對馬藩經濟思想の確立」, 『日朝交易と對馬藩』, 創文社, 2007(2000 초출); 吉村雅美, 「十八世紀の對外關係と「藩屏」認識: 對馬藩における「藩屏」の「役」論をめぐって」, 『日本歴史』 789, 2014; 松本智也, 주 6) 논문 등.

90) 陶山訥庵, 『對韓雜記』(日本經濟叢書刊行會 編, 『日本經濟叢書』 8, 1914, 397~398쪽).

91) 주 6) 논문들 및 이해진, 주 12) 논문 참조.

92) 『對韓雜記』에서 도쓰안은 조선의 『東文選』, 『懲毖錄』, 그리고 1590년에 조선통신사로 파견된 김성

圖書를 받아 세건선을 파견하고 국왕의 즉위 때마다 上表文을 보내기에 쓰시마가 ‘조선의 藩臣’이라고 하는 역관의 주장에 대하여, 사이한은 쓰시마가 ‘本朝(일본)의 藩臣’임은 양국의 서계에 적는 ‘貴島’와 ‘弊邦’이라는 호칭을 보아도 명백하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對韓雜記』에서도 쓰안은 조선과의 굴욕적인 외교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상기시킨 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쓰시마의 경제적 자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쓰시마의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존재로서 공무역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圖書’와 ‘세건선’을 거론하였다.

한편 ‘藩屏’이라는 용어는 호슈가 1728년에 조선 관계의 외교 지침서로서 집필한 『交隣提醒』에 아래와 같이 등장한다.

쓰시마가 조선을 위해 일본의 해적을 방어했던 일을 설명한다며 ‘쓰시마는 조선의 藩屏’이라고 우리 쪽 서한에 적었습니다. 藩屏이라는 단어가 자신이 주인에게 하는 말임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쪽의 학식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지금도 잘못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문자를 잘 읽고 이해하지 못해서는 생각도 그에 따를 것이니, 여하튼 쓰시마는 다른 지역과는 매우 달라서 학문과 재능이 뛰어난 이들을 데리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군에게 충심을 다한다고 해도 隣好의 도리를 바로 세우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식이 있는 이를 채용하시는 일이 중요한 바입니다.⁹³⁾

여기에서 호슈는 과거 조선과의 교섭에 임하였던 담당자들의 부족한 학식을 비판한 뒤, 조선 통교를 담당할 쓰시마번에서는 문자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학문과 재능이 뛰어난 이들을 채용해야 함을 건의하였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과거 ‘藩屏’이라는 용어의 뜻을 오인하여, 조선에 보낸 서한에 ‘쓰시마는 조선의 藩屏’이라고 적었던 사실을 제시하였음이 주목된다.

앞에서 살펴본 도쓰안의 『對韓雜記』 또한 가공의 일화이지만 조선과의 외교교섭 속에서 ‘藩臣’이라는 말이 화두가 된 모습을 논한 바 있다. 이상의 사례는 藩屏 혹은 藩臣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문제가 대조선 교섭의 장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 장에서 소개할 호슈의 다른 저작 속에서 실제로 이와 관련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2. 17세기 말 외교교섭 속에 등장한 ‘藩屏’ : 1685~1686년의 右京圖書 교섭

‘藩屏’이라는 용어가 문제시된 조일 교섭상의 사건은 1714년에 호슈가 집필한 『天龍院公實錄』 中卷⁹⁴⁾에 등장한다. 머리말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이는 1685년에 쓰시마번이 조선 측에 제기한 兒名圖書 요청과 관련한 내용이다.

본래 조선이 설정한 兒名圖書의 지급 명분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島主의 후계자에 대한 특례였으며, 당사자가 島主로 취임한 후에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쓰시마번은

일의 발언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93) 雨森芳洲, (田代和生 校注) 『交隣提醒』, 平凡社, 2014, 111쪽.

94) 호슈의 저작인 속칭 『宗氏實錄』은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소 가문의 역사를 기술한 『宗氏家譜』의 뒤를 잇는 시기의 사적을 정리한 것이었다. 먼저 호슈는 1714년에 덴류인(天龍院, 제3대 번주 요시자네)과 레이코인(靈光院, 제4대 번주 요시쓰구[義倫]) 시기의 역사를 각각 『天龍院公實錄』(上·中·下 3권)과 『靈光院公實錄』(1권)으로 집필하였다. 현재 출간된 영인본 泉澄一, 『宗氏實錄』(一)(二), 清文堂出版, 1981은 만년에 호슈가 추가로 완성한 『大衍院公實錄』(제5대 번주 요시미치[義方])과 『大雲院公實錄』(제6대 번주 요시노부[義誠])도 함께 수록한 제3~6대 번주 실록의 합본이다.

당시 이미 번주 자리에 있던 소 요시자네(宗義眞)의 彦滿圖書를 반납하지 않은 채, 兒名圖書의 중복 수급은 과거에도 있었던 관행이라는 주장하에 그 후계자인 우쿄(右京, 후일의 요시쓰구[義倫])의 兒名圖書를 요구하였다. 이 右京圖書의 지급 요청은 168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조선은 兒名圖書의 지급 원칙을 고수하며 연이어 거절하였다. 해당 요청은 요시쓰구가 번주 자리에 오른 1692년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1694년에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종결되었다.⁹⁵⁾

『天龍院公實錄』에는 1685년에 조선에 파견되어 右京圖書의 지급을 요청⁹⁶⁾하였던 사이한 후루카와 헤이베(古川平兵衛, 본명은 다이라노 아쓰나카[平厚中])가 교섭 중에 당시의 동래부사 柳之發에게 받은 서한들이 수록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중에서 ‘藩屏’ 용어와 관련이 있는 두 통의 서장 및 현존하는 다른 관련 고문서들을 분석하여 당시 교섭 상황을 복원하고, 그 속에서 해당 문제가 쟁점화한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제시할 사료는 『天龍院公實錄』에 인용된 동래부사의 첫 번째 서장 중 일부이다. 해당 서장은 헤이베가 쓰시마번 측의 요구사항을 두 통의 서계로 작성해 제출하자 동래부사가 비변사에 대응 지침을 요청한 뒤, 한양에서 보내온 답변안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보낸 것이었다.⁹⁷⁾ 그중 발췌한 아래의 인용문은 ‘藩屏’ 용어를 둘러싼 문제의 발단이 된 부분이다.

전일 보았던 두 폭의 글 속에 右京圖書 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일이 허락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청해왔을 때 마땅히 곧바로 허락했을 터입니다. 어째서 해를 넘겨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입니까. (중략) 貴島는 본국에게 交隣이라 이야기할지라도, 이미 圖書를 받아 進貢하니 또한 君臣의 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계 두 폭 속의 이야기에는 위아래를 모르고 공손함을 차리지 못한 바가 많으니, 어찌 뒷사람을 공경하는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후략)⁹⁸⁾

조선이 결코 右京圖書의 지급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동래부사가 거듭 강조한 해당 서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된 곳이 밑줄 부분이다. 여기에서 조선은 앞 장에서 살펴본 『對韓雜記』의 일화 속에서 조선 측 역관이 이야기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쓰시마가 圖書를 받아 세견선을 파견하여 ‘進貢’하니, 명목상으로는 ‘交隣’ 관계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君臣’ 관계와 다를 바 없다고 하며 쓰시마번 측의 서신이 예의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추궁하였다.

이 서장을 받은 헤이베 측은 당연히 반발하였으며, 본국에도 서신을 보내 상황 보고 및 대응 방안을 의논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1682년 통신사가 쓰시마에 체류할 때 가로들과 사전 교섭을 거쳐 이듬해에 체결한 계해약조의 조항에 따라, 왜관에 설치한 “制札과 際木을 넘어서릴 정도로 강하게 항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라는 격한 반응도 포함되었다.⁹⁹⁾ 이러한 헤이베

95) 이상의 내용은 유채연, 「조선시대 兒名圖書에 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62, 2018; 同, 「17세기 중반 조일관계의 전개와 彦滿圖書 교섭」, 『전북사학』 59, 2020; 同, 「17세기 후반 조일관계와 右京圖書 교섭」, 『한일관계사연구』 73, 2021; 同, 「17세기 전반 도서제 재개과 운영: 조일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1, 2023을 참조.

96) 덧붙여 당시 헤이베가 맡은 교섭 임무 중에는 右京圖書의 지급 요청 외에도 告還差倭와 漂差倭 파견의 제약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는 1682년 통신사 尹趾完 등이 쓰시마에 체류할 때 번의 가로들과 후일의 계해약조(1683) 체결과 함께 약속한 別差倭의 파견 금지 조항과 관련한 것이었다. 해당 교섭에 관해서는 장순순, 「조선후기 대일교섭에 있어서 尹趾完의 通信使 경험과 영향」, 『한일관계사연구』 31, 2008 참조.

97) 『接待倭人事例』 下(일본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소장 필사본), 乙丑(1685) 12월 22일.

98) 雨森芳洲, 『天龍院公實錄』 中(泉澄一 編, 『宗氏實錄』 (一), 清文堂出版, 1981, 187~192쪽). 『天龍院公實錄』은 본 장에서 다룬 두 통의 서장을 모두 ‘乙丑年(1685) 九月 答平厚中書’라고 표기하였지만, 이때는 헤이베가 사이한의 임무를 맡아 조선에 도착한 시점이다. 즉 실제 발신일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첫 번째 서장의 정확한 발신일은 후술할 주 25) 사료의 정보에 따르면 1686년 1월 11일이다.

9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對馬島宗家文書’ 고문서 2163(「(1686년) 正月十三日 古川平兵衛書狀」). 쓰시

의 상황 보고에 대한 쓰시마번 가로들의 답신은 다음과 같았다.

- 一. 앞서 동래부사에게 서찰을 전달한 뒤, 지난 11일에 답서가 한양에서 내려와 12일에 두 判事가 가져왔으며, 곧바로 飛船을 통해 보내주신 것이 도착해서 열람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서한 속에 ‘圖書를 받아 進貢하니, 또한 君臣의 의리가 있다’는 말이 있어 두 判事에게 “위의 문자는 조정과 동래부사가 사정을 알지 못하여 생각지도 못한 문체를 썼으니,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문자를 삭제한 사본을 본국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다는 사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답서의 원본을 지체시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귀하께서 동래부사에게 보낼 답서의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겠으니 그쪽의 書役僧에게 작성하게 하여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부사에게 받은 답서의 원본은 이번에 반환하겠습니다. 위의 문자를 수정하면 바로 飛船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답서에 조목조목 동래부사가 이야기해온 바들이 적혀 있으니, 우리 쪽에서 답변할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전하겠습니다.
- 一. 향후 이러한 서한이 도달했을 때는 그쪽에서 잘 검토하시고, 문자가 올바르지 못한 곳이 있는지는 우리 쪽에 보고하지 않도록 할 것이니, 書役僧에게 본부를 내려 조속히 수정하도록 (조선 측에) 통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는 조묘(貞享) 3년(1686) 정월 26일에 후루가와 헤이베에게 보낸 것이다.¹⁰⁰⁾

위 사료에서 보고 내용을 재확인한 바에 따르면, 헤이베는 동래부사가 보내온 서신에 ‘圖書를 받아 進貢하니, 또한 君臣의 의리가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역관을 통해 수정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가로들은 상대측 서신에 문구가 잘못된 곳이 있다고 해서 서신 교환이 지체되면 교섭도 지연될 것이니, 일단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해서 헤이베가 보낸 동래부사 서신의 사본을 참조하여 조만간 답서의 초안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답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서신에 문자가 올바르지 못한 것까지 본국에서 일일이 보고받지 않을 터이니, 향후 왜관에 있는 東向寺의 승려에게 지시하여 현지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글을 작성해서 조선 측 담당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음에 인용할 사료는 『天龍院公實錄』에 수록된 동래부사의 두 번째 서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후반의 〈 〉 부분은 편자인 호슈가 붙인 논평이다.

4글자의 수정을 원한다는 뜻에 동의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 역관 무리에게 통역하여 전하게 했는데, 상세히 듣지 못하였을까 염려하여 감히 다시 알리오니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貴州가 토산물을 奉進할 때 館所에서 四拜禮를 행하고, 더욱이 進獻을 행하여 사신이 신하로서 섬기는 뜻을 보여야 함은 모두 옛날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물며 옛 역사를 통해 보아도 타국의 신하가 이웃 나라에 사신으로 가면 반드시 臣이라고 칭하며, 君臣의 이치는 다른 나라와의 구별이 없습니다. 또한 글 속에 藩屏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곧 藩臣의 藩 자입니다. 이로써 추측하건대 君臣의 두 글자는 이미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며 進貢 등의 말도 제멋대로라고는 할 수 없으니, 읽사람을 받들고 존경하는 뜻이 또한 잘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奉進한 물품에 반드시 進貢이라는 문자를 썼습니다. 도주가 우리나라에 이미 藩屏이었으니, 이치가 분명합니다. (중략)

〈글 가운데 소위 4글자란, 앞글의 ‘군신의 의리(君臣之義)’이다. 후일에 이를 ‘이미 圖書를 받아 토산물을 奉進하니, 예의의 지엄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한 구절로 고쳤다. 우리 주가 과거에 賊

마번 측의 주장에 따르면, 1682년의 통신사가 요구조건을 협상할 때 양보의 차원에서 右京圖書의 지급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口上書」, 『朝鮮御用向帳裁判古川平兵衛在館中』,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對馬島宗家文書’ 기록류 5254). 즉 헤이베의 강경책은 1682년 통신사와의 합의사항을 조선 측이 먼저 깨버린 셈이니, 상호 파기의 제스처를 보여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00) 「兒名送使一件」, 『分類紀事大綱』(第1輯) 20(일본 국회도서관 DB 참조).

船을 방어하였던 일이 있었다. 따라서 문서에 쓰기를 ‘우리는 귀국의 藩屏’이라 하였으니, 어찌 일이 잘되기를 바라겠는가. 필시 藩屏이 신하를 칭하는 말임을 알지 못하여 무식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개탄할 만하다>¹⁰¹⁾

사료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장은 첫 번째 서장에 있던 ‘圖書를 받아 進貢하니, 또한 君臣의 의리가 있다’라는 문구의 수정을 요청해온 헤이베에게 전달한 답서였다. 여기에서 동래부사는 문구의 수정 요청에 따를 수 없다는 뜻을 이야기하였다. 다만 호슈의 논평에서 알 수 있듯, 결국 동래부사는 헤이베의 요청을 수락하여 문구를 수정한 서신을 재발신하였다. 이는 1686년 3월 18일에 쓰시마번 가로들이 헤이베에게 보낸 “進貢·君臣의 4글자”를 고친 서계가 본국에 잘 도착하였다는 답신¹⁰²⁾으로도 다시금 확인된다. 덧붙여 이 답신을 통해 위 사료 후반부의 논평에서 호슈가 ‘4글자’로 거론한 ‘君臣之義’는 ‘進貢’과 ‘君臣’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사료의 밑줄 친 부분들에서 동래부사는 헤이베의 답신에 담긴 ‘藩屏’이라는 말이 결국은 ‘藩臣’과 같은 의미이니, 이전 서장의 문구와도 의미가 통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호슈의 논평을 통해서도 또한 헤이베가 보내온 서장에 ‘우리는 귀국의 藩屏’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으며, 이것이 파장을 일으켰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對馬島宗家文書’에 포함된 고문서 중에서 헤이베가 문구의 수정을 요청한 서장의 초안으로 보이는 사료를 찾아낼 수 있었다.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봄날이 따스합니다. 엎드려 귀하의 단정한 행실과 청렴한 덕을 생각합니다. 답서 속에 ‘圖書를 받아 進貢하니, 또한 君臣의 도리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敝邦)가 귀국의 藩屏으로서 도적이 바다를 지나는 것을 금하고 사신이 왕래하는 것을 호위하여 쇄환하는 것이 고금의 常道였습니다. 이에 따라 圖書를 받았던 것이 기원이 되어 이를 내려주는 것이 도리가 되었습니다. 어찌 도서를 받았던 기원이 없는데 이를 받을 것이며, 내려주는 도리가 없는데 이를 받겠습니까. 통교의 기원은 귀국이 소상히 아는 바이니 많은 말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소인이 엎드려 아뢰건대, ‘進貢’과 ‘君臣’이라는 4글자는 우리 州의 도리상 언짢은 문구입니다. 다만 원하옵건대 이 4글자를 고쳐주시고 나머지 요구사항을 우리 州에 전달해 주시면, 곧이어 반드시 전부 회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삼가 이를 살피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¹⁰³⁾

이처럼 왜관 현지에서 헤이베가 ‘進貢’과 ‘君臣’이라는 글자의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서신에는 실제 동래부사에게 전달할 때 약간의 정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귀국의 藩屏(敝邦爲貴國之藩屏)’이라는 문구와 대동소이한 표현이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헤이베의 논지는 쓰시마는 조선과 君臣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藩屏’으로서 외적의 방어와 사신의 중재를 맡아왔으며, 그 대가로 圖書를 받은 일이 기원이 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논지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동래부사의 두 번째 서신과 호슈의 논평이 지적하듯 용어의 의미를 착각한 결과였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전반부가 결손된 상태여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아래의 서장을 보면 후일에 본국의 가로들 또한 헤이베의 실수를 추궁한 것으로 추정된다.

101) 雨森芳洲, 『天龍院公實錄』中(泉澄一 編, 『宗氏實錄』(一), 清文堂出版, 1981, 195~197쪽).

102) 「兒名送使一件」, 『分類紀事大綱』(第1輯) 20(일본 국회도서관 DB 참조).

103)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對馬島宗家文書’ 고문서 6102.

(前缺)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미 없이 다만 불가하다는 답신이 아닙니다. 문자는 세세한 착각이지만 문구가 크게 잘못되었으며, 또한 도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바가 있어 필시 크게 착각할 일이 많으니, 검토하지 않고 서신 등을 보내는 일은 지극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향후 구두로는 그쪽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의 지시 없이 서신으로 소통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저쪽의 답신을 열람하시면 “이후의 논의는 저도 생각한 바가 없으니, 이번에 에도에 여쭙어보겠습니다. 후일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조만간 구두로 적절히 이야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저들은 유별나게 증거만을 들이대는 것이 국풍이니, 더욱 매사 사려 깊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뜻을 이야기해야 하기에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삼가 말씀드립니다.

추신. 그 후 동래부사와 대면하였습니까. 그쪽의 조짐은 매사 거절을 이야기해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686년) 7월 18일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左衛門)

히구치 사에몬(樋口左衛門)

스기무라 이오리(杉村伊織)

후루카와 헤이베님¹⁰⁴⁾

이처럼 가로들은 헤이베가 저지른 ‘검토하지 않고 서신 등을 보내는 일’을 추궁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하달하였던 조선 측 서장의 문자 수정은 왜관 현지에서 해결하라는 지침을 수정하여, 본국의 지시 없이 서신으로 소통하는 일을 금한다는 조치를 새로이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헤이베의 서장에 담긴 ‘우리나라가 귀국의 藩屏’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경위를 통해 쓰시마번이 1686년에 편찬한 『宗氏家譜』에 “그대는 이미 양국의 通交를 관장하고 있으니, 본국의 藩屏이다”라는 서술이 담긴 배경을 추측할 수 있다. 같은 해 진행 중이었던 右京圖書 교섭 가운데, 쓰시마가 예로부터 조선으로부터 『圖書』를 받아 進貢하니, 또한 君臣의 의리가 있다’는 동래부사의 언급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실무자가 용어의 뜻을 오인한 나머지 쓰시마는 조선과 ‘君臣’ 관계가 아니라 조선의 ‘藩屏’이라고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후 쓰시마번 내에서는 해당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대체로 피하는 추세였다고 보인다.¹⁰⁵⁾ 하지만 본국에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직후 이와 같은 중대한 외교적 사고의 재발 방지를 취지로 삼아, 곧바로 쓰시마가 조선이 아닌 일본의 藩屏임을 초대 쇼군인 이에야스의 입을 빌린 불변의 진리로서 역사서술 속에 명시하였던 것은 아닐까.

3. 공무역을 둘러싼 이해의 충돌

: 特恩과 誠信

이어서 고찰하고자 하는 바는 兒名圖書의 지급 문제에 반영된 조선과 쓰시마번 양측의 논리 및 그 차이로 인한 쟁점이다. 이를 통해 해당 요청이 실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이 주고받은 서신을 재검토하면서 그 논리를 파악해보겠다.

먼저 헤이베가 조선 측에 右京圖書의 지급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두

104)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對馬島宗家文書’ 고문서 5716.

105) 실제로 『分類紀事大綱』의 「兒名送使一件」에도 조선 측의 ‘進貢’과 ‘君臣’ 표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한 자료들은 포함되었지만, 쓰시마번 측 사신이 쓰시마가 조선의 ‘藩屏’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후일의 기록 중에서는 다만 본론에서 언급한 호슈의 저서들 정도가 희미하게나마 사건의 존재를 파악하게 해 준다.

통의 서계 중 한 편의 일본어 초안인 「口上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 一. (제4조) 히코산(彦三)의 銅印을 귀국에서 다시 되돌려보낼 때, ‘이후의 예로 삼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찍이 알지 못한 바입니다.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있으니, 대략을 말씀드립니다. 이전 태수 시절 세이잔지(西山寺)의 徐首座를 使僧으로 삼아 히코산의 도장을 되돌려보내고 요시자네의 도장을 청하였을 때, 조정이 배려하여 두 도장을 함께 보내게 하자 매우 과분하게 여겨 이 일에 예를 표하였습니다. 徐首座가 귀국할 때 받은 답서 내용을 열람하였더니 ‘定例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徐首座가 이야기하기를, “두 도장을 지금 되돌려 보내도 거듭 例로 삼지 말라고 해서는 보람이 없는 일입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하자, 귀국이 승인하여 위의 일곱 글자를 삭제해서 답서를 적어 보내준 것이 지금도 쓰시마에 있습니다. 위의 사정을 모두 전 태수가 예도에 보고하고 지시를 얻어 두 도장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 一. (제5조) 예로부터 양국의 통교와 관련된 서한의 기록물은 사본을 만들어 예도에 바쳤습니다. 이에 따라 현 소군님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그대로 해 왔습니다. 두 개의 도장 건은 古例가 있어서 서한의 기록물에도 상세히 보입니다. 지금의 태수 요시자네는 3살 때 귀국으로부터 송사를 부여 받았지만, 우료가 지금까지도 송사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귀국이 誠信의 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국의 통교는 어떠한 것이든 예도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거듭 해서 우료가 送使를 부여받지 못한 일에 관하여 하문이라도 있을 때는 귀국을 위해서도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一. (제6조) 이전 태수 부자에게 두 개의 도장을 보내었던 일은 正統 연간의 예에 따른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자가 두 送使를 파견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이르러 태수에게 적장자의 送使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당대 태수가 언짢게 생각할 일입니다. 게다가 古例를 적용하지 않는 점 또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자네의 도장을 반환한다면 우료의 도장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시자네의 도장을 반환하고 우료의 도장을 청해서는 이익이 없는 일이니, 청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귀국이 두 개의 도장을 돌려보내 주신 후에는 태수가 살아있는 동안 반환하는 일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히코산의 도장은 이전 태수가 죽은 뒤에 반환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例가 되었으므로, 이번 태수의 치세 동안은 도장을 반환하지 않을 셈입니다.
- 一. (제7조) 현 태수의 送使는 家督을 상속하여 영지 내의 정무를 다스리는 공으로 인하여, 태수 자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냅니다.
- 一. (제8조) 적장자의 送使는 이후 현 태수와 변함없이 교섭을 맡으라는 축하로 보냅니다.
- 一. (제9조) 歳條 送使는 양국의 변함없는 교섭을 위해 約條에 따라 보냅니다. 위의 각 송사는 이전부터 내력이 있어서 결정되었으니, 가벼이 논단하기 힘든 것입니다.¹⁰⁶⁾

이처럼 쓰시마번에서는 헤이베의 파견 때 兒名圖書의 중복 수령을 요구하기 위한 전례를 파악하여 조선 측에 제시하였다. 사료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兒名圖書의 중복 수급은 세종 시대에 해당하는 正統 연간(1436~1449)에 첫 사례가 보이며, 2대 번주 요시나리(義成) 시기인 1642년에도 요시나리의 彦三圖書를 반납하지 않은 채 그 아들인 요시자네의 彦滿圖書를 함께 허가받은 전례가 있었다. 한편 이전부터 조선은 쓰시마번의 주장을 거절할 근거로 1642년에 두 도서를 함께 허가하면서 ‘이후의 예로 삼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던 사실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쓰시마번 측이 당시 교섭을 맡았던 西山寺의 徐首座가 조선 측을 설득하여 해당 7글자를 삭제한 서계를 다시 받았으니 무효라고 해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圖書는 일찍이 양국의 약조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수령할 때 받은 서계의 사본을 막부에 전부 제출하여 보고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막부도 내막을 알고 있는 일이니,

106) 「口上書」(전 10조 중 제4~9조), 『朝鮮御用向帳裁判古川平兵衛在館中』.

만일 이번의 圖書 지급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막부가 언짢게 여겨 양국 관계에 흠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은근한 협박의 어조도 덧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조선 측의 답변이 앞 장에서 살펴본 동래부사 柳之發의 첫 번째 서장이었다. 앞 장에서 (중략)으로 처리한 부분 가운데, 헤이베가 제시해온 전례에 오류가 있음을 설명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정은 貴島의 뜻이 오로지 公木에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를 원하지 않아 특별히 일시적인 은혜를 내려 彦三·彦滿의 圖書를 함께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禮曹에 지시하여 후일의 예로 삼지 말라 하였습니다. 禮曹가 명을 받들어 서계를 작성해 보내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신구 圖書는 잠시 함께 돌려보내도록 허가한다. 이는 잠시 특별히 베푸는 은혜이니, 후일의 예로 삼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러한 조종의 선례를 저버리고 貴島의 청에 따라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서쪽 속에 또한 ‘서계의 7글자를 삭제하였다고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놀랍고도 괴이합니다. 당초 彦三·彦滿의 두 圖書를 함께 지급할 때, 서계 속에 ‘圖書를 요청하였으니, 잠시 함께 지급하는 것을 허가한다. 정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貴島의 徐首座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서계 속의 ‘索’자와 ‘給’자, ‘정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에 도주가 와서 청했다는 기색이 명백히 보입니다. 이 서계를 집정들에게 보이면 필시 큰 죄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索’자와 ‘給’자는 결국 삭제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정례로 삼아서는 안 된다(不可援爲定例也)’는 7글자는 곧바로 ‘후일의 예로 삼지 말라(非他日可援之例也)’는 8글자로 고쳤습니다. 그 말뜻이 처음에 비해 더욱 엄준하였지만, 徐首座가 변명 없이 받아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를 두고 삭제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오늘날 두 圖書를 함께 받을 증표로 삼고자 하는데, 근본이 없는 이야기이니 어찌 여러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서계 등본은 하나는 禮曹에 있으며, 하나는 弊府에 있습니다. 지금 두 곳의 등본으로 생각해보건대 전후 서계의 문자가 해와 별처럼 분명하니, 어찌 거짓이 있겠습니까. 또한 貴島가 규정 외의 圖書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뢰었던 일이 또한 이미 많습니다. (중략) 지금 貴島가 과거의 特恩에 감응하지 않고, 도리어 점차 바라지 못할 청이 있어 구차한 말들로 억지로 다그치며 여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놀랍고 탄식이 나올 지경입니다. 貴島가 만약 古例를 끌어다가 반드시 右京圖書를 얻고자 한다면, 본국 또한 마땅히 오로지 古例를 준수하여 먼저 副特送使 이하 각 圖書를 거두어들일 것이니, 어찌 彦滿圖書만을 환수하겠습니까. (중략)¹⁰⁷⁾

여기에서 동래부사는 과거 彦三·彦滿圖書를 함께 허가한 것은 조정이 내린 ‘특별히 일시적인 은혜’이며, 이는 조종의 선례이니 저버릴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서계의 7글자를 삭제하였다고 한다’라는 쓰시마번 측의 주장은 실제로 禮曹와 東萊府의 등본을 대조하여 확인해본 결과, 삭제한 것이 아니라 ‘후일의 예로 삼지 말라’는 8글자로 고친 것이 확실하기에 그 취지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반박하였다. 이어서 이처럼 쓰시마가 계속 古例를 따진다면,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기한이 지난 彦滿圖書는 물론이거니와 본래 古例(1609년의 기유약조)로 규정하지 않은 副特送使 등도 마땅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彦三·彦滿圖書의 중복 수급이 이루어졌던 전례를 조선과 쓰시마번 측에서 다르게 기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口上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과거 쓰시마번은 두 도서를 조선으로부터 수급한 사실을 서계 사본의 제출과 함께 막부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또한 동래부사의 답장에서는 과거 徐首座가 서계 문구의 수정을 요구한 이유는 ‘도주가 와서 청했다는 기색이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막부에 보고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즉 막번 관계상에서 圖書는 어디까지나 조선이 쓰시마번의 외교적 공로를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107) 雨森芳洲, 『天龍院公實錄』中(泉澄一 編, 『宗氏實錄』(一), 清文堂出版, 1981, 187~192쪽).

지급하거나 혹은 약조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만 묵인될 수 있으며, 쓰시마번이 조선에게 요구하여 받아내었다는 실상이 드러나서는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정을 거친 ‘후일의 예로 삼지 말라’라는 8글자의 문구 또한, 여전히 자발적 혹은 약조에 따른 지급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처럼 만족스러운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쓰시마번 측은 일단 수정된 서계를 그대로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온 뒤, 사본을 만들 때 해당 문구를 삭제해서 막부에 제출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口上書」 작성 때 참조한 후일의 기록물 또한 막부에 제출한 사본을 기초로 작성하였을 것으로¹⁰⁸⁾ 보인다. 앞장에서 살펴본 가로들의 서한에 담긴 ‘대체로 저들은 유별나게 증거만을 들이대는 것이 국풍’이라는 비아냥 섞인 발언을 곱씹어보면, 쓰시마번 측은 禮曹와 東萊府의 등록을 근거로 삼은 동래부사의 반발을 통해 비로소 서계가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양측의 논리를 총합해보겠다. 먼저 조선 측의 논리는 본래 圖書는 조정이 내린 特恩이며, 兒名圖書와 같은 규정 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니 요행으로라도 이를 거둬 바라지 말라는 것이었다. 반면 쓰시마번 측은 약조로 정해진 圖書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兒名圖書의 중복 수령 또한 이미 굳어진 선례가 있으니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誠信의 도리’¹⁰⁹⁾를 저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에는 전례의 숙지 면에서도, 그리고 공무역에 관한 근본적인 입장에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후 兒名圖書의 지급은 중복 없이 島主의 후계자에 한정하고 취임 후에는 반납해야 한다는 합의 및 전대의 兒名圖書가 실제로 반납된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맺음말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쓰시마는 일본의 藩屏’이라는 역사서술의 성립은 담론 및 사상의 영역에 앞서 兒名圖書의 지급 문제를 둘러싼 실제 외교 교섭상의 사건에서 촉발되었다고 보인다. 조선이 쓰시마번의 요청을 거절할 때 등장한 ‘進貢’과 ‘君臣’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가운데, 쓰시마번 측 사신이 ‘藩屏’이라는 용어를 오인해서 이를 제기하여 회답하고 말았던 외교적 사고가 그 계기였다.

조선 후기 圖書와 세건선을 중심으로 한 공무역의 재개는 쓰시마에 대한 ‘羈縻’ 정책의 지속을 도모하면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본디 ‘羈縻’ 정책은 경제적 시혜의 중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조선이 무역 지출을 기피한다면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딜레마 속에서 조선은 과거의 중복 지급 사례는 일시적인 特恩이었음을 강조하며 쓰시마번의 兒名圖書 지급 요청을 거절하였다.

17세기 중엽 이후 쓰시마번은 규정 외의 圖書 지급 요청에 대한 조선 측의 강한 반대로 공무역의 확대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¹¹⁰⁾ 하지만 지리적 여건상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

108) 1698년에 편찬된 쓰시마번의 외교문서 사료집인 『善隣通書十四 太守小字圖書事考往復并小序』(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對馬島宗家文書’ 기록류 4763)의 해당 서계 사본에도 ‘일시적인 특은을 후일의 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時絶之恩非他日可援之例也)’는 문구에 ‘本書는 12글자를 삭제하였다(本書刪去十二字)’라는 할주가 붙어 있다.

109) 『交隣提誠』의 ‘誠信’ 관련 내용을 분석한 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가 논하였듯, 여기서 이야기하는 ‘誠信’이란 전례와 약조에 기반한 양자의 합의를 전제로 둔 가운데 쓰시마번의 이익을 최선으로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였다(米谷均, 「雨森芳洲の對朝鮮外交: 「誠信之交」의理念と實態」, 『朝鮮學報』 148, 1993, 24~25쪽).

110) 17세기 중엽 이후 쓰시마번의 공무역 확대 계획 및 관련 교섭의 양상에 관해서는 李晔鎭, 「十七世

하였던 쓰시마번에게 조선과의 무역은 여전히 필요악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가운데 右京圖書의 요청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무역이 더 이상 외교적 예측의 산물이 아니며, 국교회 북 이래로 약조를 통해 규정된 양국 관계의 중개자라는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서 전례만 있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정당하게 圖書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나갔다.¹¹¹⁾ 조선 또한 17세기 후반부터는 약조의 체결을 통한 규정화로 쓰시마번을 효율적으로 제약하는 방안을 적용해가면서, 양자의 외교적 입장은 적정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외교적 수사가 이른바 ‘誠信의 도리’이다. 근세 조일 관계 속 ‘誠信’의 의미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공무역과 마찬가지로 왜관의 開市大廳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역 또한 본래는 조선이 왜구의 약탈을 예방하기 위한 시혜적 정책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중국 외교와 무역에서 발생하는 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서로 부족한 물자를 교역하는 시장의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본래의 구상 이상으로 대일 사무역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조일 무역에서 이른바 ‘시장의 논리’가 강해지는 경향 또한 시혜적 조공 무역을 근간으로 삼았던 조선 전기의 ‘羈縻’ 정책을 동요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발표에서 다루지 못하였기에,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紀後半の日朝關係と對馬藩: 權現堂送使の新設交渉を中心に」, 『史林』 100-4, 2017 참조.

111) 다만 외교적 수사로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가능하였는지 몰라도, 공무역이 본디 조선의 ‘羈縻’ 정책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 쓰시마번 내에서는 기존의 대조선 외교·무역 체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다. 대표적으로 18세기 말의 미쓰야마 라이카(滿山雷夏)는 『對韓雜記』에 반영된 도쓰안의 주장을 계승하여 중세 이래 쓰시마가 해왔던 외교와 무역을 ‘私交’로서 비판하고, 이른바 公儀의 외교인 ‘官交’를 담당하는 존재로서 자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米谷均, 주 6) 논문; 石川寛, 주 6) 논문; 松本智也, 「對馬藩儒滿山雷夏の自他認識: 「藩屏」論と「禮」論より」, 『立命館文學』 655, 2018 등을 참조. 마찬가지로 王政復古 이후에도 쓰시마번 내에서 종래의 ‘私交’를 지양하고, 이른바 ‘家役’으로서 신정부의 ‘公交’를 대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단 같은 시기 외무성 내에서는 쓰시마번이 ‘家役’으로서 실시해왔던 대조선 외교를 ‘私交’로, 외무성이 총괄하는 대조선 외교를 ‘公交’로 규정하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石川寛, 주 6) 논문 참조.

이해진, 「對馬는 日本의 藩屏」이라는 역사서술의 성립 배경 : 對馬藩의 右京圖書 지급 요청을 실마리로」 토론문

장 순 순(전주대)

○ 논문의 의의

발표자께서는 조선후기 한일관계, 그 가운데 17~18세기를 중심으로 일본측 사료에서 보이는 역사서술 및 용어에 주목한 연구를 해 왔으며, 다수의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17세기 말 朝日關係의 변화와 對馬藩」(『일본역사연구』 49, 2019), 「17세기 말~18세기 초 쓰시마번의 대막부교섭 논리 변화 : ‘通交’의 개념적 확장과 ‘藩屏의 武備’론의 등장」(『일본역사연구』 55, 2021), 「조일 국교회복에 관한 에도시대의 역사서술 : 17세기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 78, 2022), 1636년 조선통신사의 닛코 참배와 그 기억 — 근세 일본의 ‘武威’ 외교에 관한 재고 — (『동양사학연구』 163, 2023). 이러한 발표자의 연구 경향은 일종의 ‘개념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발표도 그 동안 해 오신 연구의 연장으로 보인다. 발표자의 이러한 시도는 조선후기 한일관계사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주목할 만한 연구경향이며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표자께서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쓰시마번에서는 조선의 외교적 예측을 거부하고 일본으로의 귀속 의식을 표출하는 사상적인 움직임, 즉 일본에 대한 藩屏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면 조선 무역의 쇠퇴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쓰시마번이 막부에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수행해온 중요한 역할로서 ‘藩屏’의 武備를 주장하고, 이를 다지기 위한 비용을 요청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려 했다(이해진, 위의 논문, 『일본역사연구』 55, 2021)고 보고, 외교 기록상에 보이는 ‘藩屏’이라는 표현은 쓰시마번이 자신의 역할을 ‘창출’하고 역사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선행연구가 도출한 ‘藩屏’론의 사상적 정착에 앞서, 『宗氏家譜』의 편찬 직전인 1685년부터 이듬해까지의 圖書 요청 교섭 내용을 ‘실마리로’ 해당 교섭의 경과를 밝힘으로써 기존에 사상사적 영역에서 모호하게 이해해 왔던 ‘쓰시마는 일본의 藩屏’이라는 역사서술 출현의 실제적 계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족이기는 하나 일본의 쓰시마 번병의식에 관한 연구는 일본측 연구에서는 다루어진 바가 있으나 국내학자에 의한 연구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간의 국내 연구는 조선과 쓰시마 간의 藩屏의식에 주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논의 및 질문

1, 발표자께서는 쓰시마번이 외교문서 상에서 조선의 ‘東藩’을 자칭하는 사례가 17세기 초반까지 나타났으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조선의 외교적 예속을 거부하고 일본으로의 귀속 의식을 표출하는 사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배경은 경제적 부담의 과중으로 인해 쓰시마에 대한 조선의 ‘羈縻’ 정책이 점차 동요하였으며, 일본 국내적으로는 1635년의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 이후로 막번 관계의 구심력이 강해지면서 수반된 ‘조선과 쓰시마번 간의 외교 의례 개정’ 등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17세기 초부터 전개된 ‘조선의 藩屏’에서 ‘일본의 藩屏’으로 쓰시마가 자기 인식을 바꾸게 된 데에는 쓰시마가 對조선 무역에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적어지게 된 것이 그 출발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일본 국내정치 세력의 변화, 예컨대, 德川幕府의 幕藩體制의 성립으로 幕藩 관계의 구심력이 강화된 것에서 배경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하다.

2. 위의 질문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발표자께서는 1635년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 이후로 조일간의 외교 의례 개정을 ‘조선과 일본 에도 막부 사이의 ’외교 의례 개정‘으로 보지 않고 ‘조선과 쓰시마번 간의 외교 의례 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7세기 이후 조일관계가 조선-에도막부라는 직접 교섭이 아니라 조선-쓰시마-에도막부라는 경로로 교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쓰시마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의 중간 매체로서의 존재이지 조선의 외교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조선과 쓰시마번 간의 외교 의례 개정’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德川幕府는 1635년 이후 以酤菴輪番制 등의 시스템을 통해 對조선외교를 직접 관할하게 되었고, 조선은 일본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막부 쇼군을 의미하는 ‘日本大君’ 호칭을 사용하여 외교문서의 상대가 막부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은 幕末明治 초기에 쓰시마번이 중앙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막부의 대조선 교섭자로서 수행해 왔던 외교의례와 무역을 ‘私交’로 주장한 시각과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3. 잘 아시다시피 조선은 전기 이래로 쓰시마를 조선의 藩屏으로 인식해 왔으며, 쓰시마도 조선의 東藩을 자칭해 왔다.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한 변명의식 내지 인식은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17세기 초부터 쓰시마가 ‘조선의 藩屏’에서 ‘일본의 藩屏’으로 자기 인식을 변화해 가고 있다는 움직임을 조선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인지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조선측의 반응 내지 조치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더

불어 17세기 초반부터 쓰시마가 취하기 시작한 ‘일본 藩屏’ 의식에 대해 막부는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했으며, 막부 통치시스템 안에서 정책상으로 이를 반영한 조치 등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4.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 “조일 무역에서 이른바 ‘시장의 논리’가 강해지는 경향 또한 시혜적 조공 무역을 근간으로 삼았던 조선 전기의 ‘羈縻’ 정책을 동요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에서 ‘시장의 논리’가 강해지는 경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보완 설명을 부탁한다.

조선후기 표왜입송제도의 변화와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 과정*

부경대 해양인문학연구소 심민정

머리말

1. 표왜 입송제도의 마련
 2. 표왜입송회사차왜의 파견과 접대
 - 1) 표왜입송회사차왜와 경접위관 접대 정착
 - 2) 향접위관 접대로 변화하는 표왜입송회사차왜
 3. 표민순부와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
- 맺음말

머리말

조선시대 ‘바다’는 ‘전쟁’과 ‘평화적 교류’의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특히 조선 전기의 바다는 왜구의 활동 등으로 인해 ‘금지된 공간’, ‘침략과 전쟁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시행되고 있던 海禁政策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 간 漂流人 또한 犯越者, 경계의 대상으로 치부되었다. 특히 왜구의 주체로 볼 수 있는 표류일본인에 대한 경계는 더욱 심하여 교린국의 백성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賊倭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조선 전기에 표류조선인이 송환된 횟수가 45건인데 비해 표류일본인이 入送한 것은 고작 4건 정도에 불과했다¹⁾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끝난 후 표류일본인에 대한 인식 및 송환체제 또한 변화를 겪었다. 조선과 일본 간에 국교가 회복되고 평화적 교린체제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양국 사신의 왕래 및 접빈례가 정비되었고, 표류인 송환체제도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상호간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표류인을 송환하는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조선후기 한일 양국 표류인과 관련한 연구는 荒野泰典²⁾, 池內敏³⁾, 이훈⁴⁾, 정성일⁵⁾, 민덕

* 참고로 본고는 미완성의 발표문으로, 주로 『接倭式例』, 『漂倭入送膳錄 二』(奎12884), 『回謝差倭膳錄』(奎12883), 『漂倭入送回謝膳錄』(奎12920)에 제시된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 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57~59쪽.
2) 荒野泰典, 「近世日本の漂流民送還體制と東アジア」, 『歴史評論』400, 1983; -----,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88.
3) 池內敏, 「天明四年長州惡黨漂流民一件」, 『歴史評論』516, 1993; -----, 「李志恒 <漂舟錄>について」, 『鳥取大學教養部紀要』28, 1994; -----, 「17世紀, 蝦夷地に漂着した朝鮮人」, 『日本國家の史的特質』, 1995; -----, 「倭館と漂流民の明治維新」, 『日本史研究』411, 1996; -----,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 『薩摩藩士朝鮮漂流日記』, 講談社, 2009.
4) 이훈, 「조선후기 對馬島の 표류민 송환과 對日관계」, 『國史館論叢』, 1991; -----, 「조선후기 일본

기⁶⁾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고, 이후 손승철⁷⁾, 김강식⁸⁾, 김경옥 등의 연구⁹⁾도 추가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일본에 표류한 조선인에 집중되고 있으며,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에 대한 연구는 이훈의 일부 연구 외에는 소략한 편이다. 이런 연구 편중 경향에 화답하듯 최근에는 표류일본인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표류일본인에 대한 조선 측의 대응이나 송환정책에 대해 이근우, 문경호, 심민정, 이지연 등의 연구¹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 연구 중 대부분은 2020년 5월 『조선표류일기』 번역본이 출간¹¹⁾된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동향을 확인해 보았을 때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 양국 표류민에 대한 연구 균형을 위해 표류일본인 호송 및 처우에 대한 연구를 선택했다.

한편 조선 후기 평화적 교린관계에 입각한 표류인 송환체제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동일한 기조로만 유지되지는 않았다. 특히 표류일본인 송환체제와 관련해서는 조선 측에서도 한 차례 변화과정이 인지된다. 이는 17세기 말 초랑왜관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진 후 변화된 조·일관계와 맥을 같이한다. 표왜 입송제도의 시작과 변화에 대해서는 『接倭式例』, 『漂倭入送贈錄 二』(奎12884), 『漂倭入送回謝贈錄』(奎12920)¹²⁾을 활용¹³⁾한다.

한편 초랑왜관으로의 이전 이후 처음 파견되었던 1682년 임술통신사행 과정에서 일본 사

-
- 에서의 조선인 漂民 취급과 善隣友好的 실태」, 『史學研究』47, 1994; -----, 「조선후기 일본인의 조선 漂着과 送還」, 『한일관계사연구』3, 1995; -----, 「18세기 중엽 일본 표선에 대한 잡물(五日糧) 지급과 조·일 교섭 왜곡 - 대마번의 왜관 도해선을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9, 1998; -----,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 5) 정성일, 「全羅道 住民의 日本列島 漂流記錄 분석과 데이터베이스화(1592~1909)」, 『史學研究』72, 2003; -----, 「해남 대둔사 승려의 일본 표착과 체류(1817~1818)」, 『한일관계사연구』32, 2009; -----, 『전라도와 일본 :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5.
- 6) 민덕기 저(한일관계사학회 편), 「표류민을 통한 정보의 교류」, 『조선시대 한일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2001; ----- (村井章介 代表), 「표류민을 통한 朝鮮과 琉球의 정보 교류」, 『8-17世紀の東アジア 地域における人・物・情報の交流-海域と港市の形成, 民族・地域間の相互認識を中心に-』(下), 2004.
- 7) 손승철, 「조선후기 강원도의 표류민 발생과 송환 - 1819년 안의기 일행 표류를 중심으로 -」, 『인문과학연구』45, 2015.
- 8) 김강식, 「원류(原流), 인간(人間), 교류(交流): 『漂人領來贈錄』 속의 제주도 표류민과 해역」, 『탐라문화』51, 2016; -----, 「『漂人領來贈錄』 속의 경상도 표류민과 해역」, 『역사와경계』103, 부산경남사학회, 2017; -----, 『조선시대 표해록 속의 표류민과 해역』, 선인, 2018; -----, 「이방익(李邦翼) 『漂海錄』 속의 표류민과 海域 세계」, 『역사와세계』55, 효원사학회, 2019; -----, 「조선후기 경상도 주민의 일본표착과 송환」, 2022.
- 9) 김경옥,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연구 동향과 과제」, 『명청사연구』48, 2017; 박진미, 「『漂人領來贈錄』의 종합적 고찰」, 『복원사림』19, 1996.
- 10) 이근우, 「『조선표류일기』의 회화자료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64, 2019; 문경호, 「『朝鮮漂流日記』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방안」, 『진단학보』135, 2020; 심민정, 「『朝鮮漂流日記』(1819)에 나타난 표류왜인 호송과 접대 실태」, 『한일관계사연구』70, 2020; -----, 「조선 후기 부산에서의 표류일본인 접대-『朝鮮漂流日記』(1819)를 중심으로-」, 2021; 이지연, 「조선 후기 일본인의 표류 양상과 그 송환 방식」, 부경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11) 이근우·김윤미 역, 『조선표류일기』, 소명출판, 2020. 『조선표류일기』는 일본에서 먼저 연구되어 『薩摩藩士 朝鮮漂流日記』(池内敏, 講談社新書, 2009)가 출간된 바 있다. 원 사료는 일본 고베대학 도서관의 스미다문고(住田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공개(<http://www.lib.kobe-u.ac.jp/directory/sumita/5B-10>)하고 있다.
- 12) 최근에 표왜입송제도 관련 사료인 『漂倭入送贈錄 二』, 『漂倭入送回謝贈錄 三』에 대해 문건의 행이 체계, 문서 내용 등에 대해 해제 형식으로 작성한 이현주의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漂倭入送贈錄 二』 解題」, 『奎章閣』58, 202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漂倭入送回謝贈錄 三』 解題」, 『奎章閣』60, 2022. 연구가 있다. 하지만 차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는데, 차후 『回謝差倭贈錄』에 대해 해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된다.
- 13) 이훈은 앞의 책(2000), '4장. 조선후기 일본인의 조선 표착과 송환'을 서술하면서 『漂倭入送贈錄 二』, 『漂倭入送回謝贈錄 三』에 제시된 사례들을 활용하였다.

신 접대 비용을 줄이기 위한 差倭 감축이 시도되는데, 그 일환으로 표류인 관련 차왜 감축 및 소멸의 변화도 포착된다. 대표적으로 ‘漂倭入送回謝差倭의 소멸’ 과정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표왜입송회사차왜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다. 아마 18세기 초반에 사라져버린 차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두모포왜관 시기에 존재했던 수많은 별차왜들에 대한 개별 자료들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표왜입송회사차왜의 변화와 소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표왜입송회사차왜가 소멸된 1692년 이전에 대해서는 『接倭式例』, 『漂倭入送膳錄二』(奎12884), 『回謝差倭膳錄』(奎12883)을, 그 이후 시기는 『漂倭入送回謝膳錄』(奎12920)을 주요 자료로 활용한다.

표왜입송회사차왜가 사라지는 과정은 17세기 말부터 변화되던 조·일 교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진행된 조선과 일본의 교린관계 변화 움직임은 다양한 방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초량왜관 이전, 울릉도쟁계, 1711·1719년 통신사행 접대의례 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례 외에 양국의 표류인 송환 시스템도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 일례로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사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표왜입송회사차왜의 파견 횟수, 접대 규정 변화 등의 사례를 통해 표왜입송차왜가 소멸되는 과정을 17세기 말 변화하는 조·일 교린관계의 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표왜 입송제도의 마련

임진전쟁 종결 후 대마도 및 일본과의 국교재개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 양국의 표류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갔다. 이는 전쟁 종결 후 양국의 평화적인 교린관계 모색을 위한 방법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종결 직후 1607년 회답검쇄환사가 파견되면서 일본에 표류했던 조선인들도 함께 송환되기 시작했다. 이후 1609년 己酉約條가 약정되고 일본의 대조선외교 창구가 대마도로 저 애지면서 표류민 송환도 대마도가 전담하게 되었다. 일본에 표류한 조선인은 표착지에서 인수한 뒤 대마도의 특송선이나 세건선을 통해 송환되었으며, 차후 漂人領來差倭가 조선으로 데리고오는 담당자가 되었다. 표인영래차왜는 일본에 표류한 조선인을 데리고 오는 차왜를 말한다. 『증정교린지』 권2 「차왜」 조에 의하면, 표인영래차왜가 표류조선인을 데리고 오면 조선에서는 향접위관을 파견하여 접대하였다. 『변례집요』 각주에서는 최초로 파견된 표인영래차왜를 1627년 平成久로 보고있다.¹⁴⁾ 이는 『접왜식례』에서도 동일한데, 1627년 2월 平成久가 조선표민 20명을 거느리고 와서 조선이 함께 온 일본인 格倭 25명에게 도해양식을 지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에는 아직 정례화된 차왜로 인정받지는 못해 접대의례가 행해지지 않는 듯하다. 이후 국서개작사건[柳川一件]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兼帶制가 시행되고, 정례화된 차왜도 파견되기 시작하면서 표착지에서 막부직할지인 나가사키로 이동, 대마도가 인수하여 조선으로 송환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대마도가 조사한 표류민 정보를 막부에 보고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에도막부가 중심이 되는 표류민 송환절차는 1640년대 후반에는 거의 정비되었

14) 『변례집요』권3, 「漂差倭」, 정묘(1627) 2월.

다.¹⁵⁾ 조선에서도 표류조선인을 인솔해오는 표인영래차왜에게 향접위관에게 제1선례로 정식 접대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1645년 5월 兵右衛門부터¹⁶⁾로 표류민 송환시스템 정비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표인영래차왜 일행은 正官 1명 · 押物(封進) 1명 · 伴從 3명 · 格倭(船員) 40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체류기간은 55일이었다.¹⁷⁾ 한편 표인영래차왜에 대한 접대는 1682년 임술약조 이후 1특송례에서 세건1선례로 접대가 축소되었으며 접대를 받는 솔속 인원도 줄어들게 되었다.¹⁸⁾ 또한 표류조선인이 ‘破船殞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인영래차왜를 별도로 파견하지 않고 연례송사나 재판차왜, 飛船 등에 순부하여 송환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¹⁹⁾

표류조선인 송환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²⁰⁾을 본국으로 호송하는 제도도 마련되었다. 1609년 약정한 기유약조에는 표왜 송환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적왜로 간주하지 않고 일본으로 송환하고 있으며, 1627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표왜를 접대하고 송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²¹⁾ 특히 『漂倭入送膳錄』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1637년 이후부터는 표왜에 대한 厚待²²⁾는 물론이고, 표왜입송에 감사의 뜻을 전하러 조선 조정에 방문하는 표왜입송회사차왜에 대해서도 접위관을 파견한 접대가 행해졌다.

한편으로는 기유약조에 일본표류민 송환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필요 이상의 접대를 한 이유는 병자호란 후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일본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이 발로한 측면도 있었다. 1637년 7월 울산에 표착한 일본인에 대한 조치가 행해지기 얼마 전 5월에 병자호란이 평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藤智繩이 차왜로 파견되었다. 이에 조선은 향접위관을 파견하여 세건1선례로 접대를 해주었다.²³⁾ 이는 정묘호란 시기인 1627년 軍器 등을 바치기 위해 2차례나 조선으로 온 平智次에 대해서는 조정이 동래부사의 접대 요청을 불허하고 양식만 지급했던 것²⁴⁾과는 상당히 다른 처우였다. 1637년은 전쟁이 종결되어 위태로운 상황은 잠시나마 중단된 시기이기는 했으나 그 시기에 일본과의 마찰은 더더욱 피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 다른 이유로 조선이 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표왜를 후대하였다고 보기도 한다.²⁵⁾ 일례로, 1645년에는 중국에 표착한 일본인을 청의 칙사가 조선으로 호송한 뒤 다시 일본으로 들여보내는 일이 발생하였다. 즉 청에 표착한 일본인이 송환되는 경유지로서 조선이 역할을 한 것이다. 조선은 표류일본인을 후하게 접대하고 일본으로 송환하였다. 청에서 조선

15) 이훈, 「朝鮮後期 대마도의 漂流民送還과 對日관계」, 『국사관논총』제26집, 1991, 230쪽; 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표해록』, 역사공간, 2018, 58쪽.

16) 『변례집요』권3, 「漂差倭」, 을유(1645) 5월; 『접왜식례』「差倭接待之式」, 을유(1645) 5월. 이훈은 앞의 논문 230쪽에서 『변례집요』를 인용하여 향접위관 접대가 시작된 시기를 1648년이라고 하였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 『통문관지』 권5.

18) 심민정, 「1682년 임술통신사행의 임술약조 강정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편」, 『한일관계사연구』제73집, 2021, 32~35쪽.

19) 임술약조의 내용 중 漂民順附와 破船殞命 규정에 대해서는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271~304쪽’에 자세하다.

20)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들을 ‘漂倭’라고 하였다.

21) 이훈, 위의 책, 152~155쪽.

22) 『漂倭入送膳錄 二』, 정축(1637) 7월 23일 기사에서는 1637년 울산에 표착한 伯耆州 표왜에 대한 접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1635년 일본 石見州에 표착한 長鬚 사람에 대한 일본측 접대가 후했던 것을 예로 들어 그만큼 표왜에 대해서도 후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3) 『접왜식례』「差倭接待之式」, 1637년 5월.

24) 『접왜식례』「差倭接待之式」, 1627년 3월; 11월.

25) 이훈, 앞의 책, 156~158쪽.

을 경유하도록 한 것은 한편으로는 청이 은혜를 베푸는 대국이라는 과시임과 동시에 청과 책봉을 맺지 않은 일본과의 외교 중계국으로서의 조선의 역할을 시험하고, 일본의 반응도 살펴보고자 의도한 것²⁶⁾이었다.

어쨌든 후대를 기본으로 하여 표왜에 대한 처우와 입송제도는 점차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갔다. 일반적으로 조선에 표류한 일본인은 크게 대마도 왜인과 타 지역 왜인의 두 부류로 구분하여 호송하는 장소를 달리하였다. 대마도 표왜의 경우 漂着하면 왜관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때 왜관에서는 매 선척마다 糴米 2섬, 1인당 옷 재료[衣資]로 무명 1필을 제공해 주었다.²⁷⁾ 반면 대마도 이외 지역에서 표류한 왜인은 他島漂倭 혹은 深處倭라고 불렀는데²⁸⁾, 이들은 왜관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左道에 표류한 자는 別差가 問情하고 왜관에서 20리 떨어진 牛巖浦로 이송한다. 右道에 표류한 사람은 玉浦의 譯學이 문정하여 多大浦에 이송하였다. 그 후 館倭) 와서 서로 만난 후 왜관을 볼 수 없는 外洋으로 우회하여 우암포로 이동, 정박하였다. 또한 호남이나 영동의 여러 도에 표류한 자는 서울에서 問情官을 보내거나 혹 해당 도의 역학으로 하여금 문정하게 한 후 우암포로 이송하였다.²⁹⁾

우암포로 이송된 타도표왜에게는 우암포에 머무르는 동안 요미(料米)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요미는 한 사람 당 매일 쌀 2되, 백합젓 6작 7리, 미역 5전(錢) 3푼 7리, 소금 6작 7리, 대구어 1조(條), 건어 1마리, 참기름 2작, 채소 값에 해당하는 쌀 5홉, 생잡어 값에 해당하는 쌀 6홉 등을 지급한다. 그리고 귀국할 때에는 무명 1인 1필과 도해량미 각 10말을 지급³⁰⁾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하지만 부산으로 들어가기 전 표착지와 체류지에서는 양미와 잡물 접대가 일정하지 않았다. 대마도 표류인과 타도표왜가 달랐으며, 지역별로 조달 능력에 차이가 있었고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 단일한 규정을 정하기 힘들었다. 그래도 대체로 사례화된 양찬의 지급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동래 경계상에 정박시 표류왜인에 대한 지급

지급대상	지급내용(1일 1인 기준)	쌀 환산
送使, 대·소차왜, 館守, 裁判, 代官, 禁徒, 先問頭倭, 서기, 의사, 通事, 僧倭	料米 5되, 말린 대구어 5條, 말린 광어 5조, 참기름 5작, 간장 2홉, 백합젓 3홉, 미역 1냥, 생선 1마리, 건어 3마리	3말 2되 9홉 8작
從人, 下禁徒, 下代倭	料米 3되, 말린 대구어 3조, 말린 광어 3조, 참기름 3작, 간장 2홉, 백합젓 2홉, 미역 7錢, 생선 7조, 건어 2마리	2말 3되 5홉 1작
格倭	요미3되, 말린 대구어 2조, 말린 광어 2조, 참기름 2작, 간장 1홉, 백합젓 2홉, 미역 5전, 생선 3조, 건어 1마리	10되 5홉 5작

※ 『증정교린지』 권4, 「漂倭支給」 참조.

표 1. 의 양미 지급 기준은 동래 경계 상에 정박한 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급 대상 신분에 따라 지급하는 양찬에 차이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동래 경계 밖 좌도와 우

26) 『비변사등록』4, 인조 24년(1646) 1월 5일; 11월 6일.

27) 『증정교린지』권2, 馬島漂倭.

28)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29) 『증정교린지』권2, 他島漂倭.

30) 『증정교린지』권2, 他島漂倭.

도 연해에 표류인이 정착한 경우는 ‘양찬(糧饌)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표류왜인이 귀국할 때가 되면 대마도 왜인, 타도 왜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전별연을 베풀어 주었다. 연향을 베풀어주는 것은 1637년 호키(伯耆州) 표류민 송환이 시초였다.³¹⁾ 이후 1646년 에치젠[越前州] 표류민³²⁾이 동래에 머물다 돌아갈 때, 1665년 이즈미[和泉州] 표류민³³⁾에게 다상(茶床)을 차려 연향을 베풀어 준 기록이 확인된다. 표류인들에게 베풀어주는 전별연은 정해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례 규정 및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다. 전별연 규정은 1637년의 예에 따르고 있는데, 동래부 측에서는 훈도·별차·소통사가 동행하였고 연향 시에는 왜관 측에서 관수·재판·대관과 사자 일행이 참가하였다.³⁴⁾ 이들은 외국에서의 위신을 생각하여 50~9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을 인솔하여 육로로 우암포까지 갔다.³⁵⁾ 이때 왜관의 관수는 동래부사의 통보에 따라 수수를 행하는 당일 그 소속 관료들을 거느리고 위의를 정비하여 육로로 왜관에서 부산진을 거쳐 강선대(降仙臺: 출우검역소 자리)³⁶⁾의 동쪽 산기슭 도로에서 우암포에 이른다. 이곳에서 조선관헌이 표민을 수취하고 대마도의 公船 혹은 세건선에 편승하게 하고 압송하여 일본에 송환한다.³⁷⁾

마지막 연향이 있던 날 표류민들은 우암포 선착장 근처에 마련된 연회소에서 거의 하루 종일을 보냈다. 바로 이날 쌀과 같은 표선 적재물에 대한 조사 및 표류민들에 대해서도 연향이 끝난 후 몸 검색이 있었다.³⁸⁾ 동래부 支待色이 주관하는 연회 茶床은 대략 1646년 경에 이르러 모양새가 갖추어졌는데, 다상 연회에는 왜관의 관수 일행이 가서 참가하였다.³⁹⁾

절차가 끝나면 표류일본인은 왜관에서 용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선편이나 대마번에서 파견된 호송사의 인도 하에 대마도로 송환되었다. 귀국 선편이란 대개 公作米를 싣고 돌아가는 연례송사선이나 일정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왜 선편·비선 등으로, 이 배들이 표선을 호송하여 대마도로 갔다. 대마도로 돌아가는 배편이 없을 때에는 쓰시마번에서 표선을 호송해 갈 배와 사자를 파견해 호송하였다.⁴⁰⁾ 표왜가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가면 일본 측에서는 그제 대한 감사를 표하는 표왜입송회사차왜를 파견하여 양국의 서계가 교환된 후에야 표왜입송 절차는 완전하게 마무리되었다.

2. 표왜입송회사차왜의 파견과 접대

표왜입송회사차왜는 조선에 표류한 일본인을 본국으로 송환해 주었을 때 그에 대한 감사

31) 이훈, 앞의 책, 187쪽.

32)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1646년 2월.

33)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1665년 8월.

34) 이훈, 앞의 책, 2000, 179쪽.

35) 『변례집요』 권15, 「水陸路去來」.(이훈, 앞의 책, 2000, 179쪽에서 재인용)

36) 현재의 배정고등학교 일대. 문현동 지갯골(대연고개) 일대로 신선이 놀았다는 너른 터가 있다고 해서 ‘廣仙臺’로 불렸던 곳이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37) 小田省吾 교역, 都甲玄卿(卿) 編, 『釜山府史原稿』2, 383~384쪽.

38) 中田邦造 編, 『加能漂流談』, 日本石川縣圖書館協會, 1938.(이훈, 앞의 책, 2000, 179~180쪽에서 재인용)

39) 이훈, 앞의 책, 2000, 187쪽.

40) 이상 ‘심민정, 「조선 후기 부산에서의 표류일본인 접대 - 『朝鮮漂流日記』(1819)를 중심으로」, 『항도부산』제42호, 2021.’의 내용을 일부 요약함.

를 표시하기 위해 일본 측에서 조선으로 보내는 차왜이다. 겸대제 시행과 맞물려 조선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일본 측 외교사절로서 差倭가 등장하면서 표왜입송회사차왜도 등장하였다. 표왜입송회사차왜가 조선에 내왕한 사례와 조선 측에서의 접대 등에 대해서는『回謝差倭膳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에는 표왜를 일본측에 송환한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차왜파견의 기록이 대부분이지만 문위역관의 파견 등에 대한 회사 사례도 보인다. 1644년에는 福建지방에서 온 荒唐船을 붙잡아 보내 준 것에 대한 회사, 1647년과 1653년에는 문위역관을 파견해 준 것에 대한 회사, 그리고 1674년 倭館移建의 결정과 1675년의 新館基址講定, 1678년 新館 落城에 대한 致謝 등의 기록이 있다.⁴¹⁾ 각각의 사례에 대해 등록에서는 차왜출래의 통지, 그에 대한 동래부사의 보고와 예조의 접대규식 지시, 다례의 설행과 접대 인원수, 차왜가 가지고 온 서계와 별폭 등의 上送과 예조의 회례별폭, 접위관의 차정 및 연향의 설행, 회답서계의 撰送, 차왜의 귀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왜입송회사차왜에 대해서는 1637년부터 1678년 사이에 조선에 내왕한 사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등록에서 회사차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 파견 사례는 확인하기 힘들다. 회사차왜가 마지막으로 파견되는 시기가 1691년인데 『회사차왜등록』에서는 1678년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락된 부분은 『변례집요』, 『접왜식례』, 『표왜입송등록』 등을 추가적으로 비교·대조하여 표왜입송차왜가 소멸되기까지의 접대 규정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국가 간에 외교사신 접대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양국이 모두 실리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고,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교섭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양국의 평화적 소통·교섭 노력에도 의미를 두고자 한다.

1) 표왜입송회사차왜와 경접위관 접대 정착

- 1637년 이후 표왜입송회사차왜가 조선으로 파견됨. 이에 대해 조선 측의 접대는 처음에 향 접위관과 경접위관 접대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점차 1특송선례에 의해 경접위관이 접대하는 것으로 정착되어 갔다.
- 1645년, 1650년에는 표왜입송회사차왜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차왜에 대한 접대절목이 완비되고 접대 반종 인원수도 조정하였다.

1645년 5월 야소중문을 잡아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일로 謝使가 건너왔다. 謝使은 상관은 橘成般, 부관 愼首座, 차관 藤智繩으로 구성되었는데, 4월부터 藤智繩은 사사가 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접대절목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접대절목은 1629년 일본사신 접대 내용을 참조하였으나 이때에는 玄方일행이 국왕사를 사칭하고 상경하였으므로 참조만 했을 뿐 상경하지 않았던 1622년 보병사 접대 사례에 근거하여 접대절목을 갖추고 있다.⁴²⁾ 접대절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³⁾

41) 한문종, 「朝鮮後期 日本에 관한 著述의 조사 연구 - 對日關係 膳錄類를 중심으로 - 」, 『국사관논총』 제86집, 1999, 233쪽.

42) 『典客司日記』, 인조 23년 을유(1645) 4월 27일. '기사'의 제목은 '謝使接待節目은 己巳年例로 磨鍊'이라 되어있고, 한문종도 앞의 논문 233쪽에서 당시 접대절목은 1629년 기사년의 예에 근거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기사년(1629)의 예를 참조하되, 적용은 임술년(1622) 예에 근거하여 하고 있다.

43) 절목의 내용은 『典客司日記』, 인조 23년 을유(1645) 4월 27일.'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예단의 구체

- 一. 倭使가 포구에 도착한 후 첫 위로연 1, 유관시 별연 1, 회환시 위로연 1차례. 접위관이 내려올 때 구례에 따라 사신의 경중, 긴박 여부 등을 헤아려 임시 처치할 것.
- 一. 倭使 유관시 晝捧盃를 간간이 設酌할 것.
- 一. 관사를 각별히 검칙해서 잡인을 엄금할 것. 간사한 잠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금하여 계문할 것.
- 一. 왜인 접대 등의 일에 태만하면 수령, 번장이 계문하여 추고하고 하인은 刑推할 것.
- 一. 본도 관찰사가 나아가서 부산(침사), 접위관, 동래부사와 함께 의논하여 도울 것.
- 一. 왜사가 만약 求請하는 일이 있으면, 말한 바가 중한 것이면 즉 계를 올려 시행하고, 가벼운 것이면 즉 접위관과 본도 감사가 함께 의논하여 편의에 따라 처치할 것.
- 一. 왜사가 만약 가지고 온 상고 물화를 매매하기를 원하는 등이 있으면 편의에 따라 공무역을 하도록 허락하여 厚待의 뜻을 보일 것.
- 一. 접위관은 상접례를 할 때 五禮儀의 隣使義에 따라서 시행할 것.
- 一. 왜사가 가지고 오는 국서 등을 전하는 절차는 **임술년 사신(1622년 보병사) 때의 예에 따라서** 부산객관에 전패를 설치하고 사신이 肅拜한 후 봉상 상송할 것.
- 一. 왜사가 거느리는 반중, 격왜의 급료 등은 접위관이 내려오면서 인원수, 유관일을 헤아려 본도 감사, 동래부사와 함께 의논하여 참작해서 定奪・시행할 것.
- 一. 왜사가 거느리는 원역 중 贈物이 있는 왜는 접위관이 가지고 가는 물건 추이에 따라 떨어내고 사용할 것.
- 一. 접위관이 가지고 가는 각종 물건 중 사용하고 남은 물품은 남겨두고 동래부사가 일일이 회계 후 수효를 장계로 올려 시행하고 근거로 삼아 후일에 사용할 것.
- 一. 접위관이 사용하는 印信 1개는 제공할 것. 기사년(1629) 사목 내에 왜사가 가지고 온 국서 보고를 기다려 접위관이 나아가든지 선위사가 한다. 이번은 만약 국서를 가지고 오면 즉 陞號하여 선위사가 일절 다음의 예에 따라 시행할 것.
- 一. 이전의 국왕사 때에는 선위사가 내려가서 포소에서 객사에 선운하였다. 금번은 특별히 국왕사라는 칭호가 없으므로 접위관을 내려보내고 선운은 일절 같이한다. 부당하다고 거론하지 말 것. 단 恕首座는 기사년에 玄方の 侍奉으로 출래할 때 이미 이 예를 행하고 선운 등 여러 일을 보았으나 급히 폐하는 것은 불가하니 임술년의 예에 따라 **각 해당 사로 하여금 예에 비추어 마련하도록** 하송할 것.
- 一. 지난 날 국왕사 때 사신처의 의복 조달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번 또한 전례에 따른다. 橘成般, 藤智繩 등에게는 각각 옷감 홍청색 명주 1필, 內共白紬 1필, 홑 옷감 白紬 1필, 裏皮革子⁴⁴⁾ 1, 白羊毛精具를 지급한다. 僧 恕首座에게는 九綜緇染木 1匹, 長衫鴉青細木 1匹, 內共白木綿 1匹, 單長衫甫羅木綿 1匹, 鴉青羅內共藍絹, 僧冠次 각 2尺, 黑皮雲鞋 1부를 지급한다. 각 해당 사로 하여금 갖추어 준비하고 하송할 것.
- 一. **임술년 국왕사 때 상경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본도 관찰사 및 차사원이 浦處에 머무르면서 연향에 나아가 이속고 전례대로** 행한다. 이번 謝使에게 관찰사와 차사원의 연향은 전례에 따라 설행할 것.
- 一. 각 연회 때 연향 물품은 오로지 **임술년의 예에 따라 설행할 것**
- 一. 왜사를 접대하는 官舍는 동래부사와 부산침사가 함께 검칙하여 미리 수리하고, 정결

적인 물품은 빠져있다.

44) 『典客司日記』, 인조 23년 을유(1645) 4월 27일.'에는 黑皮靴子로 기재되어 있음.

히 하도록 힘쓴다. 일체의 鋪陳(방식, 자리, 요), 배개, 제구는 갖추어두고 전례에 따라 준비하고 대령하며, 매몰되는 폐해가 없도록 할 것.

- 一. 名日宴은 전례에 따라 설행할 것.
- 一. 이전 국왕사 때의 下程은 上京하여 유관할 때의 예에 따르고, 3번 贈給하였으니, 이는 즉 접위관이 내려가서 마땅히 처치할 것.
- 一. 왜사가 포구에 도착 후, 부산첨사는 차사원과 함께 선척을 점검하여 하선할지 여부, 陸物, 諸具 여부를 수사에게 보고하고 다시 검척을 더하여 다땅히 제공할 것을 헤아리고, 사신이 등성할 때 수보하며 연유를 계문하여 시행할 것.
- 一. 데리고 가는 京通事는 사역원으로 하여금 예에 비추어 定送한다.
- 一. 아직 다 정하지 못한 조건은 추후 마련하여 시행한다.
- 一. (4월 27일 계문 후) 사목 중 선온과 관련한 1관은 동래부사 장계로 이미 접위관이라 칭했으므로 장계에 따라 시행하지 말도록 함. 啓下한 내용에 따라 왜사는 각각 연향과 예단 마련

•파견 술속 인원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1664년에는 봉진1, 시봉1, 반중10, 격왜40명으로 규정되어갔다.

- 1664년 표왜입송회사차왜 접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례들을 상고하고 있다. 1637년에는 향접위관, 1646년과 1650년에는 경접위관이 접대하였으며, 특히 1650년에는 賀使와 兼察하여 접대한 상황까지 세세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1650년에 접대 인원이 봉진·시봉 각 1인, 반중 10명이었던 것을 예로 들어 1664년 회사차왜 역시 1650년 平成之의 예에 따라 접대를 시행한다고 하였다.⁴⁵⁾

표 5. 1637년-1664년 표왜입송회사차왜 접대 사례

	출전	파견시기	명칭	정관	파견목적	인원	접대
1	접왜식례	1637. 11	차왜	平成連	표왜에게 의복·자금을 지급한 일 치사	격왜30	향접위관 세견제1선례
	회사차왜등록	1637. 12	頭倭	平成連	일본 伯耆州 사람들이 漂到했을 때 조선 조정의 의복·자금·양찬을 지급하고 보호하여 입송한데 대해 치사		경상도 도사나 인근 수령을 접위관(향접위관)으로 삼아 藤智繩의 예 ⁴⁶⁾ 에 따라 접대. 3차연향
	변례집요	1637. 12	頭倭	平成連	伯耆州 표왜입송 치하	격왜30	향관 접대
2	접왜식례	1646. 11	차왜	橘成稅	표왜입송에 회사	소술14, 격왜40	경접위관 1특송례 (소술9명 감함)
	회사차왜등록	1646. 11. 5.	謝使	橘成稅	표왜입송 사사	소술14, 격왜40	소술은 5명(시봉2, 반중3)으로 제한. 5.6품으로 경접위관 차송. 특송례. 3차연향
	변례집요	1646. 10.	差倭	橘成稅	표왜입송 회사	소술14	京官 접대

45) 『회사차왜등록』, 갑진(1664) 9월 23일.

3	접왜식 례	1650. 4	차왜	平成之	표왜입송에 대한 致謝	봉진1, 시봉1, 반종10, 격왜40	경접위관 1특송례
	회사차 왜등록	1650. 4	차왜	平成之	표왜입송 치사	봉진압물1, 시봉1 반종10, 격왜40	경접위관이 賀使와 兼察하여 접대 (봉진1, 시봉1, 반종10). 3차 연향
	변례집 요	1650. 4.	차왜 (謝使)	平成之	울산 표박왜인 환급 치사	봉진압물1, 시봉1 반종10, 격왜40	경접위관이 賀使와 兼察하여 접대
4	회사차 왜등록	1654. 1.		서계순부	울산표왜 입송 회사서계 및 별폭을 부특송선 정관에게 순부		부특송선 다례일에 회사서계 상송
5	접왜식 례	1664. 9	차왜	藤成通	울진 표왜 3명 입송에 대한 회사	봉진1, 시봉1, 반종10, 격왜40	경접위관1특송례
	회사차 왜등록	1664. 9	차왜	藤成通	울진표왜 입송에 대한 회사	봉진1, 시봉1, 반종10	(봉진1, 시봉1, 반종10) 경접위관 3차 연향
	변례집 요	1664. 9.	차왜	藤成通	울진표왜 입송 회사	봉진1, 시봉1, 반종10, 격왜40	京官 接待

* 2~5 예조참판 서계

2) 향접위관 접대로 변화하는 표왜입송회사차왜

차왜에 대한 접대는 연례송사 접대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표왜입송회사차왜는 1특송선례에 따라 京接慰官의 접대를 받는 것으로 정착되어갔다. 그런데 표왜입송회사차왜는 1666년 이후 접대례의 변화 과정을 겪는다. 대체로 경접위관의 접대를 받는 별차왜는 수신인이 예조참판 앞으로 된 서계를 지니고 왔으며⁴⁷⁾, 접대는 1특송선례에 따랐다. 회사차왜 역시 처음 접대 규정을 적용할 때 1특송선례에 따라 경접위관의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1666년 이후 1특송선례에 따른 접대는 유지되었지만 鄉接慰官이 접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변경 사유는 경접위관이 차정되어 내려오는 동안 각 지역에 폐단이 많아 본도(경상도) 도사나 수령을 접위관으로 차정하여 폐해를 줄이고자 한 것⁴⁸⁾이다.

1666년 3월 향접위관의 접대를 받게 된 표왜입송회사차왜는 솔속 인원수도 감소하는 변화를 겪었다. 1666, 1667, 1672년에는 접대하는 반종 인원수가 10명에서 6~8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1672년 회사차왜의 경우, 다른 사료와는 달리 『회사차왜등록』에서 접대할 반종 인원수를 가감하는 문제로 조선과 일본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672년 관수왜와 차지차왜는 접대할 반종을 원래대로 10명으로 다시 돌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1666년과 1667년 사례를 들어 이를 반대하자 재차 2명만 더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례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⁴⁹⁾. 하지만 조선은 1637년 사례부터 하나

46) 藤智繩이 정축년(1637) 2월 반종 3명을 거느리고 통신사를 호행하기 위한 차왜가 되어 출래하였을 때와 5월에 병차호란 종결을 축하하기 위해 출래하였을 때 모두 향접위관이 접대하였다. (『변례집요』 권1, 「별차왜」, 정축(1637) 2월; 5월.)

47) 심민정, 「조선 후기 일본사신 접대를 통해 본 朝日관계 - 差倭제도와 접대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 『역사와경계』96, 2015; 양흥숙, 「조선후기 대일 접위관의 파견과 역할」, 『부대사학』24, 2000; 홍성덕, 『17세기 조·일 외교사행 연구』,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48) 『회사차왜등록』, 병오(1666) 3월 11일.

49) 『회사차왜등록』, 병오(1672) 4월 4일; 5월 15일.

하나 전례를 제시하며 반중 6명 접대를 고수했으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역관에게 50대의 杖刑을 결정하는 등 반중 인원수를 줄이는데 강력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다가 1673년 또 다시 표왜입송회사차왜의 반중 인원수 문제가 불거졌다. 일본 측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이번에는 더 집요하게 반중을 10명으로 되돌려 늘려줄 것을 요청하며 다례를 거부하는 등 의례가 점점 지체되었다. 이번에는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역관도 병을 핑계하는 등 의례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7개월동안 지속된 논의 끝에 조선은 결국 1~2명 정도를 추가해 주는 것은 괜찮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특별히 반중 2명의 접대를 허락해주었다.

이후 1676년 회사차왜 접대 때에도 반중 인원수 가감 문제는 다시 거론되었다. 이 때에는 1673년의 상황에서 반중을 2명 더해준 것은 특별한 상황였다고 하며, 1676년에는 반중 6명을 접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접왜식례』에는 이 시기에 8명의 반중이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회사차왜등록』에 따르면 처음에 8명을 요구한 회사차왜 측에 6명으로 줄이도록 개유하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다. 1679년에는 『회사차왜등록』의 기록이 없고, 『접왜식례』에서 6명, 『변례집요』에서는 8명으로 반중 인원수 기록에 차이가 있다.

이후 1693년 1월까지 표왜입송회사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1680년 2월에 표왜입송회사차왜가 진상숙배 의례 중 예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보인다. 1680년 2월 차왜 橘成滋가 진상숙배례를 행하러 객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객사 정문으로 들어가 행례를 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향이 끝난 후 역관들이 전례를 어긴 행위에 대해 질책하자 橘成滋는 술을 과하게 먹어 예를 그르치게 되었다고 사죄하였다.⁵⁰⁾ 이때 차왜의 이름은 橘成滋로 1679년 10월에 도래한 회사차왜였다. 당시 유관하면서 의례 일정을 맞이했던 상황으로 보아 1679년 이후에는 표왜입송회사차왜가 파견되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표 6. 1666년-1679년 표왜입송회사차왜 접대 사례

	출전	파견시기	명칭	정관	파견목적	인원	접대
1	접왜식례	1666. 3	차왜	橘成倫	기장 경계에 표류한 왜 11명을 입송한 데 대한 회사	봉진1, 시봉1, 반중10, 격왜40	향접위관 세건1선례(경접위관을 향접위관으로 바꾸어 접대). 반중4명을 감함.
	회사차왜등록	1666. 3.	차왜	藤成倫	기장에 표류한 왜 입송 회사	봉진1, 시봉1, 반중10, 격왜40	향접위관 접대.(예단은 경관의 예에 따름) 3차례 연향. 반중은 10명 중 4명을 감하여 6명 접대.
	변례집요	1666. 3	차왜	藤成倫	和泉州 漂倭 入送 回謝	봉진압물1, 시봉1, 반중10, 격왜40	향접위관이 3차례 연향 접대. 사예단은 감하고 지급하지 않음.
2	접왜식례	1667. 4	차왜	源幸利	長鬐縣에 표도한 伯鬐州왜 21명을 입송한데 대한 회사	봉진압물1, 시봉1, 반중10, 격왜40	향접위관1특송례(반중4 감함)
	회사차왜등록	1667. 윤4.	차왜	源幸利	伯鬐州 표왜 입송 회사	봉진압물 1, 시봉1, 반중 10, 격왜40	향접위관(울산부사 → 기장현감) 3차 연향. 예단은 경관의

50) 『변례집요』권7, 「宴禮進上」, 갑신(1680) 2월.

						40	예. (봉진1, 시봉 1, 반종 6명)
	변례집요	1667. 4.	차왜	源幸利	표왜 입송 회사	봉진압물 1, 시봉 1, 반종 10, 격왜 40	향관 접대
3	접왜식례	1672. 3	차왜	藤成倫	표왜 입송에 대한 회사	봉진1, 시봉1, 반종10, 격왜40	향접위관1특송례(반종4 감함)
	회사차왜등록	1672. 3	차왜	藤成倫	거제도 지세포에 표류했던 왜인 입송 회사	봉진1, 시봉1, 반종10, 격왜40	향접위관(양산군수) 3차연. (반종 6명)
	변례집요	1672. 3	차왜	藤成倫	지세포에 표류했던 왜인 입송 회사	봉진1, 시봉1, 반종10, 격왜40	반종 4명 감한 후 향관 접대
4	접왜식례	1673. 11	차왜	平成友	표왜 입송 회사	봉진1, 시봉1, 반종10, 격왜40	향접위관1특송례 전례는 반종6명을 접대하지만 여러 달 동안 10명을 요구하여 특별히 2명만 추가로 허락해 줌.
	회사차왜등록	1673. 11	차왜	平成友	울산에 표류한 濟州 표왜 입송 회사	봉진1, 시봉1, 반종10, 격왜40	향접위관(양산군수 → 영천군수) 3차연. 1674년 5월에서야 반종을 특별히 2명 추가
	변례집요	1673. 11	차왜	平成友	울산 표왜 입송 회사	봉진1, 시봉1, 반종10, 격왜40	반종 2명 감한 후 향관 접대
5	접왜식례	1676. 5	차왜	藤直良	표왜입송 회사	봉진압물1, 시봉1, 반종10, 격왜40	향접위관1특송례(반종2 감함)
	회사차왜등록	1676. 6	차왜	藤直良	장기에 표류한 왜인 2명 입송 회사	봉진압물1, 시봉1, 반종10, 격왜40(39)	향접위관(양산군수) 3차연. 반종 6명 접대.
	변례집요	1676. 6	차왜	藤直良	장기에 표류한 왜인 2명 입귀 회사	봉진압물1, 시봉1, 반종10, 격왜40	반종 4명을 감한 후 향관 접대
6	접왜식례	1679. 10	차왜	橘成滋	표왜 입송 회사	봉진압물1, 시봉1, 반종6, 격왜40	향접위관1특송례
	변례집요	1679. 10	차왜	橘成滋	和泉州 표왜 입송 회사	봉진압물1, 시봉1, 반종8, 격왜40	향관 접대
	회사차왜등록				회사차왜등록에 기록 없음.		

*4 예조참의.

3. 표민순부와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

두모포에서 초량으로 왜관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연례송사나 차왜 등 일본 사신에 대한 접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別差倭를 정비하려 하였다. 이런 시도는 1682년 임술 통신사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차왜를 ‘裁判差倭’로 단일화하려 한 것이 그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재판차왜로 단일화하지는 못했지만, 별차왜를 대·소차왜로 정비하고 접대례 또한 재정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별차왜 정비 과정에서 표왜입송회사차왜는 결국 소멸하게 되었다.

표왜입송회사차왜는 1692년부터는 별도로 파견되지 않고, 재판차왜를 통하거나 연례송사

선을 통해 서계를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표민순부 또한 연례송사선이나 공작미선 등으로 순부하는 방식이 강화되었다. 임술약조 이전에 접빈례는 받지 못했으나 1646년 路引을 가지고 와서 표왜를 영거해간 차왜 源成寬은 동래부로부터 다례를 받고⁵¹⁾, 1666년 長鬐縣과 三陟에 표류한 왜인을 데리고 가기위해 서계까지 지참하고 온 藤成倫도 다례 설행은 하지 않았지만 도해량을 지급받은 사례⁵²⁾가 있다. 하지만 임술약조의 표민순부가 시행된 이후 표류왜인 또한 일본의 선척에 순부하여 입송하는 조치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 1692~1737년 표왜입송회사 기록

표왜입송 내용			회사서계	
1	1692.7.6	다대포에 표류한 備前州 商船 왜인 13명 입송	1693.7.1.	·세건제1선에 순부 ·(발신) 平義倫 / (수신)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2	1707.6.	築前州 표왜 商民 3명 입송	1708.2.25.	·세건제1선에 순부 ·(발신) 平義方 / (수신)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3	1712.2.21.	1711년 11월 제주에 표류했던 薩摩州 표왜 3명 중 생존자 1명 공작미선으로 송환	1712.10.13.	·平義方이 薩摩州 표왜입송회사 서계가 서식에 어긋나 수정 송부
			1712.12.17	·수정한 서계를 지참하고 입송 ·(발신) 平義方 / (수신)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4	1712.8.	迎日 경계에 표류한 일본 唐津 표왜 11인(왜선 1척) 2특송사선으로 입송	1713.5.27.	·攝州 표왜의 서계와 함께 지참하고 입송 ·(발신) 平義方 / (수신)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5	1712.8.	경주 경계 水營浦에 표박한 攝州 왜선 1척(15인) 2특송사선으로 입송	1713.5.27	·唐津 표왜의 서계와 함께 지참하고 입송 ·(발신) 平義方 / (수신)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6	1713.6	울산 경계 구개운포에 표착한 大坂城 왜인 18인(왜선 1척) 飛船으로 입송.	1714.7.9.	·1특송사선에 순부한 회사서계가 大坂城 표왜 서계가 이니라 攝州 표왜 회사서계였으므로 돌려보냄.
			1714.11.2	·부특송사선에 순부 ·(발신) 平義方 / (수신)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7	1714.4	다대포에 표착한 日岐島 왜선이 표왜인솔선 4척과 함께 입송	1715.5.10	·세건제1선에 순부 ·(발신) 平義方 / (수신)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8	1715.6	다대포에 표착한 幡摩州 왜인 13명 입송	1715.12.8	·(발신) 平義方 / (수신)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9	1717.10	울산 방어진에 표착한 大坂城 왜인 1인, 播州 明石에 사는 왜인6인 입송	1718.7.24.	·부특송사선에 순부 ·(발신) 平義方 / (수신)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 『漂倭入送回謝贈錄』 참조

· 1692년 7월 다대포 앞바다에 표류해온 備前州 왜인 13명이 전례에 따라 양찬과 도해량,

51) 『접왜식례』 「差倭接待之式」, 1646년 2월.

52) 『접왜식례』 「差倭接待之式」, 1666년 8월.

의복 등을 지급받고 禁徒倭 3인 등이 감만이에 내박한 표왜선 1척을 데리고 감. (『漂倭入送回謝謄錄』 1692년(임신) 7월 초6일)

→ 1693년 7월 1일에 기존에 회사차왜를 파견했던 것과는 달리 세건제1선에 표왜입송회사 서계를 순부하였다. 1654년 1월에 부특송선에 회사서계를 순부한 적이 있기는 했으나 상례로 삼지는 않았었다. 1693년의 경우도 일본 측에서는 ‘금년에 차왜를 정하여 출래하는 것은 귀국에 이폐가 적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1선송사에 순부하는 것이니 후에 예로 삼지 말라’는 뜻을 고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측에서는 임술년 약조 중에 深處漂人을 영래하는 것 외에 다른 긴요하지 않은 일에는 모두 順付하도록 하였는데, 왜인들이 후에 예로 삼지 말라고 한 것은 간교가 엿보이니 재판과 관수에게 책유하게 하였다. (『漂倭入送回謝謄錄』 1693년(계유) 7월 초1일)

· 1707년 6월 築前州 상인 3명이 조선 경계에 표도하여 의복과 양식 등을 지급하고 입송함. 3명 중 1명은 刺傷을 입었는데 조선에서 치료해줌. (『漂倭入送回謝謄錄』 1708년(무자) 2월 25일)

→ 1708년 2월 13일에 내도한 세건제1선에 築前州 표왜입송회사서계를 순부함. 세건제1선 다례 실행시 서계를 함께 제출하고 표왜입송회사 별폭 회례는 전례에 따라 거행함. 서계는 대마도주 平義方이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앞으로 보냈음. 다례 실행시 동래부사가 신병으로 참석할 수 없어 부산첨사가 혼자 전례에 따라 실행함. (『漂倭入送回謝謄錄』 1708년(무자) 2월 25일; 3월 17일.)

· 1711년 제주에 표류한 薩摩州 왜인을 전라좌수영으로 압송한 후 다시 부산으로 이동. 표류한 3명 중 사촌 源運門의 시신은 떠내려가고, 숙부 張仁太의 시신은 건져서 제주에 매장하였으며, 權兵衛만 구조됨. (『漂倭入送回謝謄錄』 1711년(신묘) 11월 24일; 12월 11일.) 이번 표왜도 지난 번 築前州 표왜와 마찬가지로 非馬島人이므로 우암포에 별치해두고 물품, 양식 지급 등은 전례대로 거행함. 공작미를 실은 배편에 입귀하게 함. (『漂倭入送回謝謄錄』 1711년(신묘) 12월 11일; 1712년(임진) 2월 21일.)

→ 1712년 10월 대마도주 平義方이 표왜입송회사서계와 별폭 등을 순부해 왔는데 서식에 어긋나는 문자가 있어 正官倭에게 수정하도록 하고 돌려보냄. (『漂倭入送回謝謄錄』 1712년(임진) 10월 13일) 1713년 12월 8일에 수정한 표왜입송회사서계를 지참하고 왔으므로 서계와 별폭을 받아들이고 조선 측 별폭과 回禮는 전례에 따라 마련. (『漂倭入送回謝謄錄』 1712년(임진) 12월 17일.)

· 1712년 8월 迎日 경계에 표류한 일본 唐津 표왜 11인(왜선 1척)을 -> 長鬢 경계 -> 武智浦 -> 牛岩(비마도왜인이므로) 으로 이동. 우암에서 조사할 당시 唐津 표왜가 우암에 머무르고 있는데, 攝州 표왜 15인이 또 추가로 오고 있었으므로 접대 비용 등의 폐해가 우려되므로 속히 입송 조치할 것을 당부함. 10월 17일 3특송선과 함께 입귀함. (『漂倭入送回謝謄錄』 1712년(임진) 8월 3일; 10월 28일.)

· 1712년 8월 경주 경계 水營浦에 표박한 攝州(문정관이 接州로 오기함) 왜선 1척(15인)은 울산부 방어진 앞바다에 정박 -> 초량 앞 바다에서 문정. 唐津 표왜와 함께 표류 인인이 많아 접대 비용 등의 폐해가 우려되므로 속히 입송 조치할 것을 당부함. 같은 해 앞선 唐津 표왜와 攝州는 거주지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입송서계를 별도로 작성함. 10월 17일 3특

송선과 함께 입귀함. (『漂倭入送回謝膳錄』 1712년(임진) 8월 16일; 9월 2일; 10월 28일.)
→ 1713년 5월 17일 唐津·攝州 표왜입송에 대한 회사서계와 별폭을 지참하고 음. 조선 측 별폭과 回禮, 잡물 등은 전례에 따라 마련. (『漂倭入送回謝膳錄』 1713년(계사) 10월 27일)

· 1713년 울산 경계 구개운포에 표착한 大坂城 왜인 18인(왜선 1척)이 6월 15일에 좌수영 관내에 접근하여 서생포첩사가 보고함. 좌도에서 표류할 때 황령산간비오 烽軍 등이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곤장을 치도록 함. 대마도왜인이 아니므로 우암 앞 바다에 정박하게 하고 양찬은 예에 따라서 해아려 지급함.(『漂倭入送回謝膳錄』 1713년(계사) 5월 27일; 6월 26일; 7월 1일) 8월 3일 온 飛船 1척에 함께 타고 발선하여 입귀함.(『漂倭入送回謝膳錄』 1713년(계사) 8월 7일)

→ 1714년 7월 9일 大坂城 표왜 입송회사서계가 아니라 攝州 표왜 입송회사서계를 보냄. 이에 돌려보내고, 11월 2일 다시 온 표왜입송회사서계와 별폭을 받음.

· 1714년 4월 20일 다대포에 日岐島 왜선 표착. 7월 25일 일기고 표왜 인솔선 1척을 포함한 4척이 일본으로 입귀함. (『漂倭入送回謝膳錄』 1714년(갑오) 4월 20일;)

→ 1715년 3월 1일 세건1선이 일기도 표왜입송회사서계를 지참하고 음.

· 1715년 4월 18일 幡摩州 왜인 13명이 조사를 받고 우암에 머무르며 전례대로 식량, 의복 등을 제공받고 입귀함.

→ 1715년 12월 8일 幡摩州 표왜입송회사서계와 별폭을 받음.

· 1717년 大坂城 표왜 1명과 播州 明石에 사는 왜인6인을 조사하여 전례대로 식량, 의복 등을 지급하고, 1718년 1월에 당시 제주표민을 데리고 왔던 표인영래차왜 편에 입송케 함.

→ 1718년 7월 大坂城, 播州 明石 표왜입송회사서계를 받음.

맺음말

이상 본 연구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평화적 교린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표류일본인을 본국으로 입송하는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된 차왜를 접대하는데 부담을 느낀 조선이 접대 부담을 경감하려는 규정을 정비했음을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임술통신사행 전후로 각종 별차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漂倭入送回謝差倭’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중국에는 소멸되기에 이른다. 표왜입송회사차왜에 대한 접대 규정 변화(『접왜식례』에서 간략 확인 가능)와 소멸은 이런 측면을 잘 보여주는 일례이다. 표류일본인 입송제도 또한 1637년 이후 표왜입송차왜를 통해 일본으로 입송하던 것에서 1717년 이후에는 연례송사선, 재판차왜선, 차왜선 등에 순부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한편 회사차왜 관련 규정의 정비는 ‘조선의 倭使 접대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다시는 전쟁이라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협

의와 소통'이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때문에 17세기 말 ~ 18세기 초반기에 조선과 일본 양국이 평화적 교린관계를 위해 소통·협약하여 노력하는 과정을 재확인하였다.

조선후기 표왜입송 제도의 변화와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과정

심민정(부경대 해양인문학연구소)

이 훈(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 논문의 의의

‘표류·표류민의 송환’이란 198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한일 양국에서 연구성과가 꾸준히 축적되어 온 주제의 하나로, 그동안 주로 ‘표류 조선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송환제도나 상호인식, 정보교류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연구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취급해 왔던 ‘표류 조선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구체적으로는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의 본국 송환 이후 대마번이 사의를 표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했던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성립과 소멸과정을 통교제도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최근 월례발표회나 학회의 발표주제를 보면, 예전과 달리 개별 송사에 대한 세밀한 연구들이 눈에 뜨인다. 본 논문도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는 ‘표왜입송회사차왜’를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라면,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과정을 17세기 말~18세기 초 조일 교린관계의 변화 속에서 검토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최근의 연구를 보면, 17세기 말~18세기 초를 조일관계에서 하나의 변곡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도 『漂倭入送膳錄』·『漂倭入送回謝膳錄』 등과 같은 조선측 자료를 통해, 조일관계에 있어서의 17세기 말~18세기 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증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질문사항

논문의 논지 자체에 대한 이견 보다는 궁금 사항에 대한 질문이다.

- ① 먼저, ‘표왜입송회사차왜’에 대한 조선측의 접대가 정착되는 시기를 1637년으로 보면서, 『漂倭入送回謝膳錄』 등을 바탕으로 <표2>를 작성한 것 같다. <표2>를 보면, <1646,1650,1664년>에는 제1특송선에 준하는 별차왜로서 경접위관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또 <1646,1650,1654,1664년>에는 ‘예조참판 서계’라고 작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첫 접대 사례인 1637년에는 대마번이 누구(예조참판 또는 예조참의) 앞으로 서계를 가져왔나? 현재 1637년 표류 일본인(울산 표착 伯耆州 주민) 송환과 관련된 조선측 문서로는 예조참의(김육, 1637.7)의 서계를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이 먼저 송환한 것이라면 봉서(奉書) 형식이어야 하는데 답서(奉復)로 되어 있다. 대마번이 처음부터 예조참의 앞으로 서계를 가져왔는지? 또는 예조참판 앞으로 가져왔는데 조선이 예조참의 명의로 작성해 준 것인지 그 경위가 궁금하다.
- ② 표왜의 송환은 절차상, 일본측에서 ‘표왜입송회사차왜’를 파견하여 양국의 서계가 교환된 후에 완료된다고 설명했는데(6쪽), ‘표왜입송회사차왜’가 지참하는 서계는 ‘봉서’인가 ‘봉복’인가?
- ③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을 임술통신사행(1682)을 전후하여 각종 별차왜가 정비되는 과정

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17세기 말~18세기 초 조일 교린관계에 보이는 이러한 변화란 하나의 공통된 ‘현상’으로서는 무리가 없는 설명~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변화 시기가 ‘왜’ 17세기 말~18세기 초인지 보완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이상).

조선후기 지세포에서 일어난 표착 사고: 구난을 대하는 쓰시마번의 태도

이재훈(동의대학교 연구교수)

1. 1. 들어가며

조선시대에는 현대와 같이 선박의 조종술이 발달하지 않아 온전히 바람과 해류에만 의지하였기에 예기치 않은 기상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해난사고, 즉 표류는 이문화 간의 교류를 만들며, 그 같은 사건이 다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가가 상호관계성을 증명하는 외교적인 특성을 띠게 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이들을 연구해 온 성과물들은 주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 혹은 일본에 들어간 조선인 표류민에 대한 구호와 접대, 격식, 송환체제가 주가 되고, 다른 줄기로는 조선인들의 일본에서의 이문화 체험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생각한다.⁵³⁾ 표류민에 대한 접대와 격식은 곧 상대 나라를 어느 수준으로 보느냐가 가능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연구의 비중이 높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표류민에 대한 처우라는 부분을 통해 본 국가 간의 관계는, 선행들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상당 부분 그 의미가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對馬藩이 호송해 간 표착 일본인들이 본토로 송환되기까지 과정, 倭館의 관리 아래 부산에 정박해 있는 동안 어떤 수순을 밟았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對馬藩은 표류민 호송을 전담하였고, 이 와중에 필연적으로 非對馬藩와 對馬藩 표류민을 호송하는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에 본고에서는 지세포(知世浦)⁵⁴⁾에서 일어난 두 건의 일본선 표착 사건(1687, 1719)을 조사하며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2. 1719년의 표류 사건_쓰시마번의 경우

특정 지역의 일본 선박이 악천후를 만나게 되어 표류를 시작하게 되면,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수가 경상우도의 거제 옥포와 가덕, 지세포, 좌도의 기장에 표착을 하였다.⁵⁵⁾ 표류

53) 표류민송환에 관련한 연구로는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을 다룬 池内敏(『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을 다룬 이훈(『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국학자료원, 2000)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제도적 부분을 다룬 심민정(『1682년 임술통신사행의 임술약조 강정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편』, 『한일관계사연구』73, 한일관계사학회, 2021, pp.3-42), 정성일(『한·일 간 표류민 송환과 해난구조의 법제화(1860~1960년대)』, 『한일관계사연구』75, 한일관계사학회, 2022, pp.169-220), 접대적 측면을 다룬 심민정(『조선 후기 부산에서의 표류 일본인 접대-『조선 표류일기』(1819)를 중심으로』, 『향도부산』4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pp.73-102), 표류민들을 맞이하는 부분의 부담에 관해서는 신명호(『조선후기 해양인식과 표류민 정책 -『典客司日記』를 중심으로-』, 『해양문화학』2, 한국해양문화학회, 2006, pp.1-22), 지역사적인 특성에서 표난사건의 의도성을 제시한 정성일(『朝鮮의 對日關係와 巨濟 사람들 = 1830~80년대 巨濟府 舊助羅里[項里] 주민의 대마도 난파선 구조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pp.175-206)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54) 거제에 있는 지세포는 草梁倭館이 있던 부산역에서 간다면 오륙도, 다대포, 가덕도를 거쳐야 한다. 생각보다 가깝지 않은 거리로. 倭館에서 일직선으로 배로 간다고 쳤을 때, 41km에 해당한다.

55) 이훈(2000), p.312.

이후의 구호부터 송환까지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훈(2000)이 자세히 밝힌 바가 있다.⁵⁶⁾ 對馬藩의 선박이 표류했을 경우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①부산 인근, 부산포 이외의 지역에서 對馬藩의 선박이 표류하면 경상좌도에서는 부산의 別差가, 경상우도에서는 옥포 萬戶가 조사를 시행하고, ②해당 선박은 보통 倭館으로 바로 인계되어 다시 對馬藩으로 돌아가거나 본래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다만 1719년의 표류 사건은 기존의 처리 방법과는 조금 그 상황이 달랐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1719년은 조선 후기에 들어 파견된 아홉 번째 통신사(己亥)가 일본에 도해한 해였다. 기해사행의 선박 여섯 척이 6월 20일에 출항하여 大坂에 도착한 것은 9월 3일이었다. 부산에서 일본 본토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70일이 소요된 셈인데, 이 가운데 對馬藩의 府中를 출발한 것은 7월 19일이었으니 大坂에 도착하기까지가 40일가량이 걸린 것이다. 이는 이 기간 동안 기후가 특히 안 좋았기에 비바람을 피해 육지에서 머물며 좋은 바람을 기다리기 일췌였기 때문이었다. 府中를 출발하고 나서 하루가 지난 7월 19일에 風本浦에 도착하는데, 이때부터 일기가 나빠져서 열흘가량을 風本에서 대기하며 바다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린다. 기해사행 당시에는 이 시기가 특히 날씨가 좋지 않았다.

통신사가 風本에서 대기를 하던 바로 그 시기에 큰 태풍이라도 왔던 것인지 對馬에도 비바람이 몰아쳤고, 부산에도 큰 비바람이 불었다. 館守의 『每日記』 7월 24일 기록에는 “오늘 묘시 중각부터 북동풍, 관내 건물과 집이 조금 파손되었고, 선창 곳곳이 무너졌는데, 신시 상각에 바람이 잦아들었다.”⁵⁷⁾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비바람으로 인해 해안에 정박하고 있던 御米漕船 千年丸은 端綱의 뿌리 부분이 부러져 용미산(呼崎) 쪽으로 표류할 뻔했고, 노(艫)에도 손상이 생겼다. 정박하고 있던 徳永丸의 연락선은 줄이 끊어져 떠내려가, 크게 파손이 되었다.

이튿날인 25일, 代官과 御徒目付가 입회하여 상세한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表老頭家は 창고의 판벽이 모두 날아갔으며, 그 외 기와 및 행랑방 주변 곳곳이 파손되었고, 裏老頭家は 座敷 끝단의 지붕을 잇는 판자가 모두 파손된 데에다가, 기와 및 집의 小壁까지 곳곳이 파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組横目長屋, 御僉官家 등 倭館 내의 거의 모든 건물과 선창이 손상되었고, 수 그루나 되는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갔다.

피해 조사에 여념이 없던 27일에 동래부사가 兩訳과 軍官을 대동시켜 “지난 23일 對馬에서 도해한 大船 두 척이 知世浦에 표착했다가, 이튿날인 24일 큰 바람을 만나 파선되었다는 보고가 지금 있었는데, (안타까워)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명은 무탈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것은 곧이어 보고가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알리고자 두 역관과 군관을 통해 말씀드립니다.”⁵⁸⁾와 같은 연락을 해 온다. 큰 폭풍우가 쳤던 바로 그 날 두 척의 배가 지세포에 표착을 한 것인데, 이들은 공작미를 실기 위해 對馬를 출발하여 倭館으로 향하던 御米漕船인 徳吉丸과 平安丸였다. 對馬藩의 米漕船이 倭館을 벗어나 다른 곳에 표착하던 일이야 종종 있었는데, 이 배의 파손은 평소와는 그 정도가 달랐다. 7월 24일에 平安丸의 선장(船頭)이 작성한 사건의 경위서(口上)는 아래와 같다.

56) 위의 책 pp.167-182.

57) 享保四己亥年三『每日記』 貳拾番 7월 24일(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拾三冊之内今卯ノ中刻ち大北東風雨館内建家少々破損、船倉所々崩レ、申ノ上刻風鎮ル。」(이후, 『每日記』로만 표기)

58) 『每日記』, 7월 27일 「東萊ち兩訳ニ軍官耆人相附申来候者、去升三日對州ち渡海之大船貳艘、知世浦へ致漂着候處ニ、翌升四日大風ニ逢、致破船候由、唯今註進有之、絶言語候、乍然、人命別条無之由ニ御座候、委細之義ハ追々註進次第可申進候、先右之段為御知せ兩訳并軍官を以申入候与之儀申来ル

한 자 적습니다. 이번에 徳吉丸과 동행하여 이번 달 23일 佐須奈를 출항하였는데, 북동쪽의 큰 바람으로 旧助羅浦 가운데 柯嶋銀浦라고 하는 곳에서 배가 손상되었는데, 이는 24일 아침 五시였습니다. 다만 그때 배에서 오를 때, 御送状箱와 선장·키잡이(梶取)의 脇指를 건졌어야 하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서 御送状箱도 脇差도 파도에 쓸렸고, 저희들은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그 밖에 선원 모두 옷 한 벌 뿐이고 아무것도 인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船かす, 碇, 綱 등을 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脇差도 수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그쪽에 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 가운데 多右衛門이라고 하는 자가 한 명 죽었습니다. 이 또한 보고드립니다. 송구합니다.⁵⁹⁾

실제 양 역관의 연락과는 다르게 조난을 당한 徳吉丸과 平安丸 가운데, 平安丸의 선원 多右衛門이 익사하였고, 선장과 키잡이의 脇差를 비롯하여 선박의 대부분의 물건이 침실(沈失)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사망한 것은 이미 어쩔 수 없더라도 막부의 엄격한 관리대상인 무기류를 그대로 바다에 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⁶⁰⁾

관수는 도검류는 막부가 엄히 관리하는 품목이므로 반드시 잠수하여 인양하고, 그 외의 짐과 파손된 선구(船具)도 상세히 조사하고 인양할 것이며 倭館에서 관리를 보낼 것이니 입회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역관이 동래에게 다녀온 후 “...그러나 다대포에서 아래쪽으로 일본인이 내려가는 것은 약조에 없어, 무리하게 보내시면 동래부산포를 비롯하여 양 역관은 물론 그 이하 신분이 낮은 역원까지 남김없이 죄에 처하게 됩니다. 전례가 없는 일에 저희 수 명을 죄에 처하게 하는 것은 매우 난처한 일이라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⁶¹⁾와 같이 이야기한다.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인들이 다대포보다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규외(規外, 犯越罪)로 하여 이를 막지 못한 관리들을 처벌한 적이 있었다.⁶²⁾ 이 때문에 당시 역관이 착각을 했던 듯한데, 일단 관수는 역관의 말을 따라 인원의 파견은 자중하겠다고 한다.⁶³⁾ 대신 倭館의 사정을 잘 아는 별차나 혹은 양 역관 중에 한 명이라도 지세포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다.

脇差는 막부의 특별관리대상 禁物로서 이것이 분실되었을 시에는 당사자를 비롯한 관수

59) 『毎日記』, 7월 29일

一筆啓上仕候、左様御座候得者、今度徳吉丸類船ニ而当月廿三日佐須奈浦出船仕候处ニ、大北東風ニ而旧助羅浦之内柯嶋銀浦与申所ニ而船を損シ、則廿四日朝五ツ時分ニ御座候、尤其刻船ち揚り申候節、御送状箱并船頭梶取兩人分脇指取揚り可申与仕候处ニ、与風大波打参り候而、御送り状箱、脇差ともニ波ニとられ我々儀漸揚り申候、其外船中共ニ一衣着仕たる計ニ而、何茂揚り不申候、然共船かす碇綱等取り可申与奉存候、何とそ右之脇差も詮議仕可申与奉存候、先此段御案内申上候、委細之義ハ私其元へ罷越候時分可申上候

一私水夫之内多右衛門与申者壹人相果申候、是又御案内申上候、恐惶謹言

60) 막부는 무기류에 대해서 특히 엄하게 관리하였다. 분류기사대강에는 倭館에서 칼을 분실하는 것을 별도의 항목으로 묶고 있다. 『分類紀事大綱 三十一』 중 「脇差紛失一件」을 참조.

61) 『毎日記』7월 24일 「...乍然多太浦ち下モへ日本人参候儀者約条ニ無之、押而被差越候へハ、東萊釜山浦ヲ初兩訳者勿論、其以下之小役人迄不殘科ニ被申付事ニ候、不例義ニ我々数人科ニ逢申段難義至極之仕合難尽言語候...」

62) 이훈(2000, pp.175-176)에 의하면 1659, 1663, 1664년 등 많은 사례가 있다고 말한다.

63) 그렇지만 관수는 뒤로는 淸馬藩에 연락을 취해 약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양역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아 9월 21일에 淸馬藩에 보고한다. 「...同壺通ハ御米漕徳吉丸、平安丸去頃、於知世浦破船之刻、此方御役人彼所へ可差越旨、兩訳を以東萊へ申遣候、返答ニ多太浦ち下モへ日本人不被通御約条之由申来り候訳申上候ニ付、兩訳へ御不審被仰下、則訓別方ち認差出し候書付壺通封込ニ差上之、委細ハ当月七日之所記...」(경위서는 9월 6일에 작성) 다만 경위서를 보내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표착지에 倭館의 관리를 입회시키겠다고 인양작업에 압박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본인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⁶⁴⁾ 관수는 이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脇差를 인양하기 전에는 그들 모두 며칠 동안 지세포에 머무르더라도 결코 이쪽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와 같이 표류 선원들을 지세포에 그대로 묶어두는 것이었다. 그리곤 이후에 표착선의 선장들에게 보낼 서간을 작성한다.

“기타 물품은 부수품이고, 이 脇指는 당신들의 목숨이 걸릴 정도의 중요한 것임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못 찾는 걸로 정한다면 그 내용을 이쪽에 보고하고 이쪽에서의 지시를 기다려 주십시오. 倭館에 돌아오는 것에 관해서는 그대들이 (귀환을) 서두르면 조선인들은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어 이쪽(倭館)으로 빨리 노를 젓고자 합니다.”⁶⁵⁾

이는 끝끝내 못 찾게 되더라도 倭館에 돌아오지 말고 지시를 기다리라는 말이었다. 표착이 되면 표류민의 식량 등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표착지에서는 송환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 표선이 지세포를 떠나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양작업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으니 이를 염려하여 장기체류를 인질로 삼아 인양을 재촉하려던 것이었다.

지세포에서 거의 매일 같이 인양되는 품목에 대해 보고가 들어왔다. 그 사이에 도끼, 닢, 기타 선구와 같은 철제류 등도 인양이 되었는데, 脇指와 多右衛門의 사체는 아무래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인양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표착선의 선원들은 입을 옷도 마땅치 않은 데에다가 표류 때에 상처 입은 자도 있고 한동안 날씨도 계속 좋지 않아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표류선의 선원들 사이에서도 倭館으로 호송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듯하다.⁶⁶⁾ 역관은 먼저 온전히 인양이 완료된 배라도 倭館에서 받아주지 않겠느냐며, 만약에 표류 선원들을 불러들인 뒤에도 인양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들을 다시 표착지에 돌려보내도 좋다는 제안까지 하는데, 관수는 1, 2년이 걸린다고 해도 선원들을 倭館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한다.⁶⁷⁾ 이는 역시 脇指의 인양이 가장 중요했기에 인양작업을 재촉시키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8월 14일에 이르러 관수는 태도를 바꾸어 표착된 선원들을 倭館에 들이기로 결정한다. 여기에는 조건이 걸려있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만약 인양이 계속 늦어지면 다시 표류인들을 지세포에 돌려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조가 서계를 보내주는 것이었다. 실은 파선이 되고 약 2주가 지난 7월 8일부터 관수는 계속하여 예조에서 서계를 보내주길 요구하였다. 관수가 주장하는 논리는 ①이 사건은 통상적인 표착과 달라 막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동래의 서간으로 보고한 적은 없고, ② 鰐浦에서 역관사의 배가 침몰했을 때에 시체가 인양될 때마다 尙馬藩主가 예조에 서간을 보내주었다는 것이었다.⁶⁸⁾

64) 실제로 인양작업이 길어지자, 8월 15일에 들어 尙馬藩에서도 인양을 돕기 위해 잠수에 유능한 자를 두 명 파견한다. (亥之刻、佐須奈村飛船之頭源右衛門參着、去月廿四日、於知世浦御米漕船德吉丸、平安丸及破船、平安丸船頭、梶取脇指沈失、未取上ヶ段申上候ニ付、是非ニ此方ちも一応可為撈尋由ニ而水練之者佐護郷湊村弥兵衛、豊崎郷豊村善之助兩人被差越ル) 조선 측에서 인양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이들을 투입할 계획에 있었지만, 인양에 성공하게 되며 이들은 결국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

65) 『毎日記』7월 29일 「…其外之品ハ附たりニ而此脇指ハ其方共命を御取被成候程之大切成所能々々簡可仕候、是非々々不相見ニ究候ハ、其旨此方へ致註進、爰元ち之差図相待可申候、和館へ廻り候儀、其方共急キ申候而ハ、朝鮮人ハ尚以片時茂早々此方へ漕廻し候義望申事ニ候…」

66) 『毎日記』8월 3일, 「…知世浦ち追註進書付三通、李同知致持參申聞候ハ、唯今東萊釜山浦へ之註進有之候故、掛御目候、然ハ碇、船具、大方取上ヶ候ニ付、破船之面々和館へ可罷越由申被承之」

67) 『毎日記』8월 5일, 「…兎角ニ右脇指取出し候様ニ可被致候、無左候而ハ、仮令壹年貳年ニ及候とても右漂人共、此方へ請取申義決而不罷成由申遣ス…」

68) 『毎日記』8월 7일, 「…此度之義尋常之漂船与ハ訳ケ甚違イたる事ニ候得ハ、東武江不被及案内候而不叶儀ニ候…東武江被及案内候義、古来ち東萊之御書簡を以被申上たる例、終ニ無之候得ハ、兎角ニ礼

다만 이 예조의 서계 발송에 관해서는 최초 비변사에서 서계의 작성이 논의되다가 예조판서가 동래부사의 명의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내, 서계 작성에 관한 건이 무산된다.⁶⁹⁾ 아마 관수가 서계를 요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래부사가 조정에 건의를 올린 것 같은데, 『每日記』에는 어디에도 동래부사가 이를 발송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도리어 8월 12일에는 동래부사 역시 선례가 없긴 하지만, 잘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대답할 뿐이었던 것을 보면, 아마 선례가 없기에 쉽게 서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조선 측의 상식적인 예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굳이 말을 하지 않고 본인이 무마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표류선원들의 체류가 길어지는 와중에 관수가 내건 조건이 서계이니 만큼, 지세포에 있는 표민들을 빨리 倭館으로 거둬들이기 위함도 있으니, “전례는 없지만 금번에는 사망자도 발생하였기에, 예조가 보내는 서계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가까운 시기에 계문을 올리겠습니다.”고 말하며 관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⁷⁰⁾ 그리고 8월 16일 표류선의 선원들이 지세포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 좋게도 脇指는 8월 19일에 인양이 되었다. 녹이 슬긴 했지만, 일본의 검이 틀림없다며 관수를 이를 받아들인다. 표류선박의 선원들은 倭館으로 향하여 22일에 다대포에 도착한다. 근 한 달 가까이 지세포에서 지낸 셈이었다.

이들이 복귀할 때는 지세포에서는 표류 선원들을 병선 한 척에 태우고 군관 1명과, 서역(書役) 1명이 동행하였다. 해안초소(浜御番所)에서는 양역과 倭館의 관리가 입회하여 이들을 받아들였다. 이들을 호송해 온 軍官과 書役에게 二代官에서 麵類와 御酒를 접대한 다음에 관수가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이후 표선된 선박의 선장과 키잡이, 선원들에게 사건의 경위와 지세포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한 심문이 있었다.

< 참고 >

>

口上⁷¹⁾

저희들이 탄 배인 德吉丸의 파선의 경위를 여쭙셨습니다. 지난 달 23일, 날씨가 좋다고 봐서 동행하는 배인 平安丸과 이야기하여 辰시 상각에 佐須奈를 출선하였는데, 20리 정도 나아갔을 때, 북동풍이 매우 강하게 되어 관에 배를 대려고 모두 힘을 내어 달렸지만, 파도가 높아져서 下高麗知世浦 가운데 柯島銀浦라고 하는 곳에 걸렸는데, 조선인들이 한 척에 14~15명씩 나눠 타서 두 척이 나왔기에, ‘아무쪼록 항구 내로 옮겨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더니, 그들이 말하길, “아무래도 운반하고 싶어 여기까지 나왔는데, 풍파가 크니, 두 척으로는 끌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돌아가서 몇 척을 준비해서 끌고 가자고 하겠습니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점차

曹ち不被差添候而ハ不相濟訳ニ候、…先年訳使韓同知、朴僉正渡海之刻、対州於鰐浦洋ニ破船之節前代々様之例シ無之事ニ候得共、屹度使者を以其訳委ク被相告、其後死骸取上ケ候度毎ニ礼曹江太守書翰ニ而被相送たる義ニ候得共…」

69) 『비변사등록』 숙종 45년, 8월 12일(음) 「…今八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接入對時、右議政李所達、此狀乃東萊府使徐命淵狀達也、倭船二隻遭風漂到、而所載之物、盡爲沈没、其中一人渰死、自前倭船、未有漂敗於我境者、而今乃有此渰死者及所沈雜物、今方拯出、而接待之道、無前例之可據者、令廟堂稟處矣、倭人善於操舟、絶無沈敗之事、我國之救濟、亦無謄錄、然我國人漂没於彼境、則必給衣糧、善爲護送、其在交隣之道、我亦當給衣糧以送、且我國漂人、則倭人或順付、或別定差倭以送、以此言之、我亦宜送渡海譯官、而倭人方留館中、以善爲護送之意、分付館倭、書契亦令撰送似宜故敢達矣、令曰、依爲之、行禮曹判書閔鎮厚曰、書契不必自禮曹爲之、以東萊府使書契成送恐好矣、令曰、依爲之、…」

70) 『每日記』 8월 14일, 今般ハ格別之訳殞命之者も有之候得ハ、兎角礼曹ち書契不被差添候而ハ相濟申間敷義与存入候故、弥近日可致啓聞候

풍파가 거세지고 예인선 한 척도 오질 않고 한밤중이 되었는데, 24일 아침에 이르러 바람이 더 세져,碇을 올리고 知世浦 안의 銀浦에서 파선되었습니다. 다만 平安丸은 저희 배보다 4-50리 정도 먼 바다에 있어서, 파선된 장소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 지난 16일 은포에서 예인하여 옥포까지 착선했습니다.
- 이곳을 지난 18일 출선하여, 長木浦에 착선하였습니다.
- 이곳을 지난 19일에 예인해 나온 후에 가덕에 착선했습니다. 이곳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체류하였고, 어제 23일에 上加德을 출선하여 多太浦에 도착했다가 오늘 관에 도착했습니다.
- 銀浦에서 선원들을 둔 곳을 물으셨습니다. 임시움막(小屋掛)을 만들었을 텐데, 갑자기 완성되기 어렵다고 하여,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집 한 곳, 대청 한 곳에 두 척의 선원들을 두었습니다. 아침, 저녁은 五日次 쌀을 앞에서 준비하고 수령하였습니다.
- 船滓 등을 조금 인양했는데, 歸館하고 싶다고 저희들이 조선인들에게 청한 것을 여쭙셨습니다. 일찍이 歸館은 바라지 않았습다. 船滓은 또한 인양하였지만, 중용한 도검(腰物)도 인양하지 못하였고, 거기에다가 익사한 사체도 찾지 못했기에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체류하겠거니 생각했기에, 그와 같은 것은 청하지 않았습다. 그렇지만, 선원들이 많았기에 어쩌면 선원 중에서 조선 역원이나 통사 등에게 무심코 말한 것을 듣고 바로 보고한 것이라도 될런지요, 일찍이 전원 歸館을 청한 일은 없습다.
- 자신이 당시 갖고 있던 의복을 입고 있던 자고 있었고, 조선인들이 접대로 준 의복을 입은 자도 있었는지 여쭙셨습니다. 육지에 올라왔을 때, 자신의 옷을 입고 있던 자도 있었고, 또 알몸으로 육지에 오른 자도 있었습다.
- 조선인이 접대로 준 의복은 唐嶋의 地頭가 우리들 1명에게 木綿 한 필씩. 同木綿 11개씩, 이는 동래부사가 접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銀浦에 오일차에 관해 여쭙셨습니다. 7월 24일 파선한 날부터 26일까지는 조선인이 밥을 지었고, 27일부터는 오일차를 건네는 것으로 정해졌기에, 이 사흘 치를 빼고 현물로 변제(返弁)하라고 말했기에, 무사히 변제했습니다. 오일차 쌀은 하루에 1丸씩 접대하였습니다. 다만, 歸館하는 동안 多太浦보다 아래쪽 곳곳의 쌀을 하루에 1丸씩 수령하였습니다.
- 破船의 道具는 灘廻리로 틀림없는지 하는 질문, 조선인들이 역원들에게 보내 인원수를 적은 서간과 특별히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드러지는 것을 다음에 적습다.
 ” 碇六頭 ” 綱六房 ” 竿物道具拾六くゝり ” 梶壺羽
 ” 柱壺本 但、せみ口五尺程之所ち折レ居申候 ” 其外之船滓品々難致書載候
- 銀浦에 체류하는 동안, 海上이 洋일 때는 매일 조선인들이 배를 다섯 척씩 보내어, 잠수하게 하였습니다. 下々이지만서도 平安丸 선장과 梶取의 脇指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특히 물에 빠진 시체를 찾아내고 싶어서 매번 선장과 梶取가 동행하여 장소에 나가, 잠수를 시켰지만, 우리들이 체류하는 동안 이 물건은 인양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선원 가운데 한두 명이 잠수에 능한 자가 있어서, 조선인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 곳곳에서 받은 접대품을 물어보셨습니다.
 ” 酒 1斗 정도 ” 多葉粉 2斤 정도 ” 皿茶碗 1명에 3개씩
 ” 半席 15장 ” 烟器 16개 ” 味噌 2俵 정도
 ” 魚菜類 조금씩
 은포에 체류하는 동안 2척의 배의 승조원에게 접대한 물품은 이와 같습니다. 唐嶋가 보낸 접대물인지, 또는 지세포 奉り役인들이 보낸 馳走인지, 心附를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 酒 煮肴
 이는 玉浦, 長木浦, 加德, 이곳에서 2척의 배의 승조원들에게 보낸 음식들입니다. 이외에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八月廿五日	德永丸	船頭 松井格左衛門 梶取喜兵衛 船添五兵衛
大竹清右衛門殿		
野村清右衛門殿		
平間權八殿		
国分与一右衛門殿		

그리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尙馬에 돌아간 것은 10월 16일이 되어서였다. 최초 10월 9일에 이들을 모두 돌려보내자고 二代官에 이야기하였으나, 곧 다가올 예정인 告還使 封進宴席에 지장이 생기므로 반만 보내자는 이야기가 나와 10월 11일에 우선 반절을 尙馬로 귀국시키고, 나머지 반절은 남겨두었다. 그런데 본래대로라면 예조에서 서계가 와야 표류한 선원들이 이를 지참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서계가 조정에서 최초로 도착한 것이 11월 2일이었고, 이 서계는 표현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듬해인 1720년 8월이나 되야 서계가 완성되게 된다. 이때까지 선원들이 남아 있을 수는 없으니 선원들은 아마 조기 귀국이 되었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1719년에 일어난 尙馬藩 미조선 두 척의 지세포 표착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다른 지역도 아닌 바로 尙馬藩의 미조선이 파선된 데에다가, 막부가 엄하게 관리하는 脇指가 침실되는 사건이기에, 여타 파선 기록에 비해 관수의 매일기에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과정 중에서 倭館의 관수가 서계를 받아 내기 위해, 그리고 脇指를 인양시키기 위해 표류 선원들을 표류지에 계속 정박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3. 1687년의 선박 표류_비대마도의 경우⁷²⁾

尙馬藩 이외의 배를 조선에서는 他島漂倭(深處倭)라 하여 표착된 배에 대한 구난과, 배에 대한 조사가 끝나도 倭館에 들이지 않고 근처의 앞바다에 머물게 하였다. 이때 동래부가 역관을 보내 다시 한 번 조사를 시행하는데, 倭館에서도 배에 올라 필요한 조사를 행하였다. 그리고 예조에서 서계가 도착하면 연향을 베푸는 동안에 짐 검사를 행했다. 그리고 尙馬藩에 도착한 후에, 연락을 기다렸다가 長崎나 大坂의 봉행소로 호송되는 게 상례였다. 이때 尙馬藩에서 조사를 하여 문제가 없으면 막부의 연락을 기다릴 필요 없이, 長崎나 大坂의 봉행소 중에 가까운 곳에 보내라고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1687년은 이 규칙이 정해진 이후(막부의 老中の 서간), 처음으로 타지방의 표류민이 발생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尙馬藩의 藩主가 바뀌었기에 이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었다. 이 때문에 倭館에서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大坂의 봉행소에 연락하여 두 봉행소 중에 어느 곳에 보내면 좋을지 문의하는 동시에, 에도에는 예전에 받은 지령대로 막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표류민을 송환해도 좋은지 문의를 넣는다. 다만 이 호송 절차에 대한 문의는 금번에는 차치하고, 본장에서는 표류민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에만 집중을 하기로 한다.⁷³⁾

71) 『毎日記』 8월 25일, 이는 파선된 배 중의 하나인 德吉丸의 구상서이다. 다른 한 척의 내용은 피해 경위만 미미하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하다.

72) 이곳에서 사용된 사료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松平兵部太輔様御領越前新保船一艘朝鮮知世浦江漂着記録』청구번호(2739)를 바탕으로 삼았다.

73) 구호부터 송환 절차에 이르기까지는 이훈 (2000, pp.169~171)이 자세하다.

가. (1) 구호에서 倭館 출항까지

1687년 5월 19일 越前国에서 돛이 28매인 배⁷⁴⁾ 한 척이 선장을 포함 28명을 태우고 경상도 지세포에 표착한다. 이 배는 4월 2일 越前을 나와 南部(현재의 靑森와 岩手県)에 목재를 사러 가서, 용무를 마치고선 20일에 南部에서 加賀(현재의 石川県)로 넘어간다. 그리고 5월 16일에 加賀를 출발했는데, 풍우를 만나 19일 조선의 지세포에 표착하게 된 것이다.

5월 22일에 이 소식을, 양 판사는 재판관을 통해 관수 幾度大右衛門에게 전달한다. 이를 들은 관수는 표류선의 소속에 관해 조선 측에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으로, 신속하게 尙馬藩에 이 소식을 알린다. 그리고 다음날 관수는 스스로도 선박의 조사를 위해 小田□□右衛門, 御歩行 横目小川吉右衛門, 国部利兵衛과 組下横目 2명을 小早 한 척, 枝船 1척에 나눠 태워 다대포로 보낸다. 이 배가 만약에 尙馬藩의 배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다대포에 묶어두기 위해서였다.⁷⁵⁾

6월 1일, 표착된 배가 도착하자, 倭館에서 파견 보낸 인원들이 표류선을 조사한다. 두 번째로 보낸 셈인데, 이 때에는 60여 명의 대단위 인원이 조사차 다대포를 방문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6월 23일 尙馬藩에 보고되었다.

보고 서간의 내용을 보면 조선에서는 오일차 등을 지급하였고 관수는 대관에게 지시하여 白米 1俵, 味噌 1樽, 酒 1樽을 지급하였으며, 다대포에 계속 배를 두면 이를 감시하는 倭館의 横目들이 교대하러 오기가 쉽질 않으니 牧之嶋(현재의 영도)의 바깥쪽으로 돌아서 구 수영(元水營)에 정박시키고자 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이후 두 달여의 시간을 이곳에서 체류하며, 예조가 보내는 서계를 기다린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든 표류선에는 예조가 막부에 보내는 서계를 지참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서계가 오지 않으면 출발을 할 수가 없었다. 최초 조정이 倭館에 서계를 보낸 것은 7월 6일이었으나, 관수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여, 2차로 서계가 도착한 것은 8월 1일이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고 순풍을 기다린 후에 본 선박은 8월 5일 佐須奈를 향해 떠난다. 이때 이 배편으로 양 재판과 관수가 적어 보낸 서간을 보면,

…그런데 越前 표류인들에게 딸려 보내는 서간이 7월 29일 도착하여, 書役의 승려(出家)를 불러 확인했더니, 서간 가운데에 일본국, 조선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日가 조선국의 朝보다 조금 내려간 것처럼 보이기에, 또 한양에 올려보내 고치게 해야 할지 저희들이 상담해 보았는데, 표류인들도 이곳에 오래 체류하여 아주 곤란해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곳에 며칠(더) 체류하는 것은 송구하지만 막부에 대해서도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선 서간을 받고 표류선에 대해 금번에 귀국을 명했습니다.…⁷⁶⁾

앞서 1719년의 尙馬藩 미조선 파선의 사례에서 근 1년 가까이 서계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74) 조선에서 최초로 온 보고에는 31매라고 되어 있다. 배의 실물을 확인하기 전에 尙馬藩이 長崎에 보낸 서간에는 조선인들이 잘못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한다.

75) 이훈(2000, P.169) (본문에서 인용한 문장은 若他国船ニ而候者、多大浦江召置候様ニ与申付候)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倭館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비대마도인들을 倭館에 들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한다.

76) ○漂船八月五日申之刻佐須奈浦江着船、依之朝鮮相附渡候。吉村善左衛門・早田甚兵衛先達而群次を以上府仕ル。則朝鮮国ニ漂船相添候書翰并館守・裁判方之書状等兩人持参仕候事。「…然者、越前漂流人ニ相添候書翰七月廿九日到來仕候ニ付、書役之出家召寄、吟味仕候處、書翰之内日本国・朝鮮国与御座候。日之字、朝鮮国之朝之字少さかり申候様ニ見へ候故、又都へ登せ為直可申哉与、我々相談仕候得共、漂流人茂当地江永々逗留仕、殊外難儀仕候由承候。殊爰元江数日逗留仕候段、乍憚公儀向御首尾茂如何可有御座哉与奉存候故、先書翰請取、右漂流船今度帰国申付候。」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조가 보내는 서계는 막부에 대해 발송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면 보통 몇 번이라도 수정을 요구하였다. 1차 서계가 도착했을 때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관수가 尙馬藩에 보고하자, 尙馬藩의 平田直右衛門이 “지당합니다. 이 서간은 막부에 보낼 것이니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⁷⁷⁾라고 답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어차피 표류선원들이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해당 지역의 백성들에게서 식량을 조달하기 때문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은 도리어 조선에게 괴로운 일이었다. 이에 본문 2장의 경우처럼 倭館은 이를 인질처럼 잡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 서계를 요청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서계에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지만, 표류인들이 곤란해 하고 막부가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으니 일단 받고, 귀국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아무래도 尙馬藩의 표선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⁷⁸⁾

尙馬藩은 非尙馬藩의 표류민을 단 한 차례도 倭館에 들인 적이 없었는데, 관수는 표면적으로 그 이유를 ‘倭館의 각종 일들을 보게 할 수 없기 때문’⁷⁹⁾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이들은 선박에 남아 조정에서 서계가 내려와, 귀국할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 (2) 사스나 이후

尙馬藩은 최초 관수에게서 非尙馬藩의 배가 표착했음을 알리는 연락을 받자, 아직 출항에 대한 계획도 서지 않은 6월 5일에 尙馬藩은 일찌감치 倭館, 佐須奈, 府中에 이르기까지 전례를 참고하고 番船, 警固人을 비롯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례를 따르고 질서 있고 보기 좋게 운영할 것을 주문한다.⁸⁰⁾ 그리고 尙馬藩은 질서 유지를 위해 小早船에 태워 시급히 인원들을 佐須奈에 파견하였다. 6월 5일에 年寄中가 보낸 佐須奈에 관한 당부사항이 적힌 서간(覚)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一. 통행증명서, 종교증명서(通切手, 宗門手形)를 확인할 것.
- 一. 조선에서 받은 접대 내용을 상세히 듣고 보고할 것
- 一. 선내 짐과 조선에서 보낸 送狀과 대조하여 검사할 것(尙馬藩의 인원에게 하는 강도로)
- 一. 선내에 무기 등이 없는지, 조선에 무기를 놓고 오지 않았는지 특히 주의 깊게 조사할 것.
- 一. 표류된 경위를 상세히 적을 것
- 一. 배마다 인원을 배치하고 질서를 유지할 것
- 一. 표류민이 체류하는 동안에는 경비정 등을 신경 써서 명(배치)하고 육지에는 横目 중 組之者を 붙여 야간순찰 담당을 하게 할 것, 다만 보기에 나쁘지 않게 명할 것

77) 7월 12日 ○朝鮮表幾度大右衛門七月八日之書狀到来、佐須奈々群次之飛脚を以差越候事。「…書翰之内削候而書直候所有之ニ付、都江登せ直之、到来次第可被相渡之由御尤ニ存候。此書翰者公儀江被差上候間、随分可被入念候。…」

78) 이 서계는 물론 尙馬藩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하는데,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 너무 지연 되면 또 지연이 되어버리니, 향후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사에게 일러두라고 한다. (○朝鮮表へ之返事差越ス(8月10日))

79) 『漂倭入送膳録』2, 丁丑 7월 16일 장계. 正官等曰“館中大小之事、不可使深處之人目觀、而耳聞所係之重、不可以言語盡陳留泊于與館所、相遠幽僻之地、飛報島主、定奪回來、許令入歸…”云. 다만 이혼은 본 장계의 내용과는 별개로 ①倭館의 경비 부담, ②尙馬藩의 대조선 외교 및 무역의 관한 정보가 누설의 염려, ③ 체류의 장기화에 따른 표류민의 사고(범죄) 발생 가능성, ④ 송환에 대한 부담 등 복합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았다.(상계서, p.172-173)

80) 右漂船ニ付、被仰出候者、以前此類之漂船有之候節記録考之、公儀江遂御案内候義并朝鮮・佐須奈・府内ニ至而滞留中番船・警固人、其外御□□(擦れ)例之通可相勤候、尤行規旁見掛能様ニ可申付之旨被仰出候也。

- 一. 쌀, 된장, 식초, 간장, 기름, 술, 장작, 숯이 필요하면 전달할 것.
- 一. 표류선이 체류중일 때 만약 조선에 갔다가 돌아오는 배가 있다면 평소대로 주의 깊게 조사할 것.
- 一. 키잡이나 선장 중에 한 명을 보증인으로 삼을 것
- 一. 서쪽편 항구에 가서 해협을 통과하기 어려우니 노를 저어 배를 조사할 것. 동쪽편 항구에 착선하면 역원들이 넘어가서 조사할 것. 물론 보기에 나쁘지 않도록 할 것.
- 一. 番所를 꾸미는 용도(飾之用)로 鑪 5개, 鉄砲 5정, 弓 5개, 靫 5개, 赤幕木綿, 幕挑灯, 対單羽織 등을 보낼 것
- 一. 御歩行, 横目, 足輕 등 못 가는 인원이나, 지방의 足輕 등을 잘 확인하고 파견할 것

지시의 내용은 대개 표류민들에 대한 신원과 표류 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밀무역으로 연결될 가능성의 배제와 이를 위한 짐과 배에 대한 검사, 막부의 금도를 어겼는지에 관한 것, 그리고 체류하는 곳의 질서 유지에 집중되어 있다. 番所에 꾸미는 무기류와 의복까지 특별히 보내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이 같은 지시는 番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佐須奈의 関所에도 꾸미는(飾用) 武具와 비치 자원들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들은 嶋雄菅右衛門 편으로 전달된다.

武具	鉄砲(5挺)・弓(5張)・靫(5甫)・対之鑪(5本)・屏風(1双)・赤幕(片張)・木綿幕(片張)・木綿対單羽織(14)・丸挑灯(10)・箱挑灯(5)・蠟燭(15)・薄縁(20)・棒(10)
	白米(3俵)・味噌(7貫目入樽)・酢(9舁入樽)・醤油(1舁入樽)・塩(5舁)・諸白(2斗入樽)・椀折敷(1人前)・食鍋(1)・料理鍋(1)

対馬藩이 통신사를 접대하며 조선 측에 대해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야 당연한 일 이긴 하나, 통신사를 맞이할 때조차 이처럼 상세하게 준비하는 기록은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더군다나 ‘보기 좋게’라는 표현은 종가문서 상에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닌, 너무나도 생소한 표현이다.⁸¹⁾ 다대포에 정박했음을 알리는 관수의 서간에 대한 답장을 보면 “체류 중에 보기 좋게 질서를 지키는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말할 것도 없지만 타국인이기에 혹시 몰라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⁸²⁾라는 것을 보면 그 경향은 확실해진다. 다만 양쪽의 서간을 보낸 인물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어,⁸³⁾ 개인의 특유의 말투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비슷한 사례는 다대포에서 짐 검사를 할 때에도 발견된다. 관수가 몸이 좋지 않아 짐검하는 데에 갈 수 없게 되자, 이전에 다대포에 갔던(1차) 助左衛門이 가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그렇다면 담당자(役目) 외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재판이 대신 가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対馬藩이 타 지역의 표류민을 송환하는 데에 있어 체면과 위신이라는 부분을 중시하고 있는 듯하다.⁸⁴⁾

81) 참고삼아,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에서 ‘見掛(겉보기, 겉모양)’로 검색했을 때 『분류기사대강』에서는 20건이 검색되는데, 그중 체면을 나타내는 표현은 3건에 불과하다. (검색일: 230825)

82) 6월 5일 年寄中の 서간 「…其元逗留中見掛能様ニ御行規之義随分可被入御念候。不申及候へ共、他国人義候故、為念如斯ニ候。…」

83) 본문 중 佐須奈에 관한 당부사항에는 그 발신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다.

84) 후추에서 문정을 할 때에도 배에 오를 때에는 창을 들게 하여 見掛能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억측이긴 하지만 대조선외교/무역의 루트를 독점하면서도, 外様大名로서 対馬藩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열등감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対馬藩이 外様大名로서의 한계를 드러난 것은箕輪吉次(「壬戌年 信使記録의 集書」, 『한일관계사연구』50, 한일관계사학회, 2015, pp.123-174 중 5장(江戸城의 그림)에서 엿볼 수 있다.

< 佐須奈의 표류선 맞이 상황 >

浜番所	赤幕을 치고, 금병풍으로 이를 둘러쌌다. 무기들을 장식하고, 밤에는 丸挑灯을 좌우에 걸고 侍 4명, 下横目 1명, 足輕 2명, 人足 2명이 근무
下横目番所	番所 앞에 突棒, さすまた, ひねりを 장식하고 下横目 1명, 足輕 2명이 근무
陰之番所	木綿 장막을 치고 突棒와 さすまた를 장식하고, 밤에는 丸挑灯 1개를 걸고, 足輕 1명, 人足 2명이 근무
迎番	小早 1척(철포 2정, 화살 2개 장식, 赤幕), 枝船 2척
番船	小早 1척 (鎗 1, 鉄砲 2정, 弓 2개 장식, 밤에는 挑灯 점등)

위 당부사항 세 번째 내용처럼 佐須奈에 도착하면 짐 검사를 시행한다. 다대포에서도 한 번 짐 검사를 했는데, 이 배에는 짐이 많이 실려 있어서 이 때에도 上廻り 부분만 검사를 하였다. 佐須奈에서 짐 검사가 이루어질 때에도 佐須奈의 横目が 서간을 보내 20일은 족히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이 또한 선내(船中)와 上廻り만 검사하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후추로 보내라고 연락한다.⁸⁵⁾ 표류해서 온 타지역 선박은 밀무역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였는지, 혹은 오래 체류시키는 것이 対馬藩 입장에서 좋지 않아서였는지 짐 검사가 그렇게 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5일 동안 머무르며 필요한 조사를 받다가 10일에 佐須奈를 떠나 11일에 府中에 도착한다. 府中에서는 12일에 이들에게 白米 10俵, 酒 1樽, 味噌 1樽, 薪 100貫目を 지급하였다. 별도의 장소에 짐 검사하는 곳을 만들고 14일부터 16일까지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도 이들 만에 모든 짐검사가 끝나는 것을 보면 아마 사스나와 동일하게 선내(船中)와 上廻り만 검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배는 짐 검사를 하는 곳에 계속 정박하고 이들은 육지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필요한 사항은 연락선을 통해 연락하고, 만약에 급한 일이 있다면 問屋를 세워두고 그곳에서 해결하게 하였다. 선원 중 한 명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요양은 이 問屋에서 하게 하였다.⁸⁶⁾

< 対馬藩 지급품 >

6월 1일	白米 5斗 3升, 酒 1樽, 味噌 1樽
6월 18일	蓬 50장
6월 26일	油 2升
6월 30일	酒 2瓶, 醬油 1 瓶, 酢, 鯛, 鰻, 小魚, 茄子, 瓜, 菜, 夕顔, 炭 1俵
8월 9일	薪 100貫目, 明松 50斤
8월 12일	白米 10俵, 味噌 1樽, 酒 1樽, 薪 100貫目

이들은 11월 15일에 고국에 돌아간다. 다만 아쉽게도 거의 두 달 가까이를 対馬藩에 있었던 것치고는 府中에 들어서부터는 大坂奉行所와 越前守에게 보낼 서류만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府中에 들면서부터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했고 대접했는지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본 사료가 새로운 송환 방법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송환이기에, 아마 전례로써

85) ○佐須奈浦御横目中へ返事、村繼之以飛脚差越之「…船中・上廻り計被致見分、一日も早々可被漕廻候…」(8月7日)

86) 이 선원은 결국 8월 23일 죽음을 맞이한다. 이 기간 동안 対馬藩에서 의원과 약을 비롯한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그리고 眞言寺에서 장례를 치렀다.

남기기 위해 만들었던 사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타지역인들이 처음으로 발을 들이는 佐須奈가 아무래도 府中에 비해 비교적 덜 정비되었을 테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비책을 내세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4. 4. 나가며

조선에 표류해 온 일본인에 대한 송환절차를 전담했던 村馬藩은 표류민의 출신지역에 따라 그 송환절차를 달리했다. 본고는 조선 후기 지세포에서 일어난 두 건의 표착사건을 다루며 村馬藩이 송환절차를 달리하며 어떤 부분을 중시했을까 하는 부분에 착목해 본 것이다.

1719년에 발생한 村馬藩 米漕船의 표착사건은 관수의 매일기를 통해 단순한 표착을 넘어 배가 파선되고, 막부의 중요 관리 대상이었던 脇差가 침몰되었으며 선원 한 명이 물에 빠져 실종된 전대미문의 사건을 확인하였다. 이 상황을 맞아 村馬藩은 침몰된 脇差를 되찾기 위하여, 그리고 초유의 사건에 대한 예조 발행의 서계를 받아내기 위하여 표류 선원들을 표착지에 계속 묶어두는 방법을 취한다. 표류민 발생시 인근 읍민들이 그 부담을 지고 있기에 표류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체류시키는 것은 동래부사에게 있어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반면에 시간적으로 역순이긴 하지만, 1687년에 일어난 지세포 표류사건은 새로운 송환 체계가 제안되고 처음으로 적용되는 배경에 의해, 전례를 만들기 위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된 사료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越前の 표류선의 선원들의 송환 양상을 살펴보았다. 관수는 예조가 보낸 서계에 문제가 될 듯한 부분이 보였지만, 표류민들을 위해 이를 그냥 받아들여 준다. 짐 검사를 함에 있어서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서도 표착선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村馬藩은 佐須奈에 ‘보기에 나쁘지 않게’ 각종 무구와 비품을 지정해 주며, 체면과 위신을 강조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본고는 서로 다른 지역의 호송 실태를 확인하여 그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자료적인 한계로 인해 사실 일정 부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났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추후에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村馬藩의 내부 문서, 특히 왜관과 村馬藩 사이에 주고 받은 서간문을 일일이 확인해 나간다면 분명한 차이를 좀더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조선후기 지세포에서 일어난 표착사고: 구난을 대하는 쓰시마번의 태도

발표자: 이재훈(동의대)

토론자: 이형주(국민대)

본 발표는 쓰시마 번 출신 표류민에 의한 표류 사례(1719년)와 非쓰시마 번 출신 표류민에 의한 표류 사례(1687년)를 비교함으로써, 근세 일본인 표류민의 송환 절차에서 표류민의 출신지에 따라 쓰시마 번이 어떠한 부분을 중요시했는가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한반도에 표착한 일본 표류민의 송환 과정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 예를 들어 ‘쓰시마 번 출신 표류민은 표착지에서 왜관으로 회송되었지만, 非쓰시마 번 출신 표류민의 경우 우암포에서 대기했다’ 등과 같은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고자는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절차 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이러한 점이 본 발표의 신선한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쓰시마 번 측의 사료를 통해 표류민 송환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했다는 점은 근세 조일 표류민 연구사의 사례 축적에 공헌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토론자 또한 발표자와 같은 연구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큰 공부가 되었으며 자극되는 바도 많았다. 다만, 토론자가 표류민 연구에 관한 문외한인 만큼, 발표문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해를 위해 발표자의 가르침을 구한다.

본 발표에서 규명한 내용이 갖는 연구사적 의의에 대해.

발표자는 ‘들어가며’에서 ‘對馬藩이 호송해 간 표착 일본인들이 본토로 송환되기까지 과정, 倭館의 관리 아래 부산에 정박해 있는 동안 어떤 수순을 밟았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발표자도 주 21을 통해 밝혔듯이 이미 이훈이 「조선후기 일본인의 조선 표착과 송환」(『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국학자료원, 2000)에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훈을 비롯한 여타 선행연구에서는 어떠한 점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본 발표가 이를 어떻게 보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

본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非對馬藩과 對馬藩 표류민을 호송하는 사이에…여기에는 (토론자: 제도적인 면 외에도)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일 것이다. 하지만 발표자가 발표문을 통해 지적한 둘 사이의 차이점이란 것이, 결국 기존 연구의 어떠한 점을 보충 혹은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지 알기 어려웠다. 특히 발표자는 두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쓰시마 번은 非對馬藩 표류민에 대해 체면과 위신을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점에 대해 문외한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느낌, 즉 의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다시 말해 발표자가 도출해낸 둘 사이의 차이점이 갖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를 통해 본 발표가 갖는 의의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를 통해 드러난 차이점에 대해.

본 발표의 핵심은 ‘구난을 대하는 쓰시마번의 태도’의 비교일 것이다. 발표자는 1719년 사례에 대해 ‘어차피 표류선원들이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해당 지역의 백성들에게서 식량을 조달하기 때문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은 도리어 조선에게 괴로운 일이었다. 이에…倭館은 이를 인질처럼 잡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 서계를 요청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1687년 사례에 대해서는 ‘서계에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지만…일단 받고, 귀국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아무래도 對馬藩의 표선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발표자가 논하고자 하는 바란, 똑같이 서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전자의 경우 표류민의 고생을 강요하면서까지 그들을 교섭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표류민이 얼마간 조선에 체류하든 어차피 쓰시마 번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서둘러 귀국시키려(혹은 시켜야) 했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과연 단순히 표류민의 출신지에 따른 차이였을까? 전자는 (발표자에 따르면)선례에 없었던 서계를 새롭게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고, 후자는 이미 선례가 있는 서계에 단순히 違式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된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日本의 日이 朝鮮의 朝보다 조금 밀에 쓰여진 것‘처럼 보이는(様ニ相見へ)’ 정도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번 당국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정도로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일본인 표류민의 식량을 조선 측이 모두 부담했다고 해서 쓰시마 번에 아무런 부담이 없었을까? 『裁判記録』이나 『分類紀事大綱』과 같은 사료를 보면, 조선과의 사이에 무언가 트러블이 생기면 이것이 다른 외교현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왜관 측이 염려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1687년 사례에서 왜관 측이 서계의 違式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으면서까지 서둘러 표류민을 송환한 것은, 굳이 이러한 일로 조선과의 트러블을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반대로 1719년 사례에서 왜관 측이 표류민을 ‘인질처럼 잡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 서계를 요청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려 했던 것은, 왜관 측이 표류민의 장기 체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을 감수하면서까지 선례에 없는 서계를 받아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종합하면, 두 사례는 표류민의 ‘출신지’와 상관없이 쓰시마 번이 다르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였다. 애초부터 표류민 관련 서계에 대한 사안의 경중이 달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표류 사건이 당시 왜관이 직면하고 있던 여러 현안들 사이에서 차지했던 중요도도 달랐을 것이다. 따라서 두 사례를 직접적으로 동인선상에 두고 비교해도 차이점이 분명하게 부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됐다.

사료 해석

①주 13의 ‘朝鮮人ハ尙以片時茂早々此方へ漕廻シ候義望申事ニ候’: ‘조선인들은 자투리 시간이라도 내어 이쪽(倭館)으로 빨리 노를 젓고자 합니다’라고 해석했는데, ‘조선인들은 한시라도 빨리 (당신들=표류민들이) 이쪽(倭館)으로 이동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정도의 뜻이 아닌지?

②주 28과 30의 ‘行規’: ‘질서 있게’,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통상적으로 쓰시마 번 사료에서의 行規란 밀무역 방지를 위한 몸수색을 의미하지 않나? 예) 風呂行規.

기타 질문

1719년의 사례를 ‘초유의 사태’라고 언급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통상적으로 표류민에게 지급되는 오일잡물은 그 일부가 쓰시마 번의 창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非쓰시마 번 출신 표류민에게 지급된 오일잡물은 어떻게 되었나? 혹시 쓰시마 번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라면, 표류민을 오랫동안 우암포에 체류시켜도 쓰시마 번으로서 아무런 메리트가 없었을 것이고, 이것이 쓰시마 번이 이들을 서둘러 송환시킨 이유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